

보안 과제(), 일반 과제(O) / 공개(O), 비공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 최종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721000-000829-01

수탁 / 2023-0300

연구지원 체계평가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Improvement of Research Support Capability Evaluation Systems)

2024. 2.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연구지원 체계평가 운영에 관한 연구”(연구개발 기간 : 2023.1.1. ~ 2023.12.3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황 병 용(연구위원)

연 구 원 : 이 경 재(선임연구위원)

김 신 리(연구원)

강 아 현(연구원)

이 민 정(연구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보고서 요약서

과제번호	CE23040	연구기간	2023. 1. 1 - 2023. 12. 31	
연구사업명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세부사업명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지원		
연구과제명	연구지원 체계평가 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 병 용	총 연구비	265,000천원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 약				
<p>○ 대학 유형 지원체계평가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대학(161개) - (대상기간) '21.3.1. ~ '23.2.28(2년간) - (평가항목·지표) 5개 영역, 9개 항목, 26개 세부지표를 평가 - (평가절차) 공고/접수(3~4월) - 서류평가(5월) - 이의신청/ 재검토(6~7월) - 현장평가(8월)- 추가 신속평가(9~10월) - 평가 결과 심의(11월) - (평가 결과 환류) 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고시 비율 연계 <p>○ 대학 연구자 만족도 조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KISTEP에서 평가대상 대학별 직접 조사 <p>○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세부지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 개선 <p>○ '24년 평가 예정 출연(연) 및 비영리연구기관 등 문의 답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개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평가지침 공개 및 문의 답변 계속 				
색인어	한글	국가연구개발, 연구지원역량, 연구지원체계, 대학		
	영어	National R&D, Research Support Capability, Research support system, Universities		

요약문

◆ 과제명: 연구지원 체계평가 운영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배경

-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 및 출연연의 지원역량의 중요성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음
- 연구현장 중심의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관리에 관한 역할·권한을 강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 제고 기반 마련

II. 연구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
 - 대학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수행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수준 향상 및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연구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대학 연구자 만족도 조사
 -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세부지표 개선
-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대학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수행
 - 공고/접수(3~4월), 서류평가(5월), 이의신청/재검토(6~7월), 현장평가(8월), 추가신속평가(9~10월), 평가 결과 심의(11월)의 절차 준수 여부
 - 대학 연구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KISTEP에서 평가대상 대학별 직접 조사

-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세부지표 개선
 - 대내외 환경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세부지표 개선
- '24년 출연(연) 및 비영리기관 등에 대한 평가지침 공개 및 문의 답변 계속
 - 65개 출연(연) 및 비영리기관 등에 대한 평가지침 공개 및 문의 답변 계속

III. 연구결과

절 차	세 부 내 용
평가계획 공고 (KISTEP)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등 평가계획 공고
신청서 제출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후 KISTEP에 제출
연구자 만족도조사 (외부조사기관)	• 연구기관 연구자는 조사기관 URL을 통해 만족도 조사 실시
서류평가 (평가단)	•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및 추가자료 검증
결과안내 (KISTEP)	• 예비등급 안내
이의신청/재검토 (KISTEP/평가단)	• 예비등급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실시
현장평가 (평가단)	• 자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 실시 ※ 이의신청 등급과 재평가 등급이 상이한 기관 등
추가신속평가 (KISTEP/평가단)	• 연구지원체 계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추가신속평가 실시
최종심의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최종등급) 심의·확정
최종결과 통보/공개 (KISTEP)	• 평가결과 관계기관(과기정통부, 연구기관) 통보 및 공개
후속조치 (과기정통부)	• 기관평가 및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 대규모

신청대학	최종등급
가천대학교	A
가톨릭대학교	B
강원대학교	A
건국대학교	A
경북대학교	A
경상국립대학교	A
경희대학교	A
고려대학교	A
공주대학교	B
국민대학교	A
군산대학교	B
단국대학교	C
동국대학교	A
동아대학교	A
명지대학교	A
목포대학교	A
부경대학교	A
부산대학교	A

신청대학	최종등급
서강대학교	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
서울대학교	B
서울시립대학교	A
성균관대학교	B
세종대학교	A
순천대학교	A
순천향대학교	B
송실대학교	B
아주대학교	B
연세대학교	C
영남대학교	B
울산대학교	B
이화여자대학교	B
인제대학교	B
인하대학교	A
전남대학교	A
전북대학교	B
제주대학교	B
조선대학교	A
중앙대학교	C
창원대학교	B
충남대학교	B
충북대학교	B
포항공과대학교	B
한국공학대학교	B
한림대학교	C
한양대학교	B

○ 중규모

신청대학	최종등급
가톨릭관동대학교	C
강릉원주대학교	B
건양대학교	D
경기대학교	D
경남대학교	C
계명대학교	B
광운대학교	C
금오공과대학교	B
대구가톨릭대학교	B
대전대학교	C
동의대학교	B
목포해양대학교	C
상명대학교	B
선문대학교	A
수원대학교	B
숙명여자대학교	C
안동대학교	E
원광대학교	A
울지대학교	C
인천대학교	A
전주대학교	B
차의과대학교	B
한경국립대학교	D
한국교통대학교	B
한국기술교육대학교	D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F
한국외국어대학교	B
한국항공대학교	B
한국해양대학교	A
한남대학교	A
한밭대학교	B
호서대학교	A
흥익대학교	F

○ 소규모

신청대학	최종등급
강남대학교	F
경기과학기술대학교	F
경성대학교	C
경운대학교	D
경인교육대학교	D
경일대학교	C
고신대학교	C
광주대학교	C
광주여자대학교	F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E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F
극동대학교	F
나사렛대학교	F
남부대학교	C
남서울대학교	C
대구대학교	D
대구한의대학교	B
대진대학교	C
덕성여자대학교	B
동덕여자대학교	F
동명대학교	B
동서대학교	D
동신대학교	D
동양대학교	D
동양미래대학교	F
명지전문대학교	F
목원대학교	C
배재대학교	C
백석대학교	F
부산가톨릭대학교	F
부산외국어대학교	C
부천대학교	E
북학대학원대학교	F
삼육대학교	B
상지대학교	C
서경대학교	C
서울교육대학교	D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C
서울여자대학교	B
서원대학교	D

신청대학	최종등급
서일대학교	F
성결대학교	F
성공회대학교	E
성신여자대학교	B
세명대학교	D
신라대학교	C
신한대학교	F
안양대학교	B
영산대학교	E
용인대학교	F
우석대학교	C
우송대학교	E
울산과학기술대학교	F
위덕대학교	F
육군사관학교	F
인덕대학교	F
인하공업전문대학교	D
제주국제대학교	F
제주한라대학교	F
중부대학교	D
중원대학교	F
창신대학교	B
청운대학교	E
청주대학교	C
춘천교육대학교	F
평택대학교	F
한국교원대학교	D
한국농수산대학교	C
한국방송통신대학교	F
한국예술종합학교	E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C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
한국체육대학교	F
한동대학교	E
한라대학교	D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F
한서대학교	D
한성대학교	B
한신대학교	D
한양여자대학교	F
협성대학교	E
호남대학교	D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161개 대학에 대한 지원체계평가 실시
 - (서류평가)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 (연구자 만족도 평가)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 (이의신청 및 재검토)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 (현장평가) ① 서류평가 A등급 이상 기관, ② 서류평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대상으로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 및 연구비 집행 내역 등 실사
 - (추가신속평가 실시)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추가신속평가 실시
 - (최종등급 확정)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등급 확정
 - (평가절차) 공고/접수(1~4월) - 평가단 구성(4월) - 만족도조사/서류평가(5~6월) - 이의신청/재점검(7월) - 현장평가(8월) - 신속 추가평가(9~10월) - 평가 결과 심의(11월)
-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세부지표 개선
 - 대내외 환경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세부지표 개선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간접비 연계) '22.'23년 기관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 '23년 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평가 결과 공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평가 결과 공개

□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 비율 연계
-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 과제 연구지원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
- 연구자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각 기관별 연구지원서비스 향상을 유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사업 개요 3

 제2절 연구사업 목표 및 내용 4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7

 제1절 연구수행내용 9

 제2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경과 17

제3장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분석 25

 제1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27

 제2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지원인력의 운영수준 36

 제3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SaaS 형태의 대학 연구지원시스템 분류 41

 제4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44

 제5절 '23년 연구자 만족도 조사 결과 50

제4장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개선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61

 제1절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개선 63

 제2절 연구성과 활용 계획 143

제5장 결론 145

[붙임 1]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기관별 최종 등급 149

[붙임 2]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155

표 목 차

〈표 1〉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절차	4
〈표 2〉 연구지원체계평가 관계 법령	9
〈표 3〉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대학	9
〈표 4〉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및 배점	10
〈표 5〉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단 구성	11
〈표 6〉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11
〈표 7〉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등급분류 기준	12
〈표 8〉 규모별 간접비 가감율 변경사항	14
〈표 9〉 기관유형별 간접비 가감율 변경사항	14
〈표 10〉 서류평가 결과	16
〈표 11〉 규모별 간접비 가감율 변경사항	17
〈표 12〉 서류평가 대비 이의신청 결과	17
〈표 13〉 기관별/지표별 이의신청 현황	17
〈표 14〉 재검토 결과	18
〈표 15〉 대학 유형별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18
〈표 16〉 대학 유형별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20
〈표 17〉 추가신속평가 결과	22
〈표 18〉 '23년 최종 결과	23
〈표 19〉 '23년 최종 결과	27
〈표 20〉 '20년 최종 결과	27
〈표 21〉 '20년 대비 '23년 등급 증감	29
〈표 22〉 (대규모) '20년 대비 등급 비중 증감	30
〈표 23〉 (중규모) '20년 대비 등급 비중 증감	30
〈표 24〉 (소규모) '20년 대비 등급 비중 증감	31
〈표 25〉 연구비 규모 유형별 등급 변동 대학의 수	32
〈표 26〉 '20년 대비 '23년 등급 변동 대학 목록	33
〈표 27〉 유형별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 수준 평균	36
〈표 28〉 유형별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 수준	37
〈표 29〉 대학 연구지원시스템 분야별 도입 현황	41
〈표 30〉 '23년 대학 규모별 연구지원시스템 도입 현황	41
〈표 31〉 '23년 대학규모 및 연구지원시스템 평균점수 현황	42
〈표 32〉 SaaS형태 연구지원시스템 분류	43
〈표 33〉 대학별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평균	44
〈표 34〉 대학별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46
〈표 35〉 연구자 만족도 조사 설계	50

<표 36> 평가지표 산출 방법 50

<표 37> 응답자 특성 51

<표 38> 기관별 만족도 환산 점수 53

<표 39> IPA 분석결과 58

<표 40>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 59

<표 41> '22 체계평가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배점 65

<표 42> 1-2. 전담점수인력 확보 평가지침 67

<표 43> '22년 전문(연) 연구장비·재료 전담점수인력 현황 및 기준 하향시 예상점수 67

<표 44> '22년 기관유형별 2-1 점수 분포 68

<표 45> '22년 기관유형별 연구지원인력비율(%) 68

<표 46> '20년 기관유형별 연구지원인력비율(%) 68

<표 47> '22년 기관유형별 2-2 점수 분포 68

<표 48> '22년 기관유형별 연구비10억당 연구지원인력 수 69

<표 49> '20년 기관유형별 연구비10억당 연구지원인력 수 69

<표 50> '24년 2-2 개선 평가지침(안) 및 예상점수분포 69

<표 51> '22년 기관유형별 2-3 점수 분포 70

<표 52> '20년 기관유형별 정규직 비중(%) 70

<표 53> (예시) 연구지원인력 현황(파견근로자 포함) 70

<표 54> (예시) 파견근로자 포함 시 지표 예상점수 71

<표 55> 만족도제외 시 예상점수 71

<표 56> 연구지원시스템 평가지표 결과 73

<표 57>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 (예시 I) 74

<표 58>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 (예시 II) 75

<표 59>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별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보유 현황
(ZEUS 등록 기준) 75

<표 60>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 평균 전담운영인력 수 77

<표 61> 연구사업수익 규모에 따른 기관 분류 79

<표 62> 기존 대비 변경사항 (출연(연) 및 비영리연구기관 유형) 80

그림 목 차

[그림 1]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19
[그림 2] '23년 최종 결과	28
[그림 3] '20/'23년 평가 결과 비교	29
[그림 4] 7점 척도 100점 환산 방법	50
[그림 5] '22 체계평가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평가결과 평균 비교	65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사업 개요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연구지원 중심 평가) 연구비 관리체계의 충실성 위주에서 연구 활동 지원의 질적 수준 중심으로 평가 전환
 - (연구 자율성 제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은 점검하되, 연구비 사전통제 등 관리·집행에 관한 항목 축소·폐지
 - (연구자 의견반영 확대) 연구자의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중을 확대
- 연구기관의 연구행정 책임성 강화
 - (연구지원조직* 역량 강화) 연구지원조직·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에 관한 항목 확대
 - *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서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전담조직을 말함. 산학협력단 내 연구기획, 연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처(교육지원기능 제외), 출연(연) 등의 연구관리·지원부서 등
 - (연구자 처우개선/연구윤리 강화) 연구원 처우개선, 연구윤리 관리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노력·성과에 관한 항목 신설
 - (평가결과 환류 강화) 평가결과를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하고 연구비 규모별(대·중·소) 반영 비율 조정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고하며, 이를 통해 연구 지원체계 평가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
 - 연구내용 2 :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연구내용 3 : 2024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개선

제2절 연구사업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

- 대학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수행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수준 향상 및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대학 연구자 만족도 조사
-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세부지표 개선

□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대학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수행
 - 공고/접수(3~4월), 서류평가(5월), 이의신청/재점검(6~7월), 현장평가 실시(8월), 추가신속평가(9~10월), 평가결과 심의(11월)의 절차 준수 여부
- 대학 연구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KISTEP에서 평가대상 대학별 직접 조사
-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세부지표 개선
 - 대내외 환경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세부지표 개선
- '24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평가지침 공개 및 문의 답변 계속
 - 58개 출연(연) 비영리기관에 대한 평가지침 공개 및 문의 답변 계속

□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표 1〉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절차

공고/접수	평가단 구성	평가실시 (만족도·서류·이의신청/재점검)	현장평가	추가 신속평가	평가결과 심의
3~4월	4월	5~7월	8월	9~10월	11월

- (서류평가) 총 157개 기관(① 250억 이상(대) 46개 대학 ② 100억 이상 ~ 250억 미만(중) 32개 대학 ③ 100억 미만(소) 79개 대학에 5개 영역, 9개 항목, 26개 세부지표 서류평가 실시 (5.11.~5.30)
- (서류평가 결과안내) S등급 3개, A등급 22개, B등급 43개, C등급 28개, D등급 20개, E등급 14개, F등급 27개(6.27)
- (이의신청) 기관별 서류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6.30)

- (재검토)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총 60개 대학 타당성 검토(7.5~7.18)
- (현장평가) 이의신청등급과 검토 결과 등급이 상이한 대학을 중심으로 총 11개 대학 현장평가 (8.7~8.30)
- (추가신속평가)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4개 대학(홍익대, 광주여대, 극동대, 신한대) 추가신속평가 (9.13~10.6)
- (평가결과 심의) 최종결과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11.14) 확정 후 NTIS에 최종결과 게시(11.21)

제 2 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제1절 연구수행내용

1. 평가 개요

- 목적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
 -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20년)가 ‘연구지원체계평가’로 개편(21년)

〈표 2〉 연구지원체계평가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대학 (161개)

* (연구비 규모별) ① 대규모(205억 이상) : 46개 ② 중규모(100억 이상 ~ 250억 미만) : 32개
 ③ 소규모(100억 미만) : 79개

〈표 3〉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대학

구분	대상 대학명
대규모 (250억 이상)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중규모 (100억 이상~250억 미만)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전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구분	대상 대학명
소규모 (100억 미만)	강남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천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신라대학교, 안양대학교, 영산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위덕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구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 대상기간 : '21.3.1. ~ '23.2.28. (2년)

2. 평가내용

○ 5개 영역, 9개 항목, 26개 세부지표 점검

〈표 4〉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및 배점

영역	평가 지표	배점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26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 근로계약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20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15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23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16
계		100

3.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평가위원을 주로 위촉
 - 평가지표별 관련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하고 대학 소속 전문가의 경우 소속기관 평가를 제외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2, 3번 평가지표)
- 평가위원 1인이 동일 세부평가지표를 평가하여 일관성 유지
 - 예) 홍길동 위원이 A ~ Z 기관 : 1 ~ 5번 세부지표 평가

- 위원장은 호선하고 평가위원은 사전 공정성 준수 서약서에 서명
- 평가단 위원은 서류 및 현장평가,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참여

〈표 5〉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단 구성

구분	기관명	이름	부서명/참고사항	평가지표 배정(인)
1	000	000	출연(연) 기관평가 위원('15~)	1-①~④(4개) (연구지원 조직역량)
2	000	000	기술 경영학과/ 평가지표 정책연구수행	2-①~③(3개) (연구지원인력 운영) ※ 소속대학 제외
3	000	000	출연(연) 기관평가 위원('15~)	3-①~4-③(5개) (근로계약) ※ 소속대학 제외
4	000	000	'20 역량평가 위원 :학생 인건비	5-①~④(4개) (학생인건비)
5	000	000	경영본부	6-①~④(4개) (기관연구지원시스템)
6	000	000	연구개발본부	7-①~②(2개) (연구윤리 관리)
7	000	000	'16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담당자	8-①(세부7개) (직접비)
8	000	000	간접비산출소 위원	8-②(세부6개) (간접비, 모티터링)
9	000	000	사업운영평가실	8-①~②(2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포함 평가위원 13명
 - 정부위원(4인) : 평가대상기관·간접비 비율 고시기관을 고려하여 구성
 - 민간위원(9인) : 서면·현장 평가단 전원
-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검토·확인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정성적 방법으로 심의·확정

〈표 6〉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소 속
위원장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정부위원	과기정통부 과장
	교육부 과장
민간위원	평가단 위원 전원(9인)
간사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장

4.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공고/접수	평가단 구성	평가실시 (만족도·서류·이의신청/재점검)	현장평가	추가신속평가	평가결과 심의
3~4월	4월	5~7월	8월	9~10월	11월

절 차	세 부 내 용
평가계획 공고 (KISTEP)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등 평가계획 공고
신청서 제출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후 KISTEP에 제출
연구자 만족도조사 (외부조사기관)	• 연구기관 연구자는 조사기관 URL을 통해 만족도 조사 실시
서류평가 (평가단)	•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및 추가자료 검증
결과안내 (KISTEP)	• 예비등급 안내
이의신청/재점검 (KISTEP/평가단)	• 예비등급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실시
현장평가 (평가단)	• 자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 실시 ※ 이의신청 등급과 재평가 등급이 상이한 기관 등
추가신속평가 (KISTEP/평가단)	• 연구지원체 계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추가신속평가 실시
최종심의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최종등급) 심의·확정
최종결과 통보/공개 (KISTEP)	• 평가결과 관계기관(과기정통부, 연구기관) 통보 및 공개
후속조치 (과기정통부)	• 기관평가 및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 서류평가 】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 추가요청
 - 서면평가에서 허위 또는 부정 자료제공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피평가기관의 귀책사유(부실자료 제출 등)로 추가 증빙을 한 후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50%만 인정
-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S~F 등급으로 분류

〈표 7〉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등급분류 기준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70점 미만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 이의신청 및 재검토 】

-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 현장평가 】

- 총 157개 대학 중 이의신청 검토결과 등을 반영 11개 대학 선정하고, 기관 당 1-2명 평가위원 담당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및 등급 재조정 가능하며, 부정자료 제공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서류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선정 : 총 11개 대학(157개 대학의 7%)
 - (대상 1) 컨설팅 필요대학 (이의신청 과다)
 - 대학⑧ : 10개 항목 이의신청 (20년 E(73) → 23년 F(48))
 - 대학⑥ : 10개 항목 이의신청 (20년 B(86) → 23년 D(76))
 - (대상 2) 서류평가 S등급 신규진입
 - 대학① (20년 B(86) → 23년 S(95))
 - 대학② (20년 A(92) → 23년 S(95))
 - 대학③ (20년 A(94) → 23년 S(96))
 - (대상 3) 지난 평가 대비 등급 변동
 - ① '20년 최종평가 결과 대비 등급 상승 대학
 - 대학⑩ (20년 F(57) → 23년 B(86))
 - ② '20년 최종평가 결과 대비 등급 하향 대학
 - 대학④ (20년 S(97) → 23년 B(86))
 - 대학⑦ (20년 A(90) → 23년 D(76))
 - 대학⑤ (20년 A(90) → 23년 B(73.5))
 - 대학⑨ (20년 B(85) → 23년 F(53.5))
 - (대상 4) 산학협력단 운영 특이 대학
 - 대학⑪ : 산학협력단이 존재하나, 직원 모집, 산단운영 등을 학교본부에서 총괄 (20년 D(75) → 23년 B(86))

【 추가신속평가 】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둘러싼 제도와 시스템적 변화 등에 따라 평가 신청을 누락한 대학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개발혁신법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 추가 조치를 수행
 - 추가신속평가 실시 및 결과 도출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동시 실시하고, 만족도조사 항목은 미실시

【 최종등급 확정 】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5. 평가결과 활용

- 간접비 연계 : '23년 대학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 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대학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기능 유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비율 삭감을 완화

〈표 8〉 규모별 간접비 가감율 변경사항

연구사업 수익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기존('20년)		10%	7.5%	5%	2.5%	0%	-5%	-10%
변경 ('22~ '23년)	대	10%	6%	3%	0	-3%	-6%	-10%
	중	10%	6%	3%	0	-2%	-4%	-6%
	소	10%	6%	3%	0	-1%	-2%	-3%

* 연구기관의 연구비 규모 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비 산출한 간접비 고시비율을 가·감(+10% ~ -10%)하며, 연구지원체계평가 과락 또는 미신청 시 간접비는 일할(대학 : 5%) 산정·고시

〈표 9〉 기관유형별 간접비 가감율 변경사항

구분		출연(연)	전문(연)	비영리	대학	기업	
		연구지원역량평가 의무화 여부	의무화	자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	평가점수 50점 이상	자율		평가점수 50점 이상	10%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시	산출값					
	미산출시	5%	17%	5%			
연구지원체계평가 의무화 여부		의무화	자율				비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		평가점수 50점 이상	자율		평가점수 50점 이상	10%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시	산출값					
	미산출시	5%	17%	5%			

※ 단,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미실시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간접비고시비율을 5%로 설정

- S등급 기관 우대 : 당해연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차기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정산 같음
 - ※ '22년 이후 평가부터, 정산 같음 우대적용은 3회 연속 받을 수 없음
 -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포함)
 - ※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맞춤형 컨설팅 : 현장평가 대상기관수를 늘려 연구현장에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 기관평가 연계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은 대학 등은 과기분야 기관평가(기관운영평가) 외부평가*에 반영
 - ※ 반영비율은 대학특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연구비 지급방식과 연계 : 연구협회·조합, 병원 등에 대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의 연구비 지급 방식(일괄 또는 건별)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평가결과 공개

제2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경과

1. 서류평가

□ 서류평가 개요

○ 평가대상 : 대학 중 신청대학 (157개)

- (연구비 규모별) ① 대규모(250억 이상) : 46개, ② 중규모(100억 이상 ~ 250억 미만) : 32개
③ 소규모(100억 미만) : 79개

○ 평가기간 : '23.5.11. ~ 5.30. (14일간)

□ 서류평가 결과

○ '23년 서류평가 결과 S등급 3개, A등급 22개, B등급 43개, C등급 28개, D등급 20개, E등급 14개, F등급 27개

〈표 10〉 서류평가 결과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총계
대규모	3	16	22	5	0	0	0	46
중규모	0	6	12	6	5	2	1	32
소규모	0	0	9	17	15	12	26	79
계	3	22	43	28	20	14	27	157

2. 이의신청

□ 이의신청 개요

○ 대상 : 서류평가 실시 157개 대학 중 총 60개 대학

- (연구비 규모별) ① 대규모(250억 이상) : 16개 ② 중규모(100억 이상 ~ 250억 미만) : 11개
③ 소규모(100억 미만) : 33개

○ 내용 : 기관별 서류평가 결과(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평가기간 : '23.7.5. ~ 7.18. (10일간)

□ 서류평가 대비 이의신청 결과

〈표 11〉 규모별 간접비 가감을 변경사항

(단위: 개)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총계
서류평가	46	32	79	157
이의신청	4	4	4	12

〈표 12〉 서류평가 대비 이의신청 결과

(단위: 개)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총계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70점 미만	
대규모	서류평가	3	16	22	5	0	0	0	46
	이의신청	1 (2)	5 (11)	8 (14)	2 (3)	0	0	0	16 (30)
중규모	서류평가	0	6	12	6	5	2	1	32
	이의신청	0	0 (6)	1 (11)	3 (3)	4 (1)	2 (0)	1 (0)	11 (21)
소규모	서류평가	0	0	9	17	15	12	26	79
	이의신청	0	0	2 (7)	10 (7)	5 (10)	5 (7)	11 (15)	33 (46)

* 괄호 안은 서류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수

□ 지표별 이의신청 현황

○ “6.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총 38건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음.

○ 그 외 “7. 연구윤리 관리”(25건), “3. 근로계약”(18건) 순으로 이의신청함.

〈표 13〉 기관별/지표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건)

연구비 규모	I	II	III	IV	V	VI	VII	VIII	VIII	IX	총 계
	연구지원 조직의 운영역량	연구지원 인력운영	근로 계약	직무 발명 보상금	학생 인건비	기관 연구지원 시스템	연구윤리 관리	직접비	간접비 모니터링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1-1~1-4	2-1~2-3	3-1~4-3		5-1~5-4	6-1~6-4	7-1~7-2	8-1	8-2	9-1~9-2	
대규모	3	0	2		1	4	9	0	4	2	25
중규모	4	1	4		4	6	8	0	2	3	32
소규모	7	0	12		3	28	8	5	4	9	76
총계	14	1	18		8	38	25	5	10	14	133

3. 재검토

□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검토

○ 이의신청 서면검토 : 평가위원별 이의신청 내용 서면검토(23.7.5~7.18)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회의

○ 일 시 : '23.7.28.(금), 10:00 ~ 12:00

○ 참석자 : 평가위원 등 12명

□ 재검토 결과

○ '23년 재검토 결과 S등급 3개, A등급 25개, B등급 43개, C등급 28개, D등급 20개, E등급 11개, F등급 27개

〈표 14〉 재검토 결과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총계
대규모	3	19	20	4	0	0	0	46
중규모	0	6	13	7	4	1	1	32
소규모	0	0	10	17	16	10	26	79
계	3	25	43	28	20	11	27	157

〈표 15〉 대학 유형별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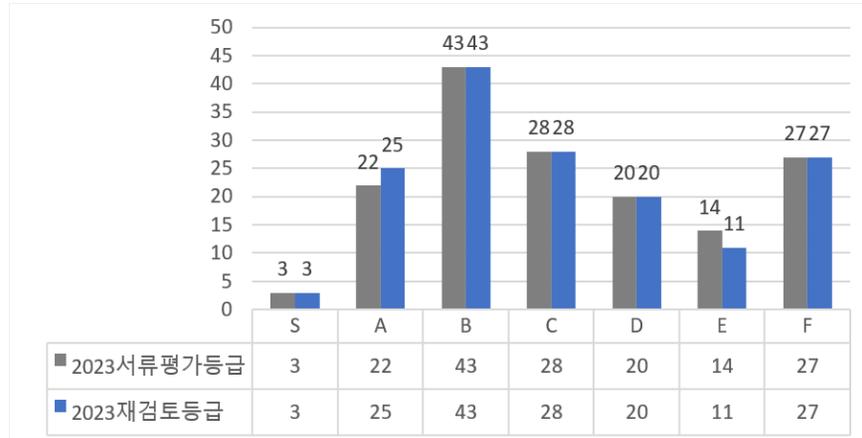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대규모	서류평가	3	16	22	5	0	0	0
	이의신청 검토(안)	3	19	20	4	0	0	0
중규모	서류평가	0	6	12	6	5	2	1
	이의신청 검토(안)	0	6	13	7	4	1	1
소규모	서류평가	0	0	9	17	15	12	26
	이의신청 검토(안)	0	0	10	17	16	10	26

□ 평가결과 비교분석

○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 이의신청한 60개 대학 중 48개 대학이 점수 상승, 그중 12개 대학이 등급 상승



[그림 1]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4. 현장평가

□ 현장평가 개요

○ 목적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학별 이의신청 내용 점검 및 현장실사

- 현장평가 대상기관수를 늘려 연구현장에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동시 실시

○ 일정 : '23.8.7.(월) ~ 8.30.(수) (총 8일)

○ 대상기관 : 서류평가 실시 157개 대학 중 총 11개 대학

- ① 대규모(250억 이상) : 4개 ② 중규모(100억 이상 ~ 250억 미만) : 2개 ③ 소규모(100억 미만) : 5개

○ 참석인원 : 평가위원 등 총 13인

□ 현장평가 결과 세부사항

○ 재검토 점수 대비 현장평가 결과

- 현장평가 11개 대학 중 10개 대학의 점수 변동

〈표 16〉 대학 유형별 서류평가 대비 재검토 결과

대학명	변동 항목	배점	원 점수	현장평가 점수
대학①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점	6점	4점
대학②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실적	3점	3점	2점
	5-3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	2점	2점	1점
	8-1 ⑤ 연구활동비-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3점	3점	1점
대학③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3점	3점	2점
	7-2 연구윤리 확립노력	(-4점)	-1점	-0.5점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점	6점	4점
대학④	변동사항 없음			
대학⑤	3-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점	1점	1.5점
대학⑥	5-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2점	2점	1점
대학⑦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점	2점	1점
대학⑧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점	2점	1.5점
대학⑨	7-2 연구윤리 확립노력	(-4점)	-2.5점	-2점
	8-1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을 관리의 적절성	3점	3점	0점
	8-1 ⑤ 연구활동비-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3점	3점	2점
대학⑩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점	3점	2점
	5-3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	2점	2점	1점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점	4점	2점
대학⑪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점	3점	2점

○ (대학①) 지난번 평가시 성과인증 받은 제출자료, 우수 실험실 인증 취득 (19.09.28 ~ 21.09.24)은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됨.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평가지표 2점 차감 평가

- (1-2) 증빙자료가 부실하였으나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했음. 그 이후, 검수 사실이 인정됨

○ (대학②)

- (1-3) 연구비 집행교육 증빙 누락 (1점 차감)
- (5-3 ②) 부당회수 방지 실적의 우수사례 증빙안됨. 고충 참고 운용중이나 사례 증빙안됨. 피드백에 의한 우수사례가 아님. 학생 연구자와의 소통 필요 (1점 차감)
- (8-1 ⑤)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의 기간 내 집행의 사전통제가 시스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점수 조정 (2점 차감)

○ (대학③) 연구지원체계평가대상 기간 (21.3.1 ~23.2.28) 이후에 시행 예정인 사례 제출

- (1-2) 현장전산확인 결과 겹직으로 평가됨 (1점 차감)
- (7-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규정 확인, 제 3장 (항문교류) 규정 확인 (0.5점 인정)

- (9-2) 우수사례 활용확산 사례 미인정, 전자연구 노트 시행(23.09) 시기가 평가 기간 내에 적용되지 않음 (2점 차감)
- (대학⑤) 규정, 게시여부, 급여시스템 확인 및 인정, '3-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평가지표 1.5점 조정
 - (1-2) 검수체계의 전문성, 일관성 미흡, (1-3) 지원인력 교육 관리 우수
 - (2-3) 연구지원인력 중 책임/전임 연구원은 제외하고 외국인력을 제외하여 총 10명 제외했으나 점수 변동 없음
- (대학⑥) 현장평가에서 추가 증빙자료 불충분, '5-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평가지표 1점 차감 평가
- (대학⑦) 연구윤리 교육 기획 증빙 미흡,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평가지표 서면평가 대비 1점 차감 평가
- (대학⑧) 현장에서 기재 오류를 발견하여 점수 조정
 - (1-1) 이의신청 배점 기준 (50%) 적용 오류 수정 (1.5점으로 적용)
 - 박사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 (3-1) 박사후 연구원 없음. 기준규정 없음(전임연구원 기준 규정을 유사 제도로 인정함(1점)), 시스템 게시 없음(0점), 연구원 본인 인건비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유사시스템의 경우도 연구자를 전제로 하는 유사시스템을 말함(0점))
 - (3-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 전임연구원 없음. 기준규정 있음(1점). 시스템 게시 없음(0점), 연구원 본인 인건비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유사시스템의 경우도 연구자를 전제로 하는 유사시스템을 말함(0점))
 - (4-1) 박사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 박사후 연구원 없음. 기준규정 없음(연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유사 규정 없음)(0점),
 - (4-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 전임연구원 없음. 기준규정 없음(연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유사 규정 없음)(0점),
 - (6-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 동 대학 대상 총 3번(이의신청, 현장평가, 2차 이의신청)의 평가를 재검토하였으나 기존 평가 결과를 유지함. (6-4항목 1점)
 - 평가결과 유지 이유는 제출된 증빙자료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 동 대학 제출 통합이지바로 증빙은 2023년 6월1일~6월28일 기준, 통합 RCMS 증빙은 2023년 3월1일~6월28일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모든 제출자료의 기준일은 평가 기간 내야 한다'라는 기준 미충족
- (대학⑨) 현장평가에서 시스템 확인 후, 총 4점 차감 평가
 - (7-2) 필요포함사항 중 2개를 마련하지 않아 -2.5점에서 -2.0점으로 수정함
 - (8-1 ①) 인건비 계상을 위한 사전통제 시스템이 없음 (3점 차감)

- (8-1 ⑤) 국내·외 여비 항목을 확보하지 못함 (1점 차감)
- (대학⑩) 현장평가에서 추가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총 4점 차감 평가
 - (1-3) 제출 증빙과 실제 교육 관리 일치 필요함 (1점 차감)
 - (5-3 ②) 학생인건비 방지실적 개선 필요함 (1점 차감)
 -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우수사례 기준 미흡, 증빙없음 (2점 차감)
- (대학⑪) 연구처의 독립기능유지 필요,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평가지표 서면평가 대비 1점 차감 평가
 - 기능별 업무일지 등 기록관리(1-2) 및 기획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1-3)이 필요함
 - 연구자 수요, 산학협력 발전위원회 의결 지급, 2022-2023 산학협력 증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주요과제로 추진(9-2)되었음을 확인함

5. 추가신속평가

□ 추가신속평가 개요

- 목적 :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실시
 - 현장평가 대상기관수를 늘려 연구현장에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동시 실시
- 대상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기관
 - ※ 금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기신청(23.4.26 마감)한 대학 제외
- 내용 : 신속한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동시에 실시
- 평가기간 : '23.9.13. ~ 10.6.

□ 추가 신속평가 결과

- '23년 추가신속평가 결과 F등급 4개

〈표 17〉 추가신속평가 결과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총계
대규모	0	0	0	0	0	0	0	0
중규모	0	0	0	0	0	0	1	1
소규모	0	0	0	0	0	0	3	3
계	0	0	0	0	0	0	4	4

6. 평가결과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 (근거)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 (구성) 위원장 포함 평가위원 등 13명
 - 정부위원(4인) : 평가 기관·간접비 비율 고시 기관 등을 고려
 - 민간위원(9인) : 서면·현장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
 -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검토·확인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정성적 방법으로 심의·확정
- ※ 간사(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장)

□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23.11.14.(화), 13:00 ~ 14:30
- (내용)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안) 심의

□ 최종 평가결과 확정

- S등급 0개, A등급 28개, B등급 42개, C등급 29개, D등급 20개, E등급 11개, F등급 31개

〈표 18〉 '23년 최종 결과

(단위: 개)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총계
대규모	0	22	20	4	0	0	0	46
중규모	0	6	13	7	4	1	2	33
소규모	0	0	9	18	16	10	29	82
계	0	28	42	29	20	11	31	161

제 3 장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분석



제1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 (평가대상)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대학 (161개)
 - (연구비 규모별) ① 대규모(250억 이상) 46개 대학, ② 중규모(100억 이상 ~ 250억 미만) 32개 대학, ③ 소규모(100억 미만) 79개 대학
- ('23년 최종 결과) S등급 0개, A등급 28개, B등급 42개, C등급 29개, D등급 20개, E등급 11개, F등급 31개

〈표 19〉 '23년 최종 결과

(단위: 개)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총계
대규모	0	22	20	4	0	0	0	46
중규모	0	6	13	7	4	1	2	33
소규모	0	0	9	18	16	10	29	82
계	0	28	42	29	20	11	31	161

※ 참고

- ('20년 최종 결과) S등급 1개, A등급 24개, B등급 62개, C등급 18개, D등급 20개, E등급 18개, F등급 20개

〈표 20〉 '20년 최종 결과

(단위: 개)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이상~ 85점 미만	D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E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F등급 70점 미만	총계
대규모	1	14	27	4	0	0	0	46
중규모	0	6	18	3	4	0	1	32
소규모	0	4	17	11	16	18	19	85
계	0	24	62	18	20	18	20	163

○ ('23년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대규모의 등급이 높고, 소규모의 등급이 낮음

- 소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과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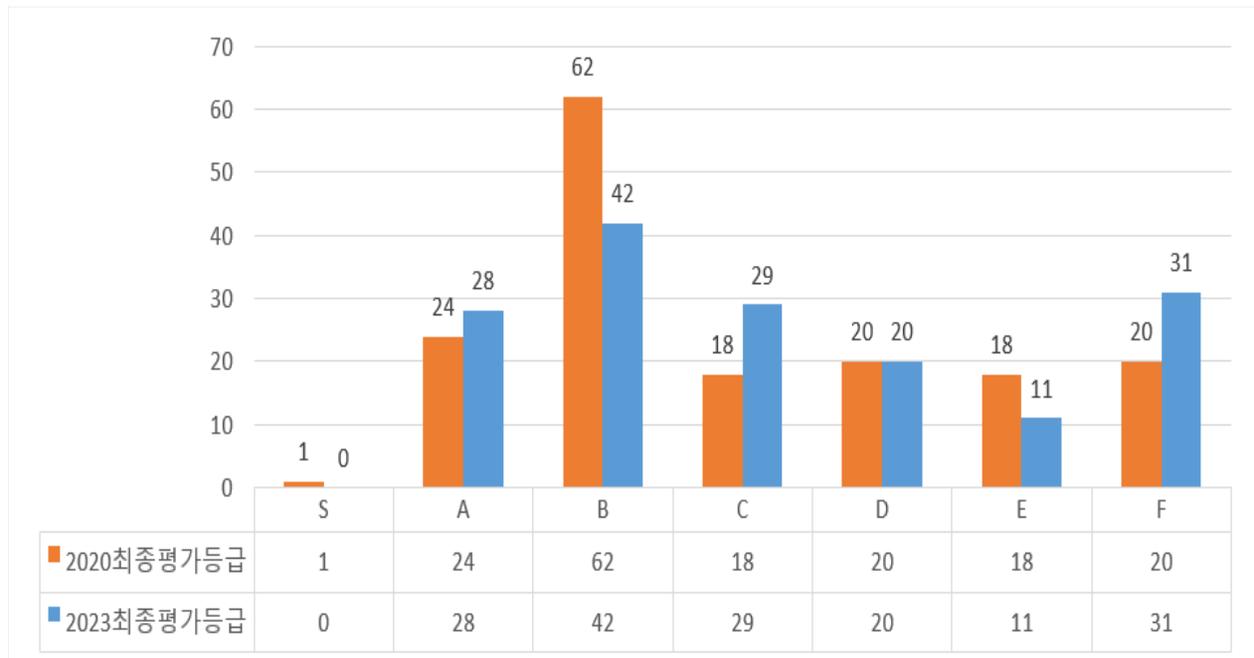
[그림 2] '23년 최종 결과

□ '20/'23년 전체 비교분석

- (전체 비교분석) '20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등급은 S등급이 1개, B등급이 20개, E등급 7개 감소
- 반면 증가한 등급은 A등급이 4개, C등급이 11개, F등급이 7개 증가
- '20년 대비 평가등급 고르게 분포.

〈표 21〉 '20년 대비 '23년 등급 증감

구분	'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증△감(개수)
	계	비중(%)	계	비중(%)	
S	1	0.6%	0	0.0%	▽1
A	24	14.7%	28	17.4%	△4
B	62	38.0%	42	26.1%	▽20
C	18	11.0%	29	18.0%	△11
D	20	12.3%	20	12.4%	-
E	18	11.0%	11	6.8%	▽7
F	20	12.3%	31	19.3%	△11
총계	163	100%	161	100%	-



[그림 3] '20/'23년 평가 결과 비교

□ '20/'23년 대학유형별 비교분석

○ (대규모) '20년와 비교하여 S 및 B등급 비중이 감소, A등급 비중이 증가

〈표 22〉 (대규모) '20년 대비 등급 비중 증감

구분	'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비중 증감
	계	비중(%)	계	비중(%)	
S	1	2.2%	0	0.0%	-2.2%
A	24	30.4%	22	47.8%	17.4%
B	27	58.7%	20	43.5%	-15.2%
C	4	8.7%	4	8.7%	0.0%
D	0	0.0%	0	0.0%	0.0%
E	0	0.0%	0	0.0%	0.0%
F	0	0.0%	0	0.0%	0.0%
총계	46	100%	46	100%	-

⇒ 혁신법 마련 이후,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지표 개선을 추진(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연구자 만족도 조사 외주 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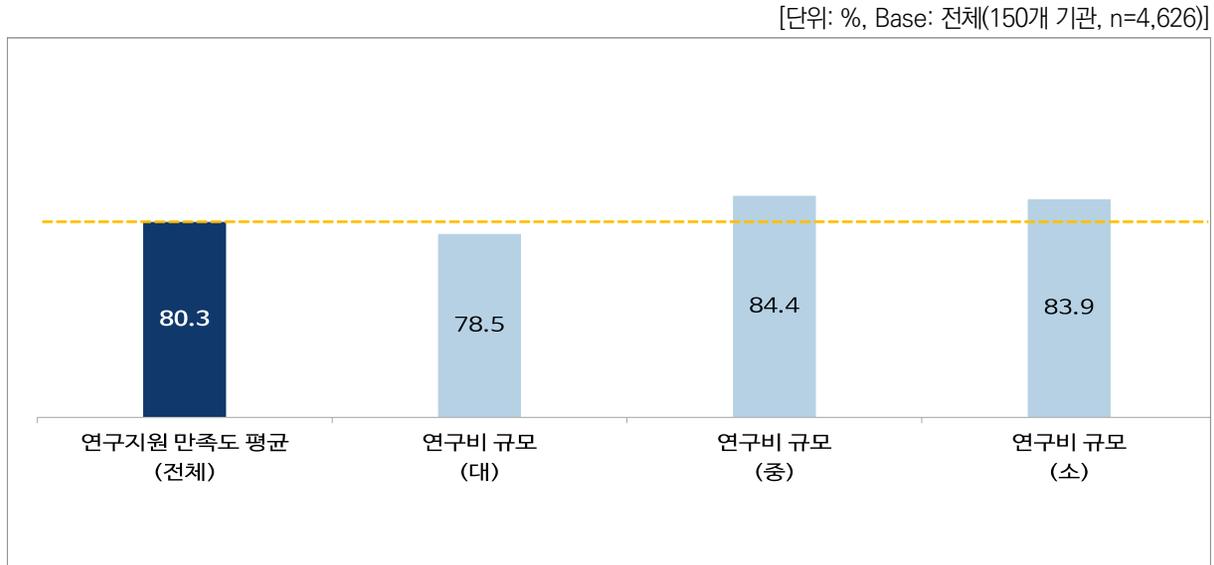
○ (중규모) '20년와 비교하여 A, B, D등급 비중이 감소, C, E 및 F등급 비중이 증가

〈표 23〉 (중규모) '20년 대비 등급 비중 증감

구분	'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비중 증감
	계	비중(%)	계	비중(%)	
S	0	0.0%	0	0.0%	0.2%
A	6	18.8%	6	18.2%	-0.6%
B	18	56.3%	13	39.4%	-16.9%
C	3	9.4%	7	21.2%	11.8%
D	4	12.5%	4	12.1%	-0.4%
E	0	0.0%	1	3.0%	3.0%
F	1	3.1%	2	6.1%	2.9%
총계	32	100%	33	100%	-

※ 참고 연구비 규모별 만족도

연구비 규모에 따른 연구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중규모 대학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규모인 대학의 만족도가 타 규모 대비 낮게 나타남



* 조사대상 150개 대학, 만족도 조사기간: '23. 5. 11~26.

○ (소규모) '20년과 비교하여 A, B 및 E등급 비중이 감소, C, D 및 F등급 순으로 비중이 증가

〈표 24〉 (소규모) '20년 대비 등급 비중 증감

구분	'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비중 증감
	계	비중(%)	계	비중(%)	
S	0	0.0%	0	0.0%	0.0%
A	4	4.7%	0	0.0%	-4.7%
B	17	20.0%	9	11.0%	-9.0%
C	11	12.9%	18	22.0%	9.0%
D	16	18.8%	16	19.5%	0.7%
E	18	21.2%	10	12.2%	-9.0%
F	19	22.4%	29	35.4%	13.0%
총계	85	100%	82	100%	-

□ '20년 대비 '23년 등급 변동 대학

○ (등급 변동 기관) '20년에 평가받은 기관의 61.1%*가 등급 변동이 있었음

- 등급 변동 폭이 큰 대학은 서경대학교(F→C), 안양대학교(E→B), 백석대학교(B→F), 안동대학교(A→E)
- 그 외 대다수 대학은 1등급 상승 또는 하락하였음

〈표 25〉 연구비 규모 유형별 등급 변동 대학의 수

(단위 : 개)

유형	등급 상승	등급 하락
대규모	14	6
중규모	10	12
소규모	14	40
계	38	58

〈표 26〉 '20년 대비 '23년 등급 변동 대학 목록

유형	대학명	'20년 등급 → '23년 등급	'20년 대비 등급 변동사항
대규모	대-1	B → A	1등급 상승
	대-2	B → A	1등급 상승
	대-3	B → A	1등급 상승
	대-4	B → A	1등급 상승
	대-5	C → B	1등급 상승
	대-6	B → A	1등급 상승
	대-7	A → C	2등급 하락
	대-8	B → A	1등급 상승
	대-9	B → A	1등급 상승
	대-10	B → A	1등급 상승
	대-11	B → A	1등급 상승
	대-12	B → A	1등급 상승
	대-13	A → B	1등급 하락
	대-14	B → C	1등급 하락
	대-15	A → B	1등급 하락
	대-16	B → A	1등급 상승
	대-17	B → A	1등급 상승
	대-18	A → B	1등급 하락
	대-19	C → B	1등급 상승
	대-20	S → B	2등급 하락
중규모	중-1	B → C	1등급 하락
	중-2	D → B	2등급 상승
	중-3	A → D	3등급 하락
	중-4	C → D	1등급 하락
	중-5	B → C	1등급 하락
	중-6	B → C	1등급 하락
	중-7	A → B	1등급 하락
	중-8	B → C	1등급 하락
	중-9	D → C	1등급 상승
	중-10	D → B	2등급 상승
	중-11	B → A	1등급 상승
	중-12	B → C	1등급 하락
	중-13	A → E	4등급 하락
	중-14	B → A	1등급 상승
	중-15	B → A	1등급 상승
	중-16	A → B	1등급 하락
	중-17	C → B	1등급 상승
	중-18	F → D	2등급 상승
	중-19	B → D	2등급 하락
	중-20	A → B	1등급 하락
	중-21	B → A	1등급 상승
	중-22	B → A	1등급 상승

유형	대학명	'20년 등급 → '23년 등급	'20년 대비 등급 변동사항
중규모	중-23	D → F	2등급 하락
	소-1	A → C	2등급 하락
소규모	소-2	A → D	3등급 하락
	소-3	C → D	1등급 하락
	소-4	B → C	1등급 하락
	소-5	E → F	1등급 하락
	소-6	F → E	1등급 상승
	소-7	D → F	2등급 하락
	소-8	E → C	2등급 상승
	소-9	B → C	1등급 하락
	소-10	B → D	2등급 하락
	소-11	A → B	1등급 하락
	소-12	B → C	1등급 하락
	소-13	C → B	1등급 상승
	소-14	C → F	3등급 하락
	소-15	B → D	2등급 하락
	소-16	E → D	1등급 상승
	소-17	E → F	1등급 하락
	소-18	B → C	1등급 하락
	소-19	B → F	4등급 하락
	소-20	D → F	2등급 하락
	소-21	B → C	1등급 하락
	소-22	D → E	1등급 하락
	소-23	E → C	2등급 상승
	소-24	F → C	3등급 상승
	소-25	C → D	1등급 하락
	소-26	A → C	2등급 하락
	소-27	C → B	1등급 상승
	소-28	B → D	2등급 하락
	소-29	D → F	2등급 하락
	소-30	E → F	1등급 하락
	소-31	C → D	1등급 하락
	소-32	B → C	1등급 하락
	소-33	E → B	3등급 상승
	소-34	F → E	1등급 상승
	소-35	B → E	3등급 하락
	소-36	E → F	1등급 하락
	소-37	D → F	2등급 하락
	소-38	D → F	2등급 하락
	소-39	D → F	2등급 하락
	소-40	B → D	2등급 하락
	소-41	E → D	1등급 상승

유형	대학명	'20년 등급 → '23년 등급	'20년 대비 등급 변동사항
소규모	소-42	E → F	1등급 하락
	소-43	E → B	3등급 상승
	소-44	D → E	1등급 하락
	소-45	D → C	1등급 상승
	소-46	E → F	1등급 하락
	소-47	C → D	1등급 하락
	소-48	E → C	2등급 상승
	소-49	D → F	2등급 하락
	소-50	D → E	1등급 하락
	소-51	E → F	1등급 하락
	소-52	D → E	1등급 하락
	소-53	D → B	2등급 상승
	소-54	B → D	2등급 하락
	소-55	E → F	1등급 하락
	소-56	B → D	2등급 하락

제2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지원인력의 운영수준

□ 연구지원인력의 운영수준

〈표 27〉 유형별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 수준 평균

유형	기관수	①전체 연구 인력(A)	②연구지원 인력(B)	③전체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④전체연구 지원인력비율 (B/A)	⑤연구비10억당 전체 연구지원 인력수
대규모	46	891.1	94.4	1175.8	10.5	1.0
중규모	33	397.1	39.5	221.8	12.9	3.0
소규모	82	191.7	12.4	40.4	9.3	5.6

○ 지표별 작성 기준*

* 지표별 데이터는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작성된 수치를 인용함

① 전체연구인력(명)

- 대학 :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된 2023.4.1.일자 전임교원의 총수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② 연구지원인력(명)

- 연구지원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포함

- 대학 연구지원인력 : 연구관리 전담조직 내 소속된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성과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능 및 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③ 전체연구비현황(단위 : 억원)

-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된 2021년 연구비를 말함

④ 전체연구지원인력비율(%)

- ((② 연구지원인력(명)) / ① 전체연구인력(명)) * 100

⑤ 연구비10억당 연구지원인력수(명)

- 전체 연구비(A)를 분모로 하여 연구지원 인력(B)과 10억원을 곱한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함

$$\frac{\text{연구지원인력(B)} \times 10\text{억}}{\text{전체 연구비 연평균(A)}} = \text{연구비(10억원)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인력}$$

※ 전체 연구비 연평균(A) : 대학알리미 2021년 자료 최근 2년간 연구비의 합의 나눈값을 사용

○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

$$\frac{30\text{명} \times 10\text{억}}{1000\text{억}} = \frac{30 \times 10}{1000} = 0.3$$

※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

〈표 28〉 유형별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 수준

유형	대학명	①전체 연구인력(A)	②연구지원 인력(B)	③전체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④전체연구 지원인력비율 (B/A)	⑤연구비10억당 전체 연구지원 인력수
대규모	대-1	942	45	895	4.8	0.50
	대-2	1289	87	1393	6.7	0.62
	대-3	1038	114	856.00	11	1.33
	대-4	1043	105	1157	10.1	0.91
	대-5	1223	118	1942	9.6	0.61
	대-6	972	122	930	12.6	1.31
	대-7	1387	165	1706	11.9	0.97
	대-8	1784	220	4681	12.3	0.47
	대-9	569	57	475	10	1.20
	대-10	663	66	720	10	0.92
	대-11	332	33	302	9.9	1.09
	대-12	1020	83	340	8.1	2.44
	대-13	1003	118	902	11.8	1.31
	대-14	782	63	413	8.1	1.53
	대-15	506	44	240	8.7	1.83
	대-16	289	33	417	11.4	0.79
	대-17	615	66	702	10.7	0.94
	대-18	1418	124	1693.80	8.7	0.73
	대-19	413	34	561.94	8.2	0.61
	대-20	415	50	496	12	1.01
	대-21	2278	321	6.26	14.1	0.51
	대-22	450	53	532	11.8	1.00
	대-23	1525	161	4360	10.6	0.37
	대-24	556	84	759	15.1	1.11
	대-25	323	39.5	302.60	12.2	1.31
	대-26	930	76	522	8.2	1.46
	대-27	507	54	511	10.7	1.06
	대-28	746	81	1250	10.9	0.65
	대-29	1231	246	4758	11.5	0.52
	대-30	948	116	729	12.2	1.59
	대-31	1100	90	1606	8.2	0.56
	대-32	981	84	1235	8.6	0.68
	대-33	967	70	433	7.2	1.62
	대-34	890	144	1291	16.2	1.12
	대-35	1283	103	2000	8	0.52
	대-36	1083	94	1616	8.7	0.58
	대-37	593	71	653	12	1.09
	대-38	766	62	626	8.1	0.99
	대-39	1152	100	1579	8.7	0.63
	대-40	347	26	320	7.5	0.81

유형	대학명	①전체 연구인력(A)	②연구지원 인력(B)	③전체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④전체연구 지원인력비율 (B/A)	⑤연구비10억당 전체 연구지원 인력수
대규모	대-41	1032	76	1478	7.4	0.51
	대-42	760	65	928	8.6	0.70
	대-43	305	68	1869	22.3	0.36
	대-44	256	46	237	18	1.94
	대-45	748	60	433	8	1.39
	대-46	1531	204	3232	13.3	0.63
중규모	중-1	390	17	98.5	4.4	1.73
	중-2	371	32	172	8.6	1.86
	중-3	366	30	172	8.2	1.74
	중-4	460	32	181	7	1.77
	중-5	422	101	79	23.9	12.78
	중-6	844	44	398	5.2	1.11
	중-7	323	62	422	19.2	1.47
	중-8	232	51	267	22	1.91
	중-9	569	42	229	7.4	1.83
	중-10	322	29	153	9	1.90
	중-11	556	31	206.81	5.6	1.50
	중-12	124	14	171	11.3	0.82
	중-13	481	27	381	5.6	0.71
	중-14	294	23	69	7.8	3.33
	중-15	316	32	54.15	10.1	5.91
	중-16	422	32.5	299	7.7	1.09
	중-17	272	107	172	39.3	6.22
	중-18	732	66	387	9	1.71
	중-19	458	31	146.54	6.8	2.12
	중-20	490	32	375	6.5	0.85
	중-21	360	28.5	217	7.9	1.31
	중-22	482	25	206	5.2	1.21
	중-23	246	32	135	13	2.37
	중-24	321	30	293	9.3	1.02
	중-25	192	21	293	10.9	0.72
	중-26	50	39	14	78	27.86
	중-27	633	39	251	6.2	1.55
	중-28	165	30	172	18.2	1.74
	중-29	279	34	286	12.2	1.19
	중-30	406	34	155	8.4	2.19
	중-31	301	41	250	13.6	1.64
	중-32	474	56	173	11.8	3.24
	중-33	750	59	440.08	7.9	1.34
소규모	소-1	233	6	24.9	2.6	2.41
	소-2	113	27	16	23.9	16.88
	소-3	429	17	120	4	1.42

유형	대학명	①전체 연구인력(A)	②연구지원 인력(B)	③전체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④전체연구 지원인력비율 (B/A)	⑤연구비10억당 전체 연구지원 인력수
소규모	소-4	176	8	24	4.5	3.33
	소-5	133	8	22	6	3.64
	소-6	264	19	41	7.2	4.63
	소-7	283	5	63	1.8	0.79
	소-8	230	7	22.40	3	3.12
	소-9	127	6	13	4.7	4.62
	소-10	18	5.3	109	29.4	0.49
	소-11	12	4	2.7	33.3	14.81
	소-12	133	6	17	4.5	3.53
	소-13	174	5	22.5	2.9	2.22
	소-14	118	5	9.11	4.2	5.49
	소-15	318	39	50	12.3	7.80
	소-16	578	35	128	6.1	2.73
	소-17	244	24	79	9.8	3.04
	소-18	256	12	60	4.7	2.00
	소-19	209	15	53	7.2	2.83
	소-20	233	4	18	1.7	2.22
	소-21	263	15	49	5.7	3.06
	소-22	347	25	37.39	7.2	6.69
	소-23	251	12	101	4.8	1.19
	소-24	148	16.3	17.4	11	9.37
	소-25	161	10	8.7	6.2	11.49
	소-26	176	7	4.05	4	17.28
	소-27	290	18	24	6.2	7.50
	소-28	279	23	39	8.2	5.90
	소-29	488	13	24	2.7	5.42
	소-30	138	6	26	4.3	2.31
	소-31	237	10	16.77	4.2	5.96
	소-32	189	7	25	3.7	2.80
	소-33	10	2.94	1.89	29.4	15.52
	소-34	215	15	58	7	2.59
	소-35	254	13	86	5.1	1.51
	소-36	255	63	89	24.7	7.08
	소-37	101	7	20	6.9	3.50
	소-38	12	4	12.8	33.3	3.13
	소-39	232	11	93	4.7	1.18
	소-40	232	10	42.5	4.3	2.35
	소-41	171	4	10.31	2.3	3.88
	소-42	188	4	9	2.1	4.44
	소-43	82	6	18	7.3	3.30
	소-44	312	21	88.83	6.7	2.36
	소-45	262	11	61.96	4.2	1.78

유형	대학명	①전체 연구인력(A)	②연구지원 인력(B)	③전체연구비현황 (단위:천원)	④전체연구 지원인력비율 (B/A)	⑤연구비10억당 전체 연구지원 인력수
소규모	소-46	289	16	53	5.5	3.02
	소-47	177	7	44.67	4	1.57
	소-48	191	8	136	4.2	0.59
	소-49	218	8.8	15.80	4	5.57
	소-50	201	8	5	4	3.20
	소-51	291	18	70	6.2	2.57
	소-52	330	9	53	2.7	1.70
	소-53	141	11.5	7.18	8.2	16.02
	소-54	110	11	10	10	11.00
	소-55	99	9	17.7	9.1	5.08
	소-56	160	3	9	1.9	3.33
	소-57	173	9	40	5.2	2.25
	소-58	58	2	2	3.4	10.00
	소-59	133	11.6	1.6	8.7	72.50
	소-60	296	13	43	4.4	3.02
	소-61	141	10	23.6	7.1	4.24
	소-62	83	5	7.5	6	6.67
	소-63	163	30	76.7	18.4	3.91
	소-64	368	11	141	3	0.78
	소-65	76	5	4.42	6.6	11.30
	소-66	134	15	28	11.2	5.36
	소-67	211	11	76	5.2	1.45
	소-68	56	10	32.53	17.9	2.81
	소-69	161	7	22	4.3	3.18
	소-70	134	7	24	5.2	2.92
	소-71	13	8	20.72	61.5	3.86
	소-72	36	4	38.73	11.1	1.03
	소-73	117	5	27	4.3	1.85
	소-74	153	20	70.2	13.1	2.85
	소-75	118	15	17	12.7	8.82
	소-76	11	7	6.63	63.6	10.56
	소-77	260	37	99	14.2	3.74
소-78	265	26	73.59	9.8	3.53	
소-79	182	13	19	7.1	6.84	
소-80	174	14	59	8	2.37	
소-81	144	7	16	4.9	4.38	
소-82	279	15	65	5.4	2.31	

제3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SaaS형태의 대학 연구지원시스템 분류

□ 시스템 도입 현황(대학)

- '20년 대비 빌려쓰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율 2배 증가
 - 대학의 SaaS 도입율은 '20년 33.5%에서 '23년 64.6%로 증가
 - '23년 평가대상 대학(161개) 중 104개 대학에서 SaaS를 도입하여 연구지원시스템의 일반적 도입형태로 정착

〈표 29〉 대학 연구지원시스템 분야별 도입 현황

(단위: 개)

연도	클라우드(SaaS) 서비스				자체개발 시스템	기타
	민간		공공			
	r-ERP (웹캐시)	UnivRND (바자울)	u-ERP (사학진흥재단)	KORUS (교육부, 국립대지원관리 시스템)		
'20년 (총 167개)	36	12	4	4	111	n/a
'23년 (총 161개)	73	24	3	4	49	8

- '23년 소규모 대학일수록 SaaS 도입비중이 높음
 - 소규모 대학의 SaaS 도입율이 54.9%인 반면, 대규모 대학은 기구축·운영중인 자체개발시스템을 선호(56.5% 차지)

〈표 30〉 '23년 대학 규모별 연구지원시스템 도입 현황

(단위: 개)

유형	클라우드(SaaS) 서비스				자체개발 시스템	기타
	r-ERP (웹캐시)	UnivRND (바자울)	u-ERP (사학진흥재단)	KORUS (교육부, 국립대지원관리 시스템)		
대규모	11	0	7	0	26	2
중규모	17	0	4	2	10	0
소규모	45	3	13	2	13	6

- '23년 대학규모에 관계없이 SaaS 도입시 평가점수 높음
 - 특히, 소규모 대학의 SaaS 도입시 평균 12.9점, 자체개발시스템의 평점 평균 10점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

〈표 31〉 '23년 대학규모 및 연구지원시스템 평균점수 현황

(단위: 점)

유형	클라우드(SaaS) 서비스				자체개발 시스템	기타
	r-ERP (웹캐시)	UnivRND (바자울)	u-ERP (사학진흥재단)	KORUS (교육부, 국립대지원관리 시스템)		
대규모	14.6	-	14.9	-	13.9	14.2
중규모	13.9	-	14.5	14.5	12.7	13.7
소규모	12.9	9	12.8	12	10	11.9

□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 현황

- '23년 기준 민간 클라우드(웹캐시, 바자울) 도입 압도적
 - 공공 클라우드는 감소(7개), 민간 클라우드가 전체의 60% 처자(97개)
 - * 공공 클라우드인 u-EPR(사학진흥재단)는 22년 서비스 종료
- 동일한 S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능적 평가의 점수 차이 작음
 - 평가항목 '전산화 이용수준 및 전산화 범위'에서 동일한 수준
 -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기준의 서비스 제공 기능 동일

□ 시사점

- 시스템 기능보유 중심의 평가 → 활용수준 중심의 평가로 지표개선
 -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 → 서비스 이용자의 활용수준 평가로 전환

〈평가 지표 반영〉

신규구축 및 고도화 구축계획 및 구축 여부(전문연간의 형평성 확보 기능)
 시스템보안 계획 수립등 운영수준, 고도화 구축 실적(지속적 기능개선 유도)
 시스템운영지원 전담 기술인력 보유수준(기술지원 인력 확대 유도)

〈표 32〉 SaaS형태 연구지원시스템 분류

유형	제품명	개발주체	특징
민간	r-ERP	웹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개 대학에서 사용 중 • 기업은행 자금유치(평균잔고 유지 등)
	UnivRND	바자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대학에서 사용중 • 부산은행 자금유치 연계 → 독자 서비스 확대
공공	U-ERP	사학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학진흥재단 개발 및 배포 • 일부 기능구현 및 시스템 확장성 부족으로 2022년 서비스 종료 • 3개 대학에서 사용중
	KORUS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개발 및 배포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근거 • 시스템 및 일부 기능 부족(정보연계, 성과공유 등) • 4개 국립대에서 사용중

○ 지표별 작성 기준*

* 지표별 데이터는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작성된 수치를 인용함

제4절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표 33〉 대학별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평균

유형	기관수	간접비 수익	성과 활용 지원비	비율 (4%/6%이상)	학교 회계 전출금	비율 (20/40%)	연구 보안 관리비	비율 (0.5/1%)	안전 관리비	비율 (1% 이상)
대규모	46	20,692	843	4	3,913	19	44	0	374	2
중규모	33	3484.8	151.5	3.7	619.9	18.4	3.8	0.1	60.3	1.7
소규모	82	622.0	17.8	2.9	98.5	13.2	0.7	0.1	8.9	1.2

○ 지표별 작성 기준*

* 지표별 데이터는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작성된 수치를 인용함

【간접비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II.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① 성과활용지원비

구분	간접비 수익 전체(A)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비율 (B/A)
		총계(B)	성과활용 지원비 ¹⁾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중 지식재산권 등 성과활용 관련 금액 ²⁾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전기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당기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평균				

【성과활용지원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III. 간접비 지출내역 - 3. 성과활용지원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주1. 결산서에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간접비 원가산출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주2.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중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선금금 발생액 등 성과활용 금액을 기재함.

② 학교회계전출금

구분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단위: 천원)		
	간접비수익 (A)	학교회계전출금(B)	C=B/A*100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학교회계전출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IV.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의 합리성 검토

※ 특히, 간접비수익,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③ 연구보안관리비

구분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단위: 비율%)		
	간접비수익 (A)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금액 및 비율(B/A)	
		연구보안관리비(B)	비율(B/A)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연구보안관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2. 연구지원비 - 5) 연구보안관리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보안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보안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④ 안전관리비

구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단위: 비율%)		
	간접비수익 (A)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출 금액 및 비율(B/A)	
		연구실 안전관리비(B)	비율(B/A)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전 계획수립】 연구안전관리비의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 공문 등의 증빙 서류 제출
 【연구안전관리비 지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2. 연구지원비 - 4) 연구실안전관리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6호 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표 34〉 대학별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유형	대학명	간접비 수익	성과 활용 지원비	비율 (4%/ 6%이상)	학교 회계 전출금	비율 (20/ 40%)	연구 보안 관리비	비율 (0.5/ 1%)	안전 관리비	비율 (1% 이상)
대규모	대-1	13,794	125	0.9	3,342	24.2	138	1.0	283	2.1
	대-2	16,943	265	1.6	5,505	32.5	-	0.0	238	1.4
	대-3	16,692	83	0.5	1,259	7.5	9	0.1	268	1.6
	대-4	16,692	476	2.9	1,880	11.3	443	2.7	475	2.8
	대-5	33,297	2,103	6.3	4,360	13.1	3	0.0	741	2.2
	대-6	17,829	767	4.3	-	0.0	3	0.0	529	3.0
	대-7	25,753	2,026	7.9	10,600	41.2	-	0.0	89	0.3
	대-8	65,723	4,310	6.6	8,994	13.7	758	1.2	1,756	2.7
	대-9	7,846	66	0.8	2,246	28.6	-	0.0	275	3.5
	대-10	10,689	432	4.0	2,507	23.5	0	0.0	262	2.5
	대-11	4,248	117	2.8	731	17.2	0	0.0	91	2.1
	대-12	11,833	311	2.6	4,229	35.7	0	0.0	118	1.0
	대-13	12,888	543	4.2	4,106	31.9	0	0.0	178	1.4
	대-14	6,884	630	9.2	-	0.0	0	0.0	113	1.6
	대-15	4,330	196	4.5	2,250	52.0	2	0.0	84	1.9
	대-16	3,350	141	4.2	549	16.4	1	0.0	52	1.6
	대-17	13,048	474	3.6	-	0.0	-	0.0	266	2.0
	대-18	32,083	1,008	3.1	3,276	10.2	-	0.0	729	2.3
	대-19	11,750	775	6.6	3,174	27.0	-	0.0	195	1.7
	대-20	9,058	316	3.5	1,708	18.9	-	0.0	171	1.9
	대-21	128,769	3,683	2.9	20,453	15.9	17	0.0	2,427	1.9
	대-22	8,404	578	6.9	88	1.0	0	0.0	62	0.7
	대-23	39,790	549	1.4	7,670	19.3	554	1.4	-	0.0
	대-24	13,008	976	7.5	2,225	17.1	2	0.0	253	1.9
	대-25	5,508	159	2.9	967	17.6	3	0.0	116	2.1
	대-26	8,203	255	3.1	1,725	21.0	-	0.0	50	0.6
	대-27	7,925	513	6.5	미제출	0.0	-	0.0	미제출	0.0
	대-28	20,361	868	4.3	13,450	66.1	-	0.0	335	1.6
	대-29	73,211	2,482	3.4	22,682	31.0	1	0.0	1,100	1.5
	대-30	9,185	195	2.1	1,463	15.9	-	0.0	-	0.0
	대-31	11,291	653	5.8	-	0.0	1	0.0	86	0.8
	대-32	17,905	808	4.5	4,755	26.6	0	0.0	526	2.9
	대-33	5,149	369	7.2	274	5.3	-	0.0	66	1.3
	대-34	20,784	808	3.9	8,500	40.9	-	0.0	997	4.8
	대-35	26,657	1,125	4.2	1,049	3.9	1	0.0	526	2.0
	대-36	23,347	483	2.1	2,668	11.4	3	0.0	517	2.2
	대-37	9,670	198	2.0	1,940	20.1	65	0.7	251	2.6
	대-38	10,445	97	0.9	887	8.5	-	0.0	80	0.8
	대-39	20,547	626	3.0	8,801	42.8	3	0.0	190	0.9
	대-40	6,024	262	4.3	625	10.4	4	0.1	221	3.7

유형	대학명	간접비 수익	성과 활용 지원비	비율 (4%/ 6%이상)	학교 회계 전출금	비율 (20/ 40%)	연구 보안 관리비	비율 (0.5/ 1%)	안전 관리비	비율 (1% 이상)
대규모	대-41	23,552	644	2.7	4,071	17.3	0	0.0	472	2.0
	대-42	15,643	1,079	6.9	-	0.0	11	0.1	601	3.8
	대-43	44,633	1,505	3.4	6,259	14.0	2	0.0	606	1.4
	대-44	3,940	82	2.1	2,579	65.5	14	0.4	40	1.0
	대-45	7,546	246	3.3	684	9.1	4	0.1	36	0.5
	대-46	55,612	4,353	7.8	1,568	2.8	4	0.0	370	0.7
중규모	중-1	1745	62	3.6	625	35.8	0	0.0	26.5	1.5
	중-2	3114	164	5.3	175	5.6	4	0.1	84	2.7
	중-3	1759	75	4.3	150	8.5	0	0.0	52	3.0
	중-4	3190	46	1.4	2557	80.2	0	0.0	23	0.7
	중-5	2118	34	1.6	550	26.0	0	0.0	54	2.5
	중-6	5017	117	2.3	893	17.8	0	0.0	41	0.8
	중-7	5310	490	9.2	1350	25.4	0.2	0.0	14	0.3
	중-8	5316	142	2.7	1035	19.5	0	0.0	82	1.5
	중-9	3274	55	1.7	0	0.0	31	0.9	80	2.4
	중-10	3029	454	15.0	756	25.0	0.1	0.0	2.5	0.1
	중-11	2705	100	3.7	1215	44.9	0	0.0	69	2.6
	중-12	1719	46	2.7	11.6	0.7	0.6	0.0	25	1.5
	중-13	3442	348	10.1	610	17.7	0	0.0	34.7	1.0
	중-14	2204	155	7.0	0.2	0.0	1.3	0.1	26	1.2
	중-15	1054	3.3	0.3	906	86.0	14.5	1.4	18	1.7
	중-16	7819	332	4.2	891	11.4	1	0.0	102	1.3
	중-17	2815	23	0.8	488	17.3	0	0.0	0	0.0
	중-18	6028	138	2.3	400	6.6	0	0.0	170	2.8
	중-19	1303	미제출	0	미제출	0.0	0	0.0	미제출	0.0
	중-20	5930	360	6.1	250	4.2	0	0.0	98	1.7
	중-21	2518	103	4.1	375	14.9	0	0.0	43	1.7
	중-22	4530	336	7.4	1746	38.5	24.5	0.5	85	1.9
	중-23	2462	15	0.6	0	0.0	0	0.0	41	1.7
	중-24	4129	56	1.4	0	0.0	2	0.0	85	2.1
	중-25	2389	11	0.5	525	22.0	0	0.0	84	3.5
	중-26	882	미제출	0	미제출	0.0	0	0.0	미제출	0.0
	중-27	4337	130	3.0	1300	30.0	4	0.1	33	0.8
	중-28	3540	39	1.1	890	25.1	0	0.0	34.3	1.0
	중-29	5177	88	1.7	249	4.8	0.5	0.0	164	3.2
	중-30	1814	83.8	4.6	361	19.9	0	0.0	106	5.8
	중-31	5421	266	4.9	46	0.8	2.4	0.0	106	2.0
	중-32	4018	80	2.0	251	6.2	38.9	1.0	47.2	1.2
	중-33	4,891	345	7.1	610	12.5	2	0.1	39	0.8
소규모	소-1	459	2	0.4	230	50.1	0	0.0	3	0.7

유형	대학명	간접비 수익	성과 활용 지원비	비율 (4%/ 6%이상)	학교 회계 전출금	비율 (20/ 40%)	연구 보안 관리비	비율 (0.5/ 1%)	안전 관리비	비율 (1% 이상)
소규모	소-2	342	0	0	65	19.0	0	0.0	0	0.0
	소-3	1602.7	51	3.2	650	40.6	15.4	1.0	15.6	1.0
	소-4	364.5	1.5	0.4	40	11.0	0	0.0	6	1.6
	소-5	229	0	0	0	0.0	0	0.0	0.4	0.2
	소-6	1092	18	1.6	0	0.0	0	0.0	13.8	1.3
	소-7	794	18	2.3	150	18.9	4	0.5	31	3.9
	소-8	388	14.6	3.8	18.5	4.8	0.5	0.1	6.8	1.8
	소-9	74	4	5.9	0	0.0	0	0.0	0	0.0
	소-10	957	0	0	225	23.5	0	0.0	2	0.2
	소-11	30.8	0	0	2.35	7.6	0	0.0	1.8	5.8
	소-12	173	16	9.5	10	5.8	-	0.0	18	1.5
	소-13	116		0	0	0.0	0	0.0	0	0.0
	소-14	233	30	12.9	30	12.9	0	0.0	3	1.3
	소-15	637	30.7	4.8	100	15.7	0.4	0.1	9.7	1.5
	소-16	2542	74	2.9	237	9.3	0	0.0	48	1.9
	소-17	1486	60	4.0	0	0.0	1	0.1	16.3	1.1
	소-18	735	39	5.3	60	8.2	0	0.0	20	2.7
	소-19	1261	28	2.2	375	29.7	0	0.0	58.3	4.6
	소-20	538	2	0.4	0	0.0	0	0.0	9	1.7
	소-21	1040	64	6.2	240	23.1	0	0.0	22	2.1
	소-22	1438	83	5.8	215	15.0	0	0.0	18	1.3
	소-23	1005	45	4.5	272	27.1	0	0.0	3.6	0.4
	소-24	236	4.5	1.9	45.5	19.3	0	0.0	0	0.0
	소-25	470	1	0.2	0	0.0	0	0.0	1	0.2
	소-26	153.6	1.24	0.8	0	0.0	0	0.0	1.12	0.7
	소-27	529	5	0.9	45	8.5	0.5	0.1	16	3.0
	소-28	1306	254	19.4	0	0.0	0	0.0	8.5	0.7
	소-29	360	2	0.6	0	0.0	0.1	0.0	6.5	1.8
	소-30	489	10	2.0	145	29.7	1.3	0.3	2.4	0.5
	소-31	340	1.5	0.4	67	19.7	0.3	0.1	0.8	0.2
	소-32	755	0.8	0.1	미제출	0.0	0	0.0	0	0.0
	소-33	25	0	0	0	0.0	0	0.0	0	0.0
	소-34	1070	29.5	2.8	70	6.5	14.8	1.4	20.3	1.9
	소-35	1228	4	0.3	192	15.6	0	0.0		0.0
	소-36	1325	17.6	1.3	14.5	1.1	0	0.0	48	3.6
	소-37	403	0	0	181	44.9	0	0.0	0	0.0
	소-38	189	4.3	2.3	10	5.3	1.6	0.8	0.8	0.4
	소-39	1079	116	10.8	202	18.7	0.5	0.0	19.8	1.8
	소-40	565	27.8	4.9	60	10.6	0	0.0	4	0.7
	소-41	320	10	3.1	9	2.8	0	0.0	0	0.0
	소-42	395	6.4	1.6	20	5.1	0	0.0	0.2	0.1

유형	대학명	간접비 수익	성과 활용 지원비	비율 (4%/ 6%이상)	학교 회계 전출금	비율 (20/ 40%)	연구 보안 관리비	비율 (0.5/ 1%)	안전 관리비	비율 (1% 이상)
소규모	소-43	216	0	0	4	1.9	0	0.0	0	0.0
	소-44	1472	13	0.9	235	16.0	0	0.0	4	0.3
	소-45	723	0	0	100	13.8	0	0.0	77	10.7
	소-46	409	4	1.1	-	0.0	-	0.0	3	0.8
	소-47	1185	17	1.4	229	19.3	0	0.0	15	1.3
	소-48	883	12	1.4	259	29.3	0	0.0	0	0.0
	소-49	213	10	4.7	0	0.0	0	0.0	0.3	0.1
	소-50	225	0	0	164	72.9	0	0.0	1.2	0.5
	소-51	1927	44	2.3	400	20.8	0	0.0		0.0
	소-52	842	3.7	0.4	250	29.7	3	0.4	21	2.5
	소-53	118	4.8	4.1	5	4.2	0	0.0	3.3	2.8
	소-54	197	미제출	0	미제출	0.0	0	0.0	미제출	0.0
	소-55	102	0	0	0	0.0	0	0.0	0	0.0
	소-56	256	9	3.5		0.0	0	0.0	2	0.8
	소-57	708	1	0.1	0	0.0	0	0.0	6.7	0.9
	소-58	10.6	1.5	14.2	0	0.0	0	0.0	0	0.0
	소-59	42	12	28.6	0	0.0	0	0.0	2	4.8
	소-60	533	23	4.3	0	0.0	0	0.0	3	0.6
	소-61	444	21	4.7	130	29.3	0	0.0	3.3	0.7
	소-62	37	5.3	14.3	0	0.0	0	0.0	1.5	4.1
	소-63	463	4.8	1.0	25.4	5.5	0	0.0	0	0.0
	소-64	1506	30	2.0	400	26.6	0	0.0	29	1.9
	소-65	76	0	0	0	0.0	0	0.0	0	0.0
	소-66	237	6.6	2.8	25	10.5	0	0.0	0	0.0
	소-67	1121	3	0.3	0	0.0	0	0.0	9.5	0.8
	소-68	468	미제출	0	미제출	0.0	미제출	0.0	미제출	0.0
	소-69	269	미제출	0	미제출	0.0	0	0.0	미제출	0.0
	소-70	467	0	0	1	0.2	0	0.0	0	0.0
	소-71	519	1.8	0.3	107	20.6	2.2	0.4	0	0.0
	소-72	287	0	0	0	0.0	0	0.0	6.3	2.2
	소-73	419	5.8	1.4	0	0.0	0	0.0	0.5	0.1
	소-74	1734	26	1.5	375	21.6	0	0.0	16.6	1.0
소-75	373	7.7	2.1	110	29.5	0	0.0	3.2	0.9	
소-76	23.1	0	0	8.6	37.2	0	0.0	0	0.0	
소-77	1377	2	0.1	125	9.1	0	0.0	14.7	1.1	
소-78	953	15	1.6	123	12.9	9.9	1.0	10	1.0	
소-79	296	6.7	2.3	400	135.1	0.2	0.1	1.2	0.4	
소-80	528	3.6	0.7	0	0.0	0	0.0	0	0.0	
소-81	146	4.3	2.9	0	0.0	0.5	0.3	0.8	0.5	
소-82	424	15	3.5	126	29.7	0	0.0	6	1.4	

제5절 '23년 연구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함.
- 본 과업은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연구 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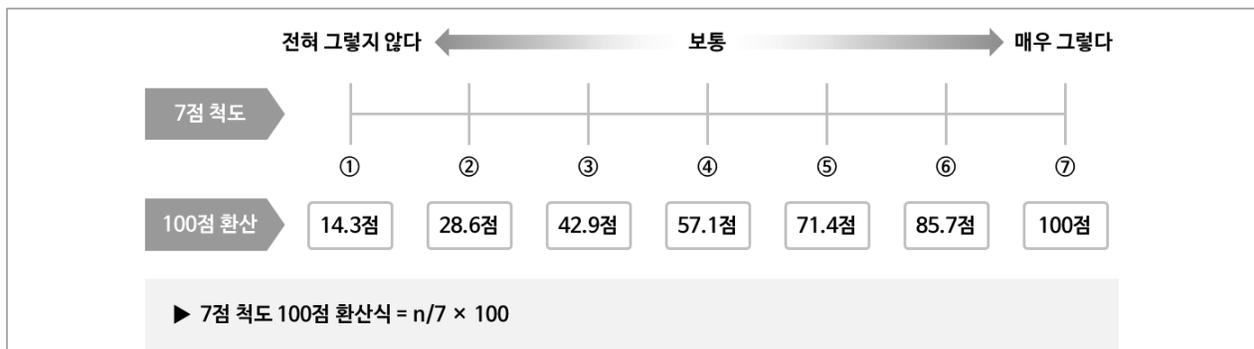
□ 조사 설계

〈표 35〉 연구자 만족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소속 연구자
조사규모	• 150개 기관, 총 4,626표본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조사(이메일)
조사내용	• 연구지원 기준 및 규정 투명성 •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 적극성 • 연구지원 문제해결 노력 • 연구자 처우개선 노력 •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노력
조사기간	• 2023년 5월 11일 ~ 5월 26일

□ 평가지표 산출 방법

- 각 항목 만족도의 100점 평균을 다음 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관별 평가지표를 산출함.
- 기관별로 만족도 상위 2.5% 및 하위 2.5%(소수점 이하 인원수 절사) 응답자는 제외하며,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상·하위 각 1명을 제외함. (응답자 수 3명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그림 4] 7점 척도 100점 환산 방법

〈표 36〉 평가지표 산출 방법

평가지표	산출 방법
10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인 경우
9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8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7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6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5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
4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경우
3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10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0점	•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10점 미만인 경우

□ 응답자 특성

〈표 37〉 응답자 특성

구분		사레수(명)	비율(%)
전체		(4,626)	100.0
성별	남성	(2,923)	63.2
	여성	(1,709)	36.8
연령	20대	(1,170)	25.3
	30대	(989)	21.4
	40대	(1,231)	26.6
	50대	(952)	20.6
	60대 이상	(284)	6.1
최종학력	학사 미만	(282)	6.1
	학사 졸업	(1,026)	22.2
	석사 졸업	(637)	13.8
	박사 졸업	(2,681)	58.0
전공계열	공학계열	(1,865)	40.3
	자연계열	(1,119)	24.2
	인문계열	(442)	9.6
	사회계열	(423)	9.1
	상경제열	(187)	4.0
	의약계열	(450)	9.7
	기타	(140)	3.0
직종	전임교원	(2,055)	44.4
	비전임교원	(468)	10.1
	Post-doc	(140)	3.0
	연구원(학생연구자 포함)	(1,856)	40.1
	기타	(107)	2.3
소속	대학/대학원 소속(연구소 등)	(4,018)	86.9
	산학협력단 소속(사업단 등)	(581)	12.6
	기타	(27)	0.6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626)	100.0
해당 분야 경력	1년 미만	(519)	11.2
	1~3년 미만	(798)	17.3
	3~5년 미만	(433)	9.4
	5~10년 미만	(4732)	15.8
	10~20년 미만	(1,147)	24.8
	20년 이상	(997)	21.6
근속연수	1년 미만	(731)	15.8
	1~3년 미만	(1,144)	24.7
	3~5년 미만	(640)	13.8
	5~10년 미만	(815)	17.6
	10~20년 미만	(794)	17.2
	20년 이상	(502)	10.9
고용형태	정규직	(2,256)	48.8
	무기계약직	(225)	4.9
	기간제계약직	(1,371)	29.6
	기타	(774)	16.7

2. 조사 결과 종합

□ 기관별 만족도 및 평가지표

〈표 38〉 기관별 만족도 환산 점수

구분	사례수 (명)	연구지원 만족도 (100점 만점)	평가지표 (10점 만점)	
대규모	대-1	72	96	10
	대-2	41	67.8	8
	대-3	65	81.3	10
	대-4	24	66.2	8
	대-5	188	77.7	9
	대-6	62	81	10
	대-7	120	72.2	9
	대-8	107	70.8	9
	대-9	55	76.3	9
	대-10	37	80.5	10
	대-11	37	81.2	10
	대-12	33	76.7	9
	대-13	31	88.8	10
	대-14	9	72.1	9
	대-15	70	87.8	10
	대-16	48	88.1	10
	대-17	47	82.2	10
	대-18	119	73.9	9
	대-19	24	85.1	10
	대-20	53	80.2	10
	대-21	172	70.9	9
	대-22	26	78.6	9
	대-23	90	84	10
	대-24	39	78.4	9
	대-25	40	71.2	9
	대-26	35	82	10

구분		사례수 (명)	연구지원 만족도 (100점 만점)	평가지표 (10점 만점)
대규모	대-27	30	73.2	9
	대-28	105	76.8	9
	대-29	242	79.1	9
	대-30	127	86.7	10
	대-31	31	76.6	9
	대-32	44	67.9	8
	대-33	22	74	9
	대-34	98	77.2	9
	대-35	157	94.2	10
	대-36	21	73.9	9
	대-37	32	74.3	9
	대-38	41	80.2	10
	대-39	26	70.5	9
	대-40	16	79.6	9
	대-41	124	76.4	9
	대-42	41	72.3	9
	대-43	73	72.2	9
	대-44	56	89.9	10
	대-45	58	71.2	9
	대-46	136	72	9
중규모	중-1	14	62.9	8
	중-2	36	75.1	9
	중-3	6	63.3	8
	중-4	17	73.8	9
	중-5	5	65.7	8
	중-6	34	73.4	9
	중-7	38	83.8	10
	중-8	5	85.1	10
	중-9	11	60.5	8
	중-10	31	91.2	10
	중-11	60	81.1	10

	구분	사례수 (명)	연구지원 만족도 (100점 만점)	평가지표 (10점 만점)
중규모	중-12	8	72.1	9
	중-13	24	94.6	10
	중-14	94	92.4	10
	중-15	1	97.1	10
	중-16	16	84.1	10
	중-17	3	67.6	8
	중-18	25	80.3	10
	중-19	10	69.7	8
	중-20	7	87.3	10
	중-21	2	92.9	10
	중-22	39	83.2	10
	중-23	14	74.7	9
	중-24	10	63.7	8
	중-25	13	74.5	9
	중-26	11	66.5	8
	중-27	138	95.1	10
	중-28	11	87.3	10
	중-29	34	94.9	10
	중-30	16	90.5	10
	중-31	12	78.3	9
중-32	59	81.9	10	
소규모	소-1	40	83.9	10
	소-2	2	82.9	10
	소-3	12	69.3	8
	소-4	10	83.7	10
	소-5	1	65.7	8
	소-6	3	84.8	10
	소-7	5	60	8
	소-8	7	74.7	9
	소-9	4	72.9	9
	소-10	2	97.1	10

구분		사례수 (명)	연구지원 만족도 (100점 만점)	평가지표 (10점 만점)
소규모	소-11	1	71.4	9
	소-12	2	71.4	9
	소-13	9	76.5	9
	소-14	16	85.7	10
	소-15	7	57.6	7
	소-16	9	90.2	10
	소-17	27	84.4	10
	소-18	7	83.3	10
	소-19	9	96.8	10
	소-20	3	54.3	7
	소-21	7	91.8	10
	소-22	3	68.6	8
	소-23	5	72	9
	소-24	1	85.7	10
	소-25	7	99.6	10
	소-26	47	86.7	10
	소-27	7	90.2	10
	소-28	3	85.7	10
	소-29	2	98.6	10
	소-30	36	95.5	10
	소-31	8	80.4	10
	소-32	19	87.4	10
	소-33	10	83.4	10
	소-34	23	77.5	9
	소-35	5	78.3	9
	소-36	11	76.6	9
	소-37	1	85.7	10
	소-38	1	60	8
	소-39	22	82.5	10
	소-40	22	71.3	9
	소-41	6	80.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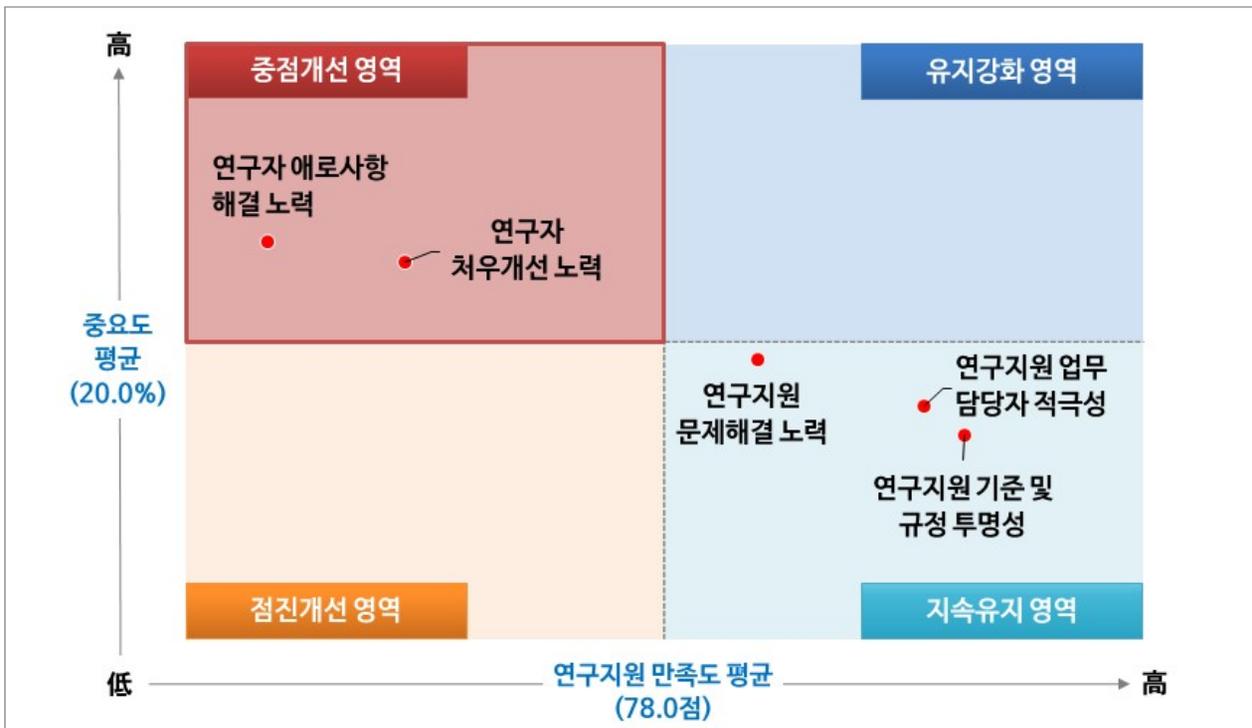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연구지원 만족도 (100점 만점)	평가지표 (10점 만점)
소규모	소-42	29	77.1	9
	소-43	2	65.7	8
	소-44	13	94.5	10
	소-45	14	94.7	10
	소-46	28	83.6	10
	소-47	3	68.6	8
	소-48	8	96.1	10
	소-49	29	97.2	10
	소-50	3	74.3	9
	소-51	9	86.3	10
	소-52	1	85.7	10
	소-53	4	76.4	9
	소-54	14	92.9	10
	소-55	16	77.9	9
	소-56	5	94.9	10
	소-57	3	58.1	7
	소-58	4	94.3	10
	소-59	5	70.9	9
	소-60	3	52.4	7
	소-61	5	72.6	9
	소-62	2	58.6	7
	소-63	4	71.4	9
	소-64	1	77.1	9
	소-65	3	60	8
	소-66	2	82.9	10
	소-67	5	82.3	10
소-68	20	88.7	10	
소-69	27	90.5	10	
소-70	3	73.3	9	
소-71	2	82.9	10	
소-72	9	93.7	10	

□ IPA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이란?

: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 간 관계를 2차원 축으로 도식화하여 만족도 제고 활동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 기법

- IPA 분석 결과,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노력’ 및 ‘연구자 처우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으로 분류되어 우선적인 개선이 요구됨.
- 그 외 항목은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 속해 현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39〉 IPA 분석결과

구분	항목	만족도(점)	중요도(%)
중점개선 영역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노력	74.4	23.5
	연구자 처우개선 노력	77.7	22.0
지속유지 영역	연구지원 문제해결 노력	82.5	18.6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 적극성	83.7	18.1
	연구지원 기준 및 규정 투명성	83.4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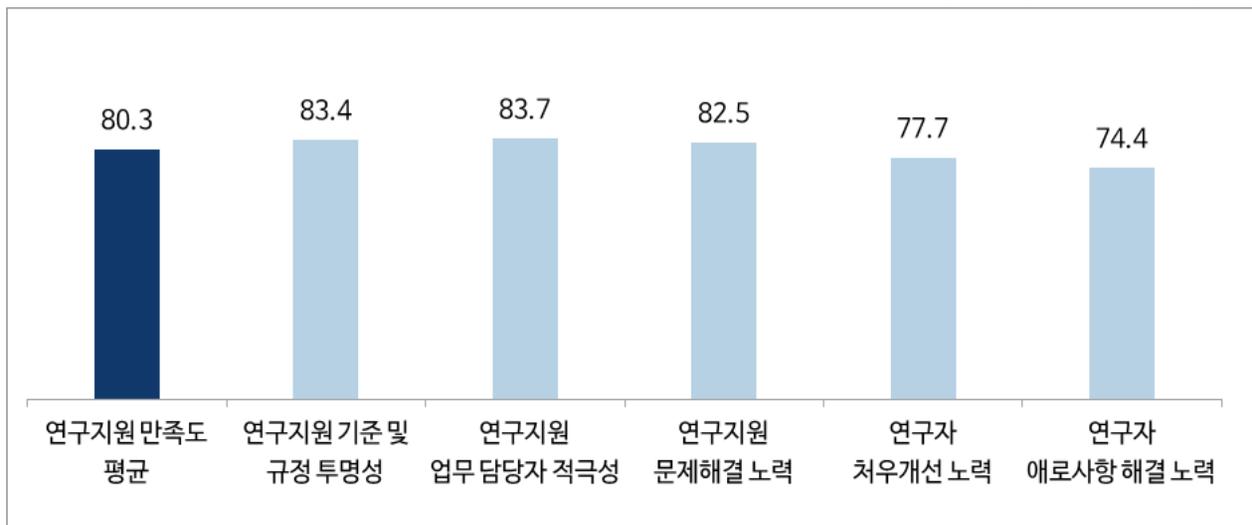
※ 중요도는 연구지원 만족도 평균과 각 항목 만족도 간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회귀계수의 합이 100.0%가 되도록 환산한 값을 활용함.

3. 항목별 조사 결과

□ 요약

- 연구지원 만족도 평균 점수는 80.3점으로 조사됨.
- 연구비 규모별로는 중규모(100억 원 이상 ~ 250억 원 미만)인 대학에서 만족도(84.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규모(250억 원 이상)인 대학의 만족도(78.5점)가 타 규모 대비 낮게 나타남.
- 항목별 만족도는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 적극성'(83.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지원 기준 및 규정 투명성'(83.4점), '연구지원 문제해결 노력'(8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노력'(74.4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연구자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 연령 및 해당분야 경력/근속연수에 따른 만족도는 '30대', '3~5년 미만' 연구자가 직종별로는 'Post-doc' 과정의 연구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단위: 점, Base: 전체(n=4,556)]



〈표 40〉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연구지원 만족도 평균	연구지원 기준 및 규정 투명성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 적극성	연구지원 문제해결 노력	연구자 처우개선 노력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노력	
전체	(4,626)	80.3	83.4	83.7	82.5	77.7	74.4	
소속 기관 유형	① 대규모	(3,124)	78.5	82.0	82.1	80.8	75.6	71.9
	② 중규모	(804)	84.4	86.7	87.1	86.1	82.4	79.7
	③ 소규모	(698)	83.9	85.5	87.1	86.1	81.4	79.2

제 4 장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개선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제1절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개선

'23년 대학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및 '24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유형 제도개선 등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함.

첫째, 포커스그룹 구성하여 운영함. '23.11. - 12.(2개월)동안 9명으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Unstandardized interview 등을 수행함.

둘째, 16개 전문(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함

셋째, 과학기술혁신본부 개별과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수요를 발굴함. 이상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포커스 그룹 구성·운영」

□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 10여명 내외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Unstandardized interview 결과의 정성적 분석,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등 수행

(세부 1번 지표)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 노력

- 연구지원 전담조직구성에 '타 업무와 겸임' 혹은 '전담'시 '겸임' 수준 인정기준이나 '전담' 수준 확인 방안으로 업무 기능을 0.4 수준 이상 분장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대학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다수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 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지만, 많은 대학이 기능을 세분하고 전담인력을 다수 기능을 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판단이 어려움.
- 업무 분장에 따른 주 업무 및 부 업무 구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다수 기능별 업무분장표와 교육활동 연계표가 질적인 면에서 향상됨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전담자는 발령 공문, 검수 기록, 근무일지 기록 증빙이 필요하며 겸임자는 발령 공문과 검수 기록 증빙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전담과 겸임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증빙의 일관성이 필요.

(세부 2번 지표)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 연구지원기능 및 부서별 인원 기재에 있어 보고서와 별도의 증빙자료를 통해 인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화가 연구지원인력의 체계성에 도움이 되는 지표인지 고민·검토가 필요.
- 연구지원인력 인원수를 늘리기보단 시스템과 연구자의 자율성이 더 강조가 필요.

(세부 3번 지표) 연구자 근로계약/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 근로계약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어느 한 유형의 연구자(박사 후 연구원, 전인 연구원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연구자에 대한 규정도 존재함. 따라서 중복 및 점수 배당 과다로 '박사 후 연구원, 전임 연구원 등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계약직 연구원 등'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세부 3-5번 지표)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 평가 기준 및 배점 누락에 관한 보완이 필요.
- 자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정확한 날짜 조회가 어려움. NTIS 체재 기록에 따른 감점 기준의 재검토 필요하며 과기부, 혁신법 외 교육부 등의 체재 정보를 포함한 감사자료 제출이 필요함.

(세부 6번 지표) 기관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반적으로 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 대부분 대학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전담부서 내에서 구축 운영 중이며, '추가개발 항목' 신설로 시스템 고도화 노력 및 지속성 파악이 가능하나 기존 시스템 (학사정보, ERP, 산학협력 시스템 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대학 시스템과 기능별로 구분하는 '연구지원시스템 구성도'에 관한 추가 안내가 필요
- 시스템 보안계획 및 대책 미수립,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추가적 정보보호 인식 및 수준 미흡등 시스템 보안 인식이 취약함. 따라서 연구정보 및 연구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지원시스템의 보안 관리(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평가항목을 별도 구성 필요.
- 예산서상 기타비목으로 편성하거나 세부내역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산단회계 기준을 바꾼 별도 비목편성이 아닌 세부내역에서 편성내역을 기재하도록 별도 안내 필요.

(세부 7번 지표)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참여 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및 연구비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 감점하고 내부신고하며 자체 조사인 경우 상쇄함.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처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기관 자체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한 행정 조치로 판단됨.

(세부 8-1번 지표) 직접비의 적절성

- 장비 및 재료비의 중앙구매 이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단가기준을 명시된 규정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템플릿에 관련 규정 제출 여부 반영이 필요.

(세부 8-2번 지표) 간접비의 적절성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출받을 필요 및 증빙자료 목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가 필요함.
- 간접비 지출 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함에 있어 운영계산서 금액과의 차이를 별도의 양식(차이사유 포함)으로 제출받아서 간접비 지출 내역서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세부 9번 지표)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 차별성 없이 중복되거나 일부업무 및 필수 수행업무 등을 제출하여 우수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작성제한 기준이 없어 용량이 제각각으로 작성제한 기준 안내가 필요함.

2. 「전문(연) 의견수렴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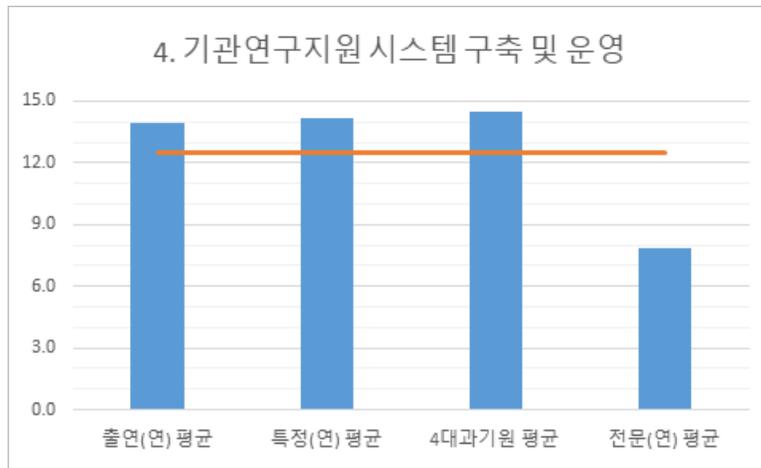
[전문(연) 의견]

- 시스템 구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예산 요청

1) 전문(연) 연구지원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이하 체계평가) 결과 출연(연) 대비 전문(연)*의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 미흡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연) 16개 기관 중 미신청 2개 기관(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제외한 14개 기관



[그림 5] '22 체계평가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평가결과 평균 비교

〈표 41〉 '22 체계평가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배점

4. 기관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①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5
	③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3
	④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성	3

- 14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과제관리 수기입력 중
- 일부 기관은 '22년 말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전문(연) 입장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연 4~5억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전문(연) 간담회 의견, '22.8.29-30.)

□ 검토의견

- (단기적) 중·소규모 대학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 시스템 용역(SaaS: Software as a Service 형태)* 활용하여 비용 부담 완화를 제안 유도
 - * SaaS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 완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제공됨
 - 연구지원시스템만 사용할 경우 월 1백만원, 전체 경영관리시스템(ERP 시스템)과 연구지원시스템 활용 시 월 300만원 내외 소요 예상
- (장기적) 기관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연구행정 효율성 향상 유도 필요

2). 「연구지원인력 운영」지표 하향 요청 관련

[전문(연) 의견]

• 출연(연) 대비 연구지원인력 운영지표* 하향 조정

* (관련지표) 1-2. 전담검수인력 확보, 2-1. 연구인력 대비 지원인력 확보, 2-2. 연구비 10억원당 지원인력

□ 개 요

- '22년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20년에 비해 과도하게 상향되었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됨
 - 특히 전문(연)의 경우 인력수급의 경직성을 고려 평가기준 완화 요청(전문(연) 간담회 의견, '22.8.29-30.)
-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이하 체계평가) “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 기능 설치”, “2. 연구지원인력의 운영수준” 결과분석을 통해 '24년 전문(연) 평가지표 개선 검토
 - * 세부지표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 인력 확보,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2-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인력, 2-3. 연구지원인력의 정규직 비중
 - 전문(연)이 제출한 '22년 체계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분석

□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 (현황) 전문(연) 평균 2.1점이며, 2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전문(연)이 최소 2점 이상 받고 있음
- (검토의견) 제1안 채택
 - <제1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장비·재료(시약포함)의 구매와 검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연) 1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3점 만점에 최소 2점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연)만을 위한 지표 개선 불필요

- <제2안>

- 전문(연)의 경우 전담자가 없으나 겸직자가 있는 경우 : 2점→ 3점 으로 기준 하향
- (예상점수) 기준 하향 시 6개 기관 각 1점 상승 예상되나, 최종등급에 영향은 없음

〈표 42〉 1-2. 전담검수인력 확보 평가지침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2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은 없으나 겸직자가 있어 이를 겸업하는 경우
0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 및 겸직자가 모두 없는 경우

〈표 43〉 '22년 전문(연) 연구장비·재료 전담검수인력 현황 및 기준 하향시 예상점수

기관명	전담자 (명)	겸직자 (명)	1-2 점수	기준 하향 시 1-2 점수(예상)
기관①	1	1	3	3
기관②	1	0	3	3
기관③	0	0	0	0
기관④	1	0	3	3
기관⑤	0	1	2	3
기관⑥	3	0	3	3
기관⑦	0	1	2	3
기관⑧	0	2	2	3
기관⑨	0	0.2	0	0
기관⑩	1	1	3	3
기관⑪	0	1	2	3
기관⑫	0	5	2	3
기관⑬	2	2	3	3
기관⑭	0	3	2	3

□ “2-1.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인력 비율”

- ('22년 점수 분포) 모든 기관유형에서 최대배점(4점)의 비중이 큼
 - ※ '21년 개선 연구 당시 '20년 출연(연) 평균인 30.4%를 최대배점(4점)으로 배치
- (미흡기관) 14개 전문(연) 중 4개 기관만이 중위값(2점) 이하
- (검토의견) 대다수 전문(연)이 높은 점수에 해당하여 지표 개선 불필요 (연구지원인력비율 30% 이상의 경우 4점 만점, 전문(연) 평균 32.4%)

〈표 44〉 '22년 기관유형별 2-1 점수 분포

(단위 : 개)

점수	평가지침	출연(연) 및 특정(연)	전문(연)	4대과기원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35	6	4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미만	2	4	0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미만	0	1	0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	1	3	0
계		38	14	4

〈표 45〉 '22년 기관유형별 연구지원인력비율(%)

	출연(연) 및 특정(연)	전문(연)	4대과기원
연구인력(A) (명)	366.6	128.1	370.8
연구지원인력(B) (명)	141.5	40.7	181.3
연구근접지원인력(C) (명)	9.0	0.3	229.3
연구지원인력비율(B+C)/A (%)	55.2	32.4	93.8

〈표 46〉 '20년 기관유형별 연구지원인력비율(%)

	출연(연)	4대과기원포함 출연(연) 평균
연구지원인력비율(B+C)/A (%)	30.4	30.1

□ “2-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 ('22년 점수 분포) 모든 기관유형에서 최대배점(4점)의 비중이 큼

※ '21년 개선 연구 당시 '20년 출연(연) 평균인 1.38명을 최대배점(4점)으로 배치

○ (미흡기관) 14개 전문(연) 중 4개 기관에서 2점, 2개 기관에서 1점

○ (검토의견) 일부 점수가 저조한 전문(연)을 고려하여 2점, 1점 배점기준 조정 (0.9명 → 0.8명, 0.5명 → 0.4명). 당초 4대 과기원의 경우 전문(연)과 함께 분류되어 있었으나, 모든 기관이 4점 만점을 획득하여, 출연(연) 유형 평가지표에 편입함.

〈표 47〉 '22년 기관유형별 2-2 점수 분포

(단위 : 개)

점수	출연(연) 등 평가지침	출연(연) 및 특정(연)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26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7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3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2
계		38

점수	전문(연) 및 4대 과기원 평가지침	전문(연)	4대과기원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6	4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9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	0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상 0.9명 이내인 경우	4	0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내인 경우	2	0
계		14	4

〈표 48〉 '22년 기관유형별 연구비10억당 연구지원인력 수

	출연(연) 및 특정(연)	전문(연)	4대과기원
전체연구비현황 (단위:천원)	121,982,141	42,618,003	193,719,769
연구지원인력(B) (명)	141.5	40.7	181.3
연구근접지원인력(C) (명)	9.0	0.3	229.3
연구비 10억당 전체 연구지원인력 수	1.6	1.3	2.0

〈표 49〉 '20년 기관유형별 연구비10억당 연구지원인력 수

	출연(연)	4대과기원포함 출연(연) 평균
연구비 10억당 전체 연구지원인력 수	1.38명	1.4명

〈표 50〉 '24년 2-2 개선 평가지침(안) 및 예상점수분포

점수	출연(연) 등(4대 과기원 포함) 평가지침	출연(연) 및 특정(연) (예상)	4대과기원 (예상)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26	4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7	0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3	0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2	0
계		38	4

점수	전문(연) 평가지침	전문(연) (예상)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6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8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4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상 0.8명 이내인 경우	3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내인 경우	1
계		14

□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 ('22년 점수 분포) 모든 기관유형에서 최대배점(3점)의 비중이 큼

※ '21년 개선 연구 당시 '20년 출연(연) 평균인 93.53%을 최대배점(3점)으로 배치

○ (미흡기관) 4대 과기원 중 1개 기관만이 중위값(2점) 이하

○ (검토의견) 모든 전문(연)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지표 개선 불필요

〈표 51〉 '22년 기관유형별 2-3 점수 분포

(단위 : 개)

점수	출연(연) 등 평가지침	출연(연) 및 특정(연)
3점	전체 연구지원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80% 이상	38
2점	전체 연구지원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70% 이상 80% 미만	0
1점	전체 연구지원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60% 이상 70% 미만	0
0점	전체 연구지원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60% 미만	0
계		38

점수	전문(연) 및 4대 과기원 평가지침	전문(연)	4대과기원
3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50% 이상	14	3
2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30% 이상 50% 미만	0	1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30% 미만	0	0
계		14	4

〈표 52〉 '20년 기관유형별 정규직 비중(%)

	출연(연)	4대과기원포함 출연(연) 평균
연구지원인력비율(B+C)/A (%)	93.53	91.09

3). 연구지원인력 인정 대상에 파견근로자 포함 요청 관련

[전문(연) 의견]

• 연구지원인력 인정 대상에 파견근로자(상시근무) 포함

*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해 파견근로자 활용 불가피,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규직+계약직만 인정

○ (현황) 규모가 큰 3~4개 전문(연)에서 파견근로자 운영 추정되며, 전체 전문(연)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53〉 (예시) 연구지원인력 현황(파견근로자 포함)

연구지원 기능	①연구 기획	②협약	③정산	④구매	⑤자산	⑥검수	⑦재무 및 회계	⑧감사	⑨성과 관리 및 활용	⑩연구 윤리	⑪연구 보안	기타*	소계
연구지원 인력 수 (파견직)	8 (1)	8 (1)	4 (0)	6 (0)	1 (0)	3 (1.5)	9 (3.5)	3 (0)	29 (3)	0 (0)	7 (0)	92 (36)	170 (46)

* 기타 인력에 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

- (예상점수) 파견근로자 포함 시 2-2점수 1점 상승 예상되며 등급 변동 없음

〈표 54〉 (예시) 파견근로자 포함 시 지표 예상점수

평가지표	배점	원 점수	예상 점수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	3	3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3	3	3
1-3-1.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	3	3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4	4	4
	4	2	3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	3	3	3

- (검토의견) 파견직 대부분이 '기타'기능에 속하므로 연구지원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14개 전문(연) 파견 근로자 자료 송부시 세밀히 검토 예정임

4) 만족도 조사 관련

[전문(연) 의견]

-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표 폐지
- * 직접비와 간접비의 제로섬 관계로 인해 연구자 대상 조사 시 조작 우려

- (현황) 만족도 조사 점수는 전문(연) 평균 8.8점, 출연(연) 및 특정(연) 평균 9.0점으로 차이가 근소함
- (예상점수) '7-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제외할 경우 모든 전문(연) 점수 하락 예상

〈표 55〉 만족도제외 시 예상점수

기관명	만족도조사 점수 (10점)	'22년 평가 점수 (100점)	만족도 제외 시 예상 점수 (100점)	만족도 제외 시 예상 등급 변동
기관①	9	53.33	48.15	-
기관②	8	57.44	53.49	-
기관③	9	36.66	29.63	-
기관④	9	24.46	16.47	-
기관⑤	9	81.11	79.01	C → D
기관⑥	9	61.11	56.79	-
기관⑦	10	58.88	53.75	-
기관⑧	9	90.32	89.29	A → B
기관⑨	10	54.44	48.75	-
기관⑩	9	73.40	70.59	-
기관⑪	6	6.66	0.00	-
기관⑫	10	72.22	68.75	E → F
기관⑬	10	97.87	97.62	-
기관⑭	6	36.66	32.14	-

- (검토의견) 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전문(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차기 평가에서 만족도 점수 산정 시 상하위 각 2.5% 제외

5)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반영 요청 관련

[전문(연) 의견]

- 간접비 산정 시 연구지원체계의 중요부문인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반영(산업부 + 과기부)
 -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노력, 실적, 인력)를 평가하여 연구개발비 내 간접비 산출 비율에 반영

- (현황) 기술이전·사업화 노력, 실적, 인력은 평가지침에 기(既)반영되어 있음
 -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1-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6-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 (검토의견) 전문(연)의 장점인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성 지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3. ② 연구지원인력 우수 교육사례, 1-4. ②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7-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3. 「정부 정책수요 반영」

□ (세부지표 4번) 연구지원시스템 현황 반영

- ('22년 평가) 평균 12.5점이상이나 전문(연)과 큰 점수격차
 - 출연(연), 특정(연) 경우 요구역량의 대부분을 충족

〈표 56〉 연구지원시스템 평가지표 결과

구분	평균평점	IV.4-1 (시스템구축 운영)	IV.4-2.① (전산화운영 수준)	IV.4-2.② (전산화운영 범위)	IV.4-3. (유지보수 운영)	IV.4-4.① (시스템 연동성)	IV.4-4.② (입력기한 준수)
전문(연)	7.79	2.71	1.64	1.43	1.14	0.64	0.21
출연(연)	14.00	3.96	2.93	1.96	2.86	1.93	0.44
특정(연)	14.21	4.00	2.93	2.00	2.79	1.93	0.57
합계	12.50	3.66	2.61	1.84	2.41	1.60	0.42

- (시스템 유형) SaaS형태의 운영보다는 기존 자체개발 시스템 다수
 - 일부 전문(연)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시스템 구축·운영중
- (운영 형태) 별도의 연구지원시스템으로 분리하지않고 기존 ERP, MIS, EKP 등 기관운영시스템의 기능과 통합 운영
 - 연구활동 및 연구지원이 기관설립 및 운영 목적과 일치
- (4-1) 전문(연)의 경우 시스템 미구축이 5개 기관에 이르며, 반대로 출연/특정(연)의 경우 구축이 완료된 포화지표로 → '신규·고도화 구축 계획수립' 지표 반영

⇒ (현행) 구축여부 → 전담조직 → 구축연도 → 시스템 구성 등 4가지 항목
 ⇒ (개선) 구축연도, 전담조직 지표 등은 유지하고 '(신규, 고도화) 구축 계획수립' 여부를 신규 평가지표로 반영
 * 전문연의 경우 신규구축 계획수립에 대해 점수부여가 가능하고, 출연/특정연의 경우 고도화 계획 수립에 대한 추가 점수 부여 가능

- (4-2) '기능보유' 중심의 평가지표로 포화지표(전문(연) 제외) → 시스템 기능의 '지속적 고도화 실적' 평가지표 반영

⇒ (운영수준 4개항목)'비고'에 '고도화 개발 실적'을 추가
 * '시스템 보안관리'는 계획수립과 기술 적용의 2개 항목으로 구분
 (보안계획의 중빙 기준 및 교육부 '정보보호수준진단' 평가 대학의 인정기준 등 평가 기준 상세화)
 ⇒ (전산화범위 3개항목)'전산화 구성'에 '고도화 개발 실적'을 추가
 * 시스템의 기본적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

○ (4-3) 유지보수 예산편성 실적 평가의 해석 차이 발생 → ‘연구지원시스템’의 예산편성 인정기준의 상세

⇒ (불인정 기준 추가) 예산서상 명확히 별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이외
 -‘공통경비’, ‘수용비’, ‘수수료’ 등에 포함되거나,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불인정 기준 추가
 추가

□ (세부지표 6번) 전문운영인력 고용·운영현황 평가 반영

○ (목적)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을 고용하고, 연구자와 전문운영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제3차 고도화계획 중 세부과제 3-1】

- ① (전문운영인력 육성) 재직자의 중·고급 수준 향상 및 신규 교육생의 인턴과정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 ② (고용 촉진기반 마련) 연구자와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전문운영인력 유형·기준 마련 및 고용·운영현황 점검
- ③ (경력관리체계 확립) 전문운영인력의 경력기준 마련 및 전문운영인력의 수요-공급 시스템·DB 구축

○ (방법) 연구기관은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의 현황 및 배치 여부를 점검

〈 전문운영인력의 역할 〉

- (연구시설·장비 운용) 시료 전처리, 연구시설·장비의 직접 운전, 데이터 분석 지원 등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연구시설·장비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 등 최신화 업무
-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지원) 연구자와 협업을 통한 연구설계, 분석법 개발·지원, 시험테스트 지원 등

○ (방안①)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 대비 전문운영인력 현황(표 59)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2항 및 별표3에 따라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는 연구기관은 전문운영인력을 필수로 확보해야함

〈표 57〉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 (예시 I)

기관명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A)	전문운영인력 총인원(B)	비율(B/A)

〈 자체 평가지침 〉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 대비 전문운영인력 비율】

점수	평가지침
2점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 대비 전문운영인력 비율이 40% 이상
1점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 대비 전문운영인력 비율이 30% 이상 40% 미만
0점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 대비 전문운영인력 비율이 30% 미만

< 작성지침 >

- **【전체 전문운영인력 기준】**
 - 대학: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전임교원, 무기계약직, 박사후연구원(학생, 파견인력, 아르바이트생 제외)
 - 비영리기관: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파견인력, 인턴, 과제연구원 제외)
-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되어있는 연구장비 중 ①R&D재원(국방사업 제외), ②총구축비 10억원 이상, ③등록승인 완료(불용 제외)된 주시설장비 기준 총 구축 수
-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당 전문운영인력】**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수(A)를 분모로 하여, 전문운영인력을 나눈 값으로 측정함

○ (반영 ②)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보유 기관별 전문운영인력 지정 여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1항, 제42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국가연구시설 장비 실태조사」 질의 문항 중 일부

<표 58>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 (예시 II)

기관명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수	전문운영인력 총 인원	확보·지정 여부
			Y/N

< 자체 평가지침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보유 및 전문운영인력 확보·지정 여부】

점수	평가지침
1점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운영인력을 지정·확보한 경우
0점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운영인력은 지정·확보하지 않은 경우

< 작성지침 >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되어있는 연구장비 중 ①R&D재원(국방사업 제외), ②2005년 6월 이후 구축, ③취득 금액 3천만원 이상, ④등록승인 완료(불용 제외)된 주시설장비 기준
- **【전체 전문운영인력 기준】**
 - 대학: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전임교원, 무기계약직, 박사후연구원(학생, 파견인력, 아르바이트생 제외)
 - 비영리기관: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파견인력, 인턴, 과제연구원 제외)

<표 59>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별 10억원 이상 연구장비 보유 현황(ZEUS 등록 기준)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관명	보유장비 수	기관명	보유장비 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2	한국원자력의학원	16
한국천문연구원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	한국세라믹기술원	9
한국재료연구원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기초과학연구원	52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관명	보유장비 수	기관명	보유장비 수
한국한의학연구원	0	고등과학원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	나노종합기술원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전문(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7	기관명	보유장비 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	다이텍연구원	7
한국식품연구원	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자동차연구원	6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4	중소조선연구원	0
해양과기원법		한국광기술원	20
기관명	보유장비 수	ECO융합섬유연구원	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8
극지연구소	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0
기관명	보유장비 수	한국신발피혁연구원	0
한국과학기술원	9	한국실크연구원	0
광주과학기술원	8	한국정보기술연구원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6
울산과학기술원	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0
한국뇌연구원	1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

- '22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당 전담운영인력 수)
 - 연구시설·장비 1점당 평균 전담운영인력은 0.59명으로 조사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연)이 2.99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학은 0.42으로 가장 낮게 조사

〈표 60〉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 평균 전담운영인력 수

(단위: 점, 명)

기관 유형	연구시설장비 수 (A)	전담운영인력 수 (B)	연구시설장비 1점당 인력 수 (B/A)
국·공립(연)	97	290	2.99
정부출연(연)	2,593	1,987	0.77
지자체출연(연)	2,026	954	0.47
대학	2,678	1,125	0.42
기타공공기관	1,337	770	0.58
기타	1,721	1,052	0.61
합계(평균)	10,452	6,178	0.59

- (세부지표 6번) 종이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노력도 평가 반영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2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위원회가 각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 정부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정산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제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비시스템(통합 Ezbaro, 통합 RCMS)에 등록된 자료의 경우 종이문서 출력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에서는 감사부담 등으로 여전히 종이문서 생성 및 보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관행을 혁파하고 디지털 증명자료의 생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 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다.
 - 아울러, 연구현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화 우수 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 연구지원체계평가 :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지원 전담 조직·인력 확보 여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충실히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간접비 비율에 가·감률 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

4.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안) 및 개선(안)」

- 목적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
-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 중 의무기관* 및 신청기관
 - * ①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25개(부설 포함)
 -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 14개(부설포함)
 - ③ 「해양과기원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3개(부설 포함)
 - ④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등 58개 기관
- ※ 정부출연기관 중 정책지원, 정부업무 위탁·대행, 인력양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제외
- ※ 대학은 '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 대상기간 : 기관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최근 2년간 ('23.01.01 ~ '23.12.31)
- 평가항목·지표 : 5개 영역, 7개 항목, 22개 세부지표
 - ※ 평가항목·지표는 관련 정책의 변경에 따라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폐지 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제도 운영 현황
 - 신설 지표 : 부실학술활동 예방 및 연구윤리 우수 사례,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노력도, 특허출원 사전 심의제도 운영
 - 확대 지표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담기술인력,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연구보안 전담인력, 연구 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등

〈표 61〉 연구사업수익 규모에 따른 기관 분류

구분	연구사업수익 규모에 따른 기관 분류
대규모 (1,000억 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규모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광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소규모 (500억 미만)	한국뇌연구원, DYTEC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고등과학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녹색기술센터,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

*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년 중규모 → '24년 대규모)

* 연간 연구사업수입 금액은 '22년 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20-21회계연도)를 검토하고, 자료 없는 기관(4개)은 '24년 평가 때 조사 예정

* 기관명칭 변경 : 한국신발피혁연구원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표 62〉 기존 대비 변경사항 (출연(연) 및 비영리연구기관 유형)

기존('22년)				개편('24년)		
영역	항목	배점 (가감점)	변경	영역	항목	배점 (가감점)
연구지원 조직의 운영역량 [27]	①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16	-3	연구지원 조직의 운영역량 [24]	①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13
	②연구지원인력의 운영수준	11			②연구지원인력의 운영수준	11
연구자의 처우개선 을 위한 규제 개선 [17]	③규정개선 및 실행 현황	17	-4 (+2)	연구자의 처우개선 을 위한 규제 개선 [13]	③규정개선 및 실행 현황 * 3-3 연구지원인력 비용집행실적/3-4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실적 배점을 가점화	13 (+2)
	③-1 규정개선 및 실행 현황 (4대 과기원에 한함)	17 (+3)	-4		③-1 규정개선 및 실행 현황 (4대 과기원에 한함) * 3-5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3-5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제도 운영 현황 지표 폐지	13 (+3)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15]	〈 ⑦(우수사례)로 통합〉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14]	④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4-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담기술인력 보유시 가점	14 (+1)
	④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5	-1 (+1)		⑤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5-2 부실학술활동 예방 및 연구윤리 우수사례 추가	(-4~+2) (+3)
	⑤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6~+2)	+2 (+3)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25]	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수여부 (직접비, 간접비 적절성) *성과활용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 비 집행비율 신설	25 (+3)	+2 (+1)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27]	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수여부 (직접비, 간접비 적절성) * 6-1 ③-3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확보시 가점/ 6-1 ⑦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노력도 신설 * 6-2 ③ 특허출원사전심의제도 운영 추가/ 6-2 ④-1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가점에서 배점화/ 6-2 ④-2 연구보안 전담인력 보유시 가점	27 (+4)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16]	⑦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16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16]	⑦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16
합계		100 (-1)		합계		94 (+8)

□ '24년 출연(연) 및 비영리연구기관 유형 세부 평가지표 개선(안)

I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의 작동 여부와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나 기준 마련 및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 ○ 업무분장 내역: 연구기획의 연구 기획서, 제안서 작성 혹은 조사, 분석, 통계처리 등 실제 주업무와 부업무를 구분하여 기재 ○ 업무비중: 업무량이나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업무비중을 기재하고 자체 관리 및 증빙 확보 필요 	
기능명	기능유무 (O/X)	담당자명	인원수	기능명	기능유무 (O/X)	담당자명	업무분장 내역		업무비중
①연구기획				①연구기획					
②협약				②협약					
③정산				③정산					
④구매				④구매					
⑤자산				⑤자산					
⑥검수				⑥검수					
⑦재무 및 회계				⑦재무 및 회계					
⑧감사				⑧감사					
⑨성과관리활용				⑨성과관리활용					
⑩연구윤리				⑩연구윤리					
⑪연구보안				⑪연구보안					
⑫연구지원시스템				⑫연구지원시스템					
⑬연구시설·장비				⑬연구시설·장비					
소계				소계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작성지침</p> <p>○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여부】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이 설치된 경우 ○로, 아니면 X로 기재</p> <p>*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 연구기획 기능 및 부서 : ‘학문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부문’으로서 연구주체 발굴, 분야별 연구동향 조사분석, 해당 학문분야 선도 및 연구자의 니즈(NEEDS)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과제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의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p> <p>○ 【연구지원 기능별 인원】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수로 기재</p> <p>※ 반드시 2-1(연구지원인력 현황)와 동일할 것</p> <p>※ 성과관리·활용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지식재산관리 등의 전담 수행하는 인원</p> <p>※ 연구보안 :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성과물, 기술이나 경영상 필요한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p>	<p>■ 작성지침</p> <p>○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여부】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연구지원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이 설치된 경우 ○로, 아니면 X로 기재</p> <p>*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 연구기획 기능 및 부서 : ‘학문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부문’으로서 연구주체 발굴, 분야별 연구동향 조사분석, 해당 학문분야 선도 및 연구자의 니즈(NEEDS)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과제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의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p> <p>※ 기능 설치 외에 운영 및 사후 관리 관련 내용도 확인: 업무분장 내역, 업무비중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함.</p> <p>○ 【연구지원 기능별 인원】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연구지원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수로 기재</p> <p>※ 한 사람이 1개 기능을 전담할 때 업무비중은 1인 1로 기입</p> <p>※ 기능이 작동되는 최소 업무비중은 기관 자율적으로 제시</p> <p>※ 반드시 2-1(연구지원인력 현황)와 동일할 것</p> <p>※ 성과관리·활용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지식재산관리 등의 전담 수행하는 인원</p> <p>※ 연구보안 :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성과물, 기술이나 경영상 필요한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p>	<p>○ 단순히 기능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소이며 그 자체로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p> <p>○ 따라서 실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지원인력의 보유역량을 제고 시키기 위한 노력과 활동은 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인 자원과 적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p> <p>○ 이를 통해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의 취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p> <p>○ 전담 업무비중과 겸직 업무비중을 구분함</p>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기타 : 연구근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p> <p>※ 본부조직의 경우, 1페이지로 조직도를 작성하여 증빙 제출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 자체 평가지침</p> <p>○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개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3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r> <td>2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r> <td>1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5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3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2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1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5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p>※ 연구지원시스템 : 기관의 연구지원 업무를 수기가 아닌 전산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시스템 용역(SaaS 등) 또는 자체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보유 여부</p> <p>※ 연구시설·장비 : 연구시설·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인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 수행하는 자 포함 기능)</p> <p>※ 기타 : 연구근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p> <p>※ 본부조직의 경우, 1페이지로 조직도를 작성하여 증빙 제출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 자체 평가지침</p> <p>○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개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r> <td>1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5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1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5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점수	평가지침																					
3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2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1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5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⑪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1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⑬개 기능 중 5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과 겸직자에 대한 구분 필요 ○ 인력의 일관성 유지: 겸직자든 전담자든 검수 조서 서명 날인, 발령 공문, 업무분장에 나타난 이름은 모두 일치해야 함 1-1의 업무 기능 분장 표에 제시한 기능 인력들의 성명과 동일해야 함
기관명	전담조직 내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수(명)					기관명	전담조직 내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수(명)					
	부서명	성명	사번	업무분장기간	총인원		부서명	성명	사번	업무분장기간	총인원	
전담자		ex) 김OO		최소 기간 (6개월)		전담자		ex) 김OO		최소 기간 (6개월)		
겸직자				최소 기간 (6개월)		겸직자				최소 기간 (6개월)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수준】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비로 구매한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를 전담조직에서 전담으로 검수하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성만 기재), 사번, 업무분장기간(평가기간 내 최소 6개월 이상)을 나열하여 작성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자】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전담으로 검수하는 별도 인력을 지칭함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겸직자】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타 업무와 겸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수준】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비로 구매한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를 전담조직에서 전담으로 검수하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성만 기재), 사번, 업무분장기간(평가기간 내 최소 6개월 이상)을 나열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자의 업무 비중: 전담의 경우 기능의 최소 작동 요건을 업무비중 1 이상으로 제한함. (1명이 전담한다는 의미로 1-1과 일치 필요)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자】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전담으로 검수하는 별도 인력을 지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예시 : 기능 명시된 조직도, 검수인력 발령 공문, 검수기록 사실 증빙, 검수시설 증빙자료 등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겸직자】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타 업무와 겸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예시 : 검수인력 발령 공문, 검수기록 사실 증빙자료 등 ※ 겸직자의 업무 비중: 검수 기능의 최소 작동 요건은 업무비중 0.4 이상임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p> <p>1-3. ①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 01. 01 ~ 2023. 12. 31) 진행된 연구지원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지원 인력의 교육의 범주】교육은 전담조직 내 소속된 직원이 연구기획, 협약, 정산, 재무·회계, 구매, 자산, 성과, 감사, 성과 관리 등 연구비 및 연구지원 관련 직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참여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 협약, 정산, 재무, 구매, 성과 관리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되, 아래의 예시도 포함됨 -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 - 소양교육 등 참여 실적은 제외 	<p>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p> <p>1-3. ①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 01. 01 ~ 2023. 12. 31) 진행된 연구지원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지원 인력의 교육의 범주】교육은 전담조직 내 소속된 직원이 연구기획, 협약, 정산, 재무·회계, 구매, 자산, 성과, 감사, 성과 관리 등 연구비 및 연구지원 관련 직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참여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 협약, 정산, 재무, 구매, 성과 관리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되, 아래의 예시도 포함됨 -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 - 소양교육 등 참여 실적은 제외 - 증빙자료 예시 : 참가자 서명, 수료증, 자격증, 수료자 리스트 등 필수. - 목적 지향적인 역량강화 교육이나 전문·심화 교육 중심의 교육 실적을 권장. 기관은 교육실적관리에 대한 자율적 관리책임을 지고 교육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총괄표와 증빙 연계표를 제출. - 기관 자체에서 수행하는 내부 기획 교육일 경우 증빙은 교육기획 공문, 강의내용, 참가자 서명 혹은 온라인 참가자 확인 캡처화면, 수료자 리스트를 의무 제출. 교육 이수 후 직무연계 활용 등 현장 활용 사례와 인터뷰, 만족도 조사는 선택적 제출 사항으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인력별로 Matrix 형태의 개인별 교육관리를 경력관리와 연계하여 개인의 역량제고와 기능조직 담당 여부 및 업무 비중,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원인력의 업무분장 기능 강화와 교육 성과 간 연계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별도 의견제시 예정)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교육 주요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집행교육 : 연구비 비목 및 산정기준, 부적정 집행 사례 등에 대한 교육 - 보안관리교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을 의미 - 성과관리교육 :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연구윤리교육 :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기관차원에서 실시한 개최실적 포함 - 기타 : 연구실안전관리교육, 논문작성, 데이터 분석, 장비관리 등과 관련된 교육 <p>○ 【전체 연구지원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 관리,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조직)조직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p>※ 반드시 2-1(연구지원인력 현황)와 동일할 것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 【교육 주요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집행교육 : 연구비 비목 및 산정기준, 부적정 집행 사례 등에 대한 교육 - 보안관리교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을 의미 - 성과관리교육 :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연구윤리교육 :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기관차원에서 실시한 개최실적 포함 - 기타 : 연구실안전관리교육, 논문작성, 데이터 분석, 장비관리 등과 관련된 교육 <p>○ 【전체 연구지원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 관리,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조직)조직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p>※ 반드시 2-1(연구지원인력 현황)와 동일할 것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인력별로 Matrix 형태의 개인별 교육관리를 경력관리와 연계하여 개인의 역량 제고와 기능조직 담당 여부 및 업무 비중,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원인력의 업무분장 기능강화와 교육 성과 간 연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별도 의견서 예정)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지원인력 대상 교육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3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2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td> </tr> </tbody> </table> <p>※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p>		점수	평가지침	3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지원인력 대상 교육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하를 실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td> </tr> </tbody> </table> <p>※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p> <p>※ 교육참여인원 수는 5개 분야(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별 2개년 교육참여인원을 합산</p> <p>※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집체교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목적성있는 교육이고 지원인력에 한해 진행되는 역량 강화 교육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p>		점수	평가지침	2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하를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3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하를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p>○ 무분별한 집체교육을 방지하고 의미있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권장</p>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1-3. ② 연구지원인력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특성화 구분</th> <th>우수사례 및 주요실적</th> </tr> </thead> <tbody> <tr> <td>기관 특성</td> <td></td> </tr> <tr> <td>부서·조직 특성</td> <td></td> </tr> <tr> <td>연구지원인력 특성</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지원 인력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우수사례】 출연연의 기관 특성*, 부서·조직 특성**, 연구지원인력 특성***에 따른 3개 특성화와 관련된 교육 우수사례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 전문생산연구소, 기초과학, 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기관 목적 특성 **부서 특성 : 연구관리 부서, 연구기획 부서, 기술사업화 부서 등 ***연구지원인력 특성 : 연구지원인력의 구분에 따른 행정지원, 연구활동지원, 기술지원, 성과활용지원, 연구장비지원 등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인력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3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부서·조직 특성 3) 연구지원인력 특성</td> </tr> <tr> <td>1점</td> <td>2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개 이하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body> </table>		특성화 구분	우수사례 및 주요실적	기관 특성		부서·조직 특성		연구지원인력 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3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부서·조직 특성 3) 연구지원인력 특성	1점	2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1개 이하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3. ② 연구지원인력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특성화 구분</th> <th>우수사례 및 주요실적</th> </tr> </thead> <tbody> <tr> <td>기관 특성</td> <td></td> </tr> <tr> <td>부서·조직 특성</td> <td></td> </tr> <tr> <td>연구지원인력 특성</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지원 인력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우수사례】 출연연의 기관 특성*, 부서·조직 특성**, 연구지원인력특성***에 따른 3개 특성화와 관련된 교육 우수사례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 전문생산연구소, 기초과학, 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기관 목적 특성 **부서 특성 : 연구관리 부서, 연구기획 부서, 기술사업화 부서 등 ***연구지원인력 특성 : 연구지원인력의 구분에 따른 행정지원, 연구활동지원, 기술지원, 성과활용지원, 연구장비지원 등 - 증빙자료 예시 : 타 출연(연)과의 차별적 기관 특성, 교육목적 및 추진내용(자료 보고서, 교육분석결과 등), 참석자 서명(수료증, 자격증 포함). 우수 기준과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 등 증빙 제시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인력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3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부서·조직 특성 3) 연구지원인력 특성</td> </tr> <tr> <td>1점</td> <td>2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개 이하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body> </table>	특성화 구분	우수사례 및 주요실적	기관 특성		부서·조직 특성		연구지원인력 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3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부서·조직 특성 3) 연구지원인력 특성	1점	2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1개 이하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기준에 대한 개념과 정의 제도 확립 여부를 평가
특성화 구분	우수사례 및 주요실적																																		
기관 특성																																			
부서·조직 특성																																			
연구지원인력 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3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부서·조직 특성 3) 연구지원인력 특성																																		
1점	2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1개 이하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특성화 구분	우수사례 및 주요실적																																		
기관 특성																																			
부서·조직 특성																																			
연구지원인력 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3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부서·조직 특성 3) 연구지원인력 특성																																		
1점	2개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1개 이하 특성화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1-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1-4. ①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산학협력단 등)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대상 교육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집행 교육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연구윤리 교육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기관차원에서 실시한 개최실적 포함 - 보안관리 교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 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성과관리교육 :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기타 교육 : 연구실안전관리교육, 논문작성, 데이터 분석, 장비관리 등 연구관리 및 연구수행 교육 등 ○ 【교육참여 연구인력】교육 대상인 전체 연구인력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총합을 의미함 ○ 【전체 연구인력】지표 (2-1) 전체연구인력(A)와 동일함 <p>*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1-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1-4. ①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산학협력단 등)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대상 교육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집행 교육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연구윤리 교육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기관차원에서 실시한 개최실적 포함 - 보안관리 교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 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성과관리교육 :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기타 교육 : 연구실안전관리교육, 논문작성, 데이터 분석, 장비관리 등 연구관리 및 연구수행 교육 등 ○ 【교육참여 연구인력】교육 대상인 전체 연구인력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총합을 의미함 ○ 【전체 연구인력】지표 (2-1) 전체연구인력(A)와 동일함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자체 평가지침</p> <p>○【연구자 대상 교육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3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2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td> </tr> </tbody> </table> <p>※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p>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p>* 목적 지향적인 역량강화 교육이나 전문 심화 교육 중심의 교육 실적을 권장. 기관은 교육실적관리에 대한 자율적 관리책임을 지고 교육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총괄표와 증빙 연계표를 제출.</p> <p>* 기관 자체에서 수행하는 내부 기획 교육일 경우 증빙은 교육기획 공문, 강의록, 참가자 서명 혹은 온라인 참가자 확인 캡처화면, 수료자 리스트를 의무 제출. 교육 이수 후 활용 사례와 인터뷰, 만족도 조사는 선택적 제출 사항으로 권장</p> <p>*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p> <p>■ 자체 평가지침</p> <p>○【연구자 대상 교육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하를 실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td> </tr> </tbody> </table> <p>※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p> <p>※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집체교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목적성있는 교육이고 연구자에 한해 진행되는 교육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p>	점수	평가지침	2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하를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p>○ 교육의 목적성을 명확히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제시.</p> <p>○ 무분별한 집체교육을 방지하고 의미있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권장</p>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하를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1-4. ②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1-4. ②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 우수 기준에 대한 개념과 정의 제도 확립 여부를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기관특성</td> <td></td> </tr> <tr> <td>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우수사례】출연연의 기관특성* 및 연구특성**, 연구자업무특성***에 따른 3개 특성화 교육 우수사례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 전문생산연구소, 기초과학, 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기관 목적 특성 **연구·연구자업무 특성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용화연구, 시험분석, 조직관리(부서장 등),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td> </tr> <tr> <td>1점</td> <td>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기관특성</td> <td></td> </tr> <tr> <td>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우수사례】출연연의 기관특성* 및 연구특성**, 연구자업무특성***에 따른 3개 특성화 교육 우수사례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 전문생산연구소, 기초과학, 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기관 목적 특성 **연구·연구자업무 특성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용화연구, 시험분석, 조직관리(부서장 등),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 증빙자료 예시 : 타 출연(연)과의 차별적 기관 특성, 교육목적 및 추진내용(자료, 보고서, 교육분석결과 등), 참석자 서명(수료증, 자격증 포함), 우수 기준과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 등 증빙 게시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td> </tr> <tr> <td>1점</td> <td>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1-4. ②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기관특성</td> <td></td> </tr> <tr> <td>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1-4. ②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기관특성</td> <td></td> </tr> <tr> <td>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 우수 기준에 대한 개념과 정의 제도 확립 여부를 평가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구분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우수 사례 포함)																		
기관특성																			
연구특성·연구자업무특성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우수사례】출연연의 기관특성* 및 연구특성**, 연구자업무특성***에 따른 3개 특성화 교육 우수사례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 전문생산연구소, 기초과학, 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기관 목적 특성 **연구·연구자업무 특성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용화연구, 사업분석 조판(부사창등, 기술)전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td> </tr> <tr> <td>1점</td> <td>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2.1.1 ~ 2023.12.31)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우수사례】출연연의 기관특성* 및 연구특성**, 연구자업무특성***에 따른 3개 특성화 교육 우수사례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 전문생산연구소, 기초과학, 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기관 목적 특성 **연구·연구자업무 특성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용화연구, 사업분석 조판(부사창등, 기술)전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 증빙자료 예시 : 타 출연(연)과의 차별적 기관 특성, 교육목적 및 추진내용(자료, 보고서, 교육분석결과 등), 참석자 서명(수료증, 자격증 포함), 우수 기준과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 등 증빙 게시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우수 교육사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td> </tr> <tr> <td>1점</td> <td>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2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1) 기관 특성 2) 연구 특성·연구자업무 특성																		
1점	1개 특성별 우수사례가 인정된 경우																		
0점	우수사례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전체 연구인력 (A)</th> <th colspan="11">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th> <th rowspan="2">연구근접 지원인력 (C)</th> <th rowspan="2">비율 (B+C)/(A)</th> </tr> <tr> <th>연구기획</th> <th>협약</th> <th>정산</th> <th>구매</th> <th>자산</th> <th>검수</th> <th>재무·회계</th> <th>감사</th> <th>성과관리 활용</th> <th>연구윤리</th> <th>연구보안</th> <th>기타</th> <th>계(B)</th> </tr> </thead> <tbody> <tr> <td>기관명</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연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등: 각 출연연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 내에 소속된 정규직원(무기계약직포함)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전체 연구지원 인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연구보안,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부서)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전체 연구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근접 지원인력 (C)	비율 (B+C)/(A)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계(B)	기관명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전체 연구인력 (A)</th> <th colspan="11">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th> <th rowspan="2">연구근접 지원인력 (C)</th> <th rowspan="2">비율 (B+C)/(A)</th> </tr> <tr> <th>연구기획</th> <th>협약</th> <th>정산</th> <th>구매</th> <th>자산</th> <th>검수</th> <th>재무·회계</th> <th>감사</th> <th>성과관리 활용</th> <th>연구윤리</th> <th>연구보안</th> <th>연구지원시스템</th> <th>연구시설·장비</th> <th>기타</th> <th>계(B)</th> </tr> </thead> <tbody> <tr> <td>기관명</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연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등: 각 출연연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 내에 소속된 정규직원(무기계약직포함)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전체 연구지원 인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연구보안, 연구지원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부서)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 202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전체 연구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근접 지원인력 (C)	비율 (B+C)/(A)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연구지원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기타	계(B)	기관명																<p>○ 혁신법 제2조제7호, 제24조에 따라 연구지원 기능에 연구시설·장비를 추가하고, 전문운영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p> <p>※ 제 3차 국가연구시설장비고도화계획('23-'27) 세부과제 3-1: 연구자와 연구장비 전담 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전문 운영 인력 유형·기준 마련 및 고용 운영현황 점검</p>
구분	전체 연구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근접 지원인력 (C)	비율 (B+C)/(A)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계(B)																																																																															
기관명																																																																																													
구분	전체 연구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근접 지원인력 (C)	비율 (B+C)/(A)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연구지원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기타	계(B)																																																																											
기관명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p> <p>■ 자체 평가지침</p> <p>○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td> </tr> <tr> <td>3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 미만</td> </tr> <tr> <td>2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 미만</td> </tr> <tr> <td>1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 미만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 미만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	<p>-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p> <p>■ 자체 평가지침</p> <p>○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td> </tr> <tr> <td>3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 미만</td> </tr> <tr> <td>2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 미만</td> </tr> <tr> <td>1점</td> <td>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 미만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 미만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	<p>○ 연구지원시스템 분야 기술인력 보유수준의 평가 반영</p>
점수	평가지침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 미만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 미만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																					
점수	평가지침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5% 이상 30% 미만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25% 미만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미만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직접비 재원으로 총당하는 연구근접자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가능하며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p> <p>○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p> $\frac{30\text{명} \times 10\text{억}}{1000\text{억}} = \frac{30 \times 10}{1000} = 0.3$ <p>※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p>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p>- 직접비 재원으로 총당하는 연구근접자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p> <p>○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p> $\frac{30\text{명} \times 10\text{억}}{1000\text{억}} = \frac{30 \times 10}{1000} = 0.3$ <p>※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p>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 출연연 등(4대과기원 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직접비 재원으로 총당하는 연구근접자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가능하며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p> <p>○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p> $\frac{30\text{명} \times 10\text{억}}{1000\text{억}} = \frac{30 \times 10}{1000} = 0.3$ <p>※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p>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p>- 직접비 재원으로 총당하는 연구근접자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p> <p>○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p> $\frac{30\text{명} \times 10\text{억}}{1000\text{억}} = \frac{30 \times 10}{1000} = 0.3$ <p>※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p>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 출연연 등(4대과기원 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0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상 1.0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7명 이내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신규 참여 연구기관 : 4대 과학기술원, 전문영역에 한함)		○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 전문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9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상 0.9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내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9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상 0.9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내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8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상 0.8명 이내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내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8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상 0.8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내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9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상 0.9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내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8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상 0.8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0.4명 이내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중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중														○ 혁신법 제2조제7호, 제24조에 따라 연구지원 기능에 연구시설·장비를 추가하고, 전문운영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 ※ 제 3차 국가연구시설장비과도화계획('23-'27) 세부과제 3-1 : 연구자와 연구장비 전담 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전문 운영 인력 유형 기준 마련 및 고용 운영현황 점검			
구분	전체 연구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근접지원인력 (C)	총계 (B+C)	구분	전체 연구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근접지원인력 (C)	총계 (B+C)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계(B)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정규직														가	정규직															가	
무기계약직														나	무기계약직																나
기간제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타															기타																
전체직원														다	전체직원															다	

II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3. 규정 개선 및 실행 현황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3-1. 국내 출장운임 관련 내부규정 및 정액지급 여부 (출연연만 입력 대상이고 특정연 및 전문연은 미해당) ※ 특정연 및 전문연은 해당 점수를 총점에서 제외하고 계산함</p> <p>■ 자체 평가지침</p> <p>1) 국내 출장운임 정액 지급 내부규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2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1)국내 출장 운임 규정 중 정액자금규정이 있고 2)기관내 이를 안내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미충족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p>2) 국내 출장운임 정액지급 여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td> </tr> <tr> <td>0점</td> <td>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1)국내 출장 운임 규정 중 정액자금규정이 있고 2)기관내 이를 안내한 경우	0점	미충족하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p>3-1. 국내 출장운임 관련 내부규정 및 정액지급 여부 (출연연만 입력 대상이고 특정연 및 전문연은 미해당) ※ 특정연 및 전문연은 해당 점수를 총점에서 제외하고 계산함</p> <p>■ 자체 평가지침</p> <p>1) 국내 출장운임 정액 지급 내부규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2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1)국내 출장 운임 규정 중 정액자금규정이 있고 2)기관내 이를 안내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미충족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p>2) 국내 출장운임 정액지급 여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td> </tr> <tr> <td>0점</td> <td>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td> </tr> <tr> <td>0점</td> <td>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1)국내 출장 운임 규정 중 정액자금규정이 있고 2)기관내 이를 안내한 경우	0점	미충족하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0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1)국내 출장 운임 규정 중 정액자금규정이 있고 2)기관내 이를 안내한 경우																													
0점	미충족하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1)국내 출장 운임 규정 중 정액자금규정이 있고 2)기관내 이를 안내한 경우																													
0점	미충족하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0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점	정액자금 국내출장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3-2. 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 및 현황</p> <p>1)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p> <p>■ 작성지침</p> <p>1)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규정 및 조항】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규정(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 나만 제출, 참석자 서명 날인 페이지, 10만 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 증빙자료 제출) 확보 여부를 기재할 것. 또한 이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증빙(홈페이지 캡처 등) 제출할 것(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p>2)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회의비 증빙 중 간소화 문서기준 이행 여부】전체 회의비 증빙 중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한 것이 이행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전체 회의비 증빙 중 참석자 서명 날인 페이지 이행 여부】전체 회의비 증빙 중 참석자 서명 날인 페이지가 이행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전체 회의비 증빙 중 10만 원 이하 영수증만을 제출한 이행 여부】전체 회의비 증빙 중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에 대한 증빙 자료는 이행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지 제출 ○ 【증빙 제출】관련 증빙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2020년 5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현장규제 개선방안(안)』해당 관련 현장 규제내용 포함. 	<p>3-2. 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 및 현황</p> <p>1)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p> <p>■ 작성지침</p> <p>1)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규정 및 조항】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규정(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 나만 제출, 참석자 서명 날인 페이지, 10만 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 증빙자료 제출) 확보 여부를 기재할 것. 또한 이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증빙(홈페이지 캡처 등) 제출할 것(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p>2)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회의비 증빙 중 간소화 문서기준 이행 여부】전체 회의비 증빙 중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한 것이 이행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전체 회의비 증빙 중 참석자 서명 날인 페이지 이행 여부】전체 회의비 증빙 중 참석자 서명 날인 페이지가 이행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전체 회의비 증빙 중 10만 원 이하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행 여부】전체 회의비 증빙 중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에 대한 증빙 자료는 이행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지 제출 ○ 【증빙 제출】관련 증빙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2020년 5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현장규제 개선방안(안)』해당 관련 현장 규제내용 포함.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자체 평가지침</p> <p>1)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3점</td> <td>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 1)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2)참석자 서명 날인 폐지 3)10만 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 증빙자료 제출, 단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4)(내부/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td> </tr> <tr> <td>2점</td> <td>3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2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td> </tr> </tbody> </table> <p>2)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3가지 항목이 이행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3가지 항목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3점	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 1)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2)참석자 서명 날인 폐지 3)10만 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 증빙자료 제출, 단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4)(내부/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2점	3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	1점	2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3가지 항목이 이행된 경우	0점	3가지 항목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p>■ 자체 평가지침</p> <p>1)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규정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 1)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2)참석자 서명 날인 요구 규정이 없는 경우 3)10만 원 이하일 경우, 증빙자료 + 회의비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 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자료 4)(내부/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td> </tr> <tr> <td>1점</td> <td>3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2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td> </tr> </tbody> </table> <p>2)회의비 집행 증명 간소화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3가지 항목이상으로 이행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3가지 항목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 1)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2)참석자 서명 날인 요구 규정이 없는 경우 3)10만 원 이하일 경우, 증빙자료 + 회의비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 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자료 4)(내부/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1점	3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	0점	2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3가지 항목이상으로 이행된 경우	0점	3가지 항목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점수	평가지침																																	
3점	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 1)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2)참석자 서명 날인 폐지 3)10만 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 증빙자료 제출, 단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4)(내부/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2점	3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																																	
1점	2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3가지 항목이 이행된 경우																																	
0점	3가지 항목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 1)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2)참석자 서명 날인 요구 규정이 없는 경우 3)10만 원 이하일 경우, 증빙자료 + 회의비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 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자료 4)(내부/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1점	3가지 항목만 충족한 경우																																	
0점	2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 이하 충족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3가지 항목이상으로 이행된 경우																																	
0점	3가지 항목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3. 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비용집행 규정 및 실적 2)연구지원인력 비용집행실적		3-3. 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비용집행 규정 및 실적 2)연구지원인력 비용집행실적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4.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규정 및 현황 ■ 자체 평가지침 1)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규정3-4.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규정 및 현황		3-4.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규정 및 현황 ■ 자체 평가지침 1)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규정3-4.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규정 및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가능규정 있는 경우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가능규정 있는 경우</td> </tr> <tr> <td>1점</td> <td>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가능규정 있는 경우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가능규정 있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 가능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 게재</td> </tr> <tr> <td>1점</td> <td>1가지를 충족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 가능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 게재	1점	1가지를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가능규정 있는 경우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가능규정 있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이하로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 가능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 게재																		
1점	1가지를 충족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실적		2)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 실적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모두 있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1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모두 있는 경우	0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없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모두 있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1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모두 있는 경우	0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없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모두 있는 경우																		
0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없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모두 있는 경우																		
0점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원금액과 건수가 없는 경우																		

3.1 규정 개선 및 실행 현황 [4대 과학기술원에 한함]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3-1. 국내 출장운임 관련 내부규정 및 정액지급 여부</p> <p>■ 작성지침</p> <p>1) 국내 출장운임 정액 지급 내부규정</p> <p>○ 【내부규정 및 조항】 출연연은 국내출장 시 교통비 등의 운임을 정액 지급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확보했는지를 제시하고 세부조항 및 내용을 기재할 것. 또한 이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증빙(홈페이지 캡처 등) 제출할 것.</p> <p>2) 국내 출장운임 정액지급 여부</p> <p>○ 【증빙 제출】관련 증빙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p> <p>※ 추진근거 : 2020년 5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현장규제 개선방안(안)』해당 관련 현장 규제내용 포함.</p>	<p>3-1. 국내 출장운임 관련 내부규정 및 정액지급 여부</p> <p>■ 작성지침</p> <p>1) 국내 출장운임 정액 지급 내부규정</p> <p>○ 【내부규정 및 조항】 출연연은 국내출장 시 교통비 등의 운임을 정액 지급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확보했는지를 제시하고 세부조항 및 내용을 기재할 것. 또한 이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내부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증빙(홈페이지 캡처 등) 제출할 것.</p> <p>※ Onest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출장증빙자료 제출 가능 (GPS 기반 출장 증빙)</p> <p>2) 국내 출장운임 정액지급 여부</p> <p>○ 【증빙 제출】관련 증빙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p> <p>※ 추진근거 : 2020년 5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현장규제 개선방안(안)』해당 관련 현장 규제내용 포함.</p>	<p>○ 출장 증빙 및 방법</p> <p>-국내 출연연 중 일부는 Onest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출장 증빙을 대체하고 있음. (GPS 기반 출장 증빙)</p>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3-5.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3-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3-5.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 지표삭제 - 관련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이미 의무적으로 준수 중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여부</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td> <td></td> <td></td> </tr>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여부</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td> <td></td> <td></td> </tr>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규정명/제 개정 날짜 작성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적용(마련)한 것으로 인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내용 중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업무 범위 제한’, ‘학업·연구권 보장’, ‘부당업무거부권 보장’, ‘자체점검’, ‘재정운영 정보 공개’, ‘고충·상담 창구 운영’, ‘위반 시 조치’가 모두 반영 된 경우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공개한 날짜 및 대외 홈페이지 URL 작성			■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규정명/제 개정 날짜 작성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적용(마련)한 것으로 인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내용 중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업무 범위 제한’, ‘학업·연구권 보장’, ‘부당업무거부권 보장’, ‘자체점검’, ‘재정운영 정보 공개’, ‘고충·상담 창구 운영’, ‘위반 시 조치’가 모두 반영 된 경우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공개한 날짜 및 대외 홈페이지 URL 작성																	
■ 자체 평가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 자체 평가지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0점</td> <td>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0점</td> <td>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3-5.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3-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3-5.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 지표삭제 - 관련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이미 의무적으로 준수 중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여부</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td> <td></td> <td></td> </tr>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여부</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td> <td></td> <td></td> </tr> <tr>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규정명/제 개정 날짜 작성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적용(마련)한 것으로 인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내용 중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업무 범위 제한’, ‘학업·연구권 보장’, ‘부당업무거부권 보장’, ‘자체점검’, ‘재정운영 정보 공개’, ‘고충·상담 창구 운영’, ‘위반 시 조치’가 모두 반영 된 경우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공개한 날짜 및 대외 홈페이지 URL 작성			■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규정명/제 개정 날짜 작성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적용(마련)한 것으로 인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내용 중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업무 범위 제한’, ‘학업·연구권 보장’, ‘부당업무거부권 보장’, ‘자체점검’, ‘재정운영 정보 공개’, ‘고충·상담 창구 운영’, ‘위반 시 조치’가 모두 반영 된 경우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공개한 날짜 및 대외 홈페이지 URL 작성																	
■ 자체 평가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 자체 평가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0점</td> <td>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0점</td> <td>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5. ②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3-5. ①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 현행 유지 - 스타이펜드 등 장학금은 학생 인건비와 구분되므로, 본 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 - 필요시 별도 지표로 신설
구분	학생 연구자 수(A)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개월 수(B)	학생 인건비 총 지급액 (C)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 $(D) = \frac{\sum \text{개인별 학생인건비 지급액}}{\text{개인별 지급개월수}} = \frac{\text{학생인건비 총 지급액}}{\text{학생연구자수(A)}}$	구분	학생 연구자 수(A)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개월 수(B)	학생 인건비 총 지급액 (C)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 $(D) = \frac{\sum \text{개인별 학생인건비 지급액}}{\text{개인별 지급개월수}} = \frac{\text{학생인건비 총 지급액}}{\text{학생연구자수(A)}}$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 3-5-2 지표 별지서식(엑셀)으로 증빙 제출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 3-5-① 지표 별지서식(엑셀)으로 증빙 제출	
■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수(A)】 평가 기간 동안 연구 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 수 ○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개월 수(B)】 평가 기간 동안 연구 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의 평균 참여 개월 수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개월 수) ○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C)】 평가 기간 동안 학생연구자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합					■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수(A)】 평가 기간 동안 연구 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 수 ○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개월 수(B)】 평가 기간 동안 연구 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의 평균 참여 개월 수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개월 수) ○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C)】 평가 기간 동안 학생연구자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합(단, Stipend 미포함)					
■ 자체 평가지침 ○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학생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 자체 평가지침 ○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학생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학사 학생인건비	석사 학생인건비	박사 학생인건비		학사 학생인건비	석사 학생인건비	박사 학생인건비			
월 평균 학생 인건비 지급액	① 50만원 이상	② 100만원 이상	③ 150만원 이상		① 50만원 이상	② 100만원 이상	③ 150만원 이상			
	④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⑤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⑥ 12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⑤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⑥ 12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⑦ 40만원 미만	⑧ 80만원 미만	⑨ 120만원 미만		⑦ 40만원 미만	⑧ 80만원 미만	⑨ 120만원 미만			

원 안		개선 의견		사유
		개선(안)		
점수	평가지침	점수	평가지침	
4점	①②③ 3개를 충족하는 경우	3점	①②③ 3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3점	①②③ 중 2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2점	①②③ 중 2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2점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1점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1점	④⑤⑥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0점	나머지 경우	
0점	⑦⑧⑨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④⑤⑥ 중 2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⑦⑧⑨ 중 1개 이상 충족)	0점	⑦⑧⑨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④⑤⑥ 중 2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⑦⑧⑨ 중 1개 이상 충족)	
※ 학사, 석사, 박사 각 과정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 학사·석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학사, 석사, 박사 각 과정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 학사·석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3-5. ③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p> <p>3-5-3.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여부</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됨(학생인건비부당회수)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산출 대상은, 부당회수한 날짜를 기준(평가대상 기간에 포함)으로 함 (제재 처분 확정통보일이 아님) ○ 【비고】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비교에 '자체감사에서 적발'이라고 작성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td> </tr> <tr> <td>0점</td> <td>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0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p>3-5. ②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p> <p>3-5-2.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여부</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됨(학생인건비부당회수)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 산출 대상은, 부당회수한 날짜를 기준(평가대상 기간에 포함)으로 함 (제재 처분 확정통보일이 아님) ○ 【비고】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비교에 '자체감사에서 적발'이라고 작성 ※ 학생인건비 관련 NTIS 및 제재 처분 관련 정보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 제재가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 혹은 제재처분 확인 사실이 없다는 증빙 제출 필요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조사 중인 경우에도 필요)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td> </tr> <tr> <td>0점</td> <td>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0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 증빙 제출 제시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0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0점	평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3-5-3.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실적</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에 한해 점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추진실적 및 후속 조치 내용을 기재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대표실적 ① 학생연구자 대상 연구환경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 · 개선 추진 ② 학생연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 건 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 · 개선 추진 	<p>3-5-2.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에 한해 점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추진실적 및 후속 조치 내용을 기재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대표실적 (3건 이내로 제출 독려) ① 학생연구자 대상 연구환경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 ·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드백 과정 포함 제출 (설문 조사 등 개선 추진내용 포함) ② 학생연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 건 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 ·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자와 고충 상담 창구의 경우, 사례제출 필요(카카오톡 혹은 게시물, 익명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 증빙제출 제시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3-5.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p> <p>3-5-4. (1) 통합관리제 운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15%;">적용여부</th> <th style="width: 52%;">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td> <td></td> <td></td> </tr> <tr> <td>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 (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td> <td></td> <td></td> </tr> <tr> <td>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 여부】 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통합관리제 미적용 과제 리스트(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연구책임자명, 미적용 사유) 작성 ○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 날짜 작성 ○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과의 상호 연계 여부】 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시스템 연계 날짜 작성(모듈 설치 및 데이터 전송 모두 필요)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제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점수</th> <th style="width: 85%;">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td> </tr> <tr> <td>0점</td> <td>위 2가지 이하 충족 시</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 (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			점수	평가지침	+1점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0점	위 2가지 이하 충족 시	<p>3-5.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p> <p>3-5-4. (1) 통합관리제 운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15%;">적용여부</th> <th style="width: 52%;">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td> <td></td> <td></td> </tr> <tr> <td>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 (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td> <td></td> <td></td> </tr> <tr> <td>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 여부】 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통합관리제 미적용 과제 리스트(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연구책임자명, 미적용 사유) 작성 ○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 날짜 작성 ○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과의 상호 연계 여부】 적용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 내용은 시스템 연계 날짜 작성(모듈 설치 및 데이터 전송 모두 필요)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제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점수</th> <th style="width: 85%;">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td> </tr> <tr> <td>0점</td> <td>위 2가지 이하 충족 시</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 (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			점수	평가지침	+1점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0점	위 2가지 이하 충족 시	<p>○ 지표삭제</p> <p>- 관련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이미 의무적으로 준수 중</p>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 (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																																						
점수	평가지침																																					
+1점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0점	위 2가지 이하 충족 시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 (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																																						
점수	평가지침																																					
+1점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0점	위 2가지 이하 충족 시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5-4. (2)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계정 수				3-5-4. (2)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계정 수				○ 지표삭제 - 기관계정의 경우 3-5-4 (3) 균등지급비율에 따라 관리 가능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 (A)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소속된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수 (B)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비율 (C=B/A)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 (A)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소속된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수 (B)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비율 (C=B/A)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①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①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②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②				
...				...				
■ 작성지침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명】 평가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한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 기관 전체 단위(전체 학과에 적용)로 운영하는 경우 내부규정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전체 연구책임자 계정 수】 평가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학과 등) 계정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 계정의 수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 계정 수】 평가 기간 연구개발기관(학과 등)계정에 속해있으면서 균등지급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계정의 수				■ 작성지침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명】 평가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한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 기관 전체 단위(전체 학과에 적용)로 운영하는 경우 내부규정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전체 연구책임자 계정 수】 평가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학과 등) 계정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 계정의 수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 계정 수】 평가 기간 연구개발기관(학과 등)계정에 속해있으면서 균등지급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계정의 수				
■ 자체 평가지침 ○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 자체 평가지침 ○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점수	평가지침			점수	평가지침			
+1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이상인 경우, 연구기관 전체 단위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1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이상인 경우, 연구기관 전체 단위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0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미만인 경우			0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미만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3-5-4. (3) 균등지급 비율 ※ 3-5-4. ② 연구기관 계정 수가 1개 이상인 기관만 작성				3-5-③ 균등지급 비율 ※ 3-5-③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만 작성				○ 문구변경 - 공식용어로 변경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합계 (A)	연구개발기관계정 (학과 등)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균등지급액 합계 (B)	균등 지급액 비율 (C=B/A)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합계 (A)	연구개발기관계정 (학과 등)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균등지급액 합계 (B)	균등 지급액 비율 (C=B/A)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①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①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②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②				
...				...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비율 평균(D)=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비율 평균(D)=				
■ 작성지침 ※ 3-5-4. ② 지표에 기재한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기준으로 작성				■ 작성지침 ※ 3-5-4. ② 지표에 기재한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기준으로 작성				

III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4.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4-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운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th> <th style="width: 25%;">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th> <th style="width: 25%;">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th> <th style="width: 25%;">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초기개발)</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개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 현재</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연구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구과제 관리(협약/진도, 중간/결과보고), 연구비 관리(예산, 회계, 인건비, 구매, 정산), 연구성과 관리(논문, 특허, KRI연계),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등을 통합한 전산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구축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기관연구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시스템의 구축연도】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초기개발~추가개발 등 현시스템 구축시까지 해당년도 구분 기재 ○ 【시스템의 주요구성】 시스템 구축연도별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주요구성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초기개발)				(추가개발)	~ 현재	<p>4-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운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th> <th style="width: 25%;">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O,X)</th> <th style="width: 25%;">연구지원시스템 신규,고도화구축 계획 수립(O,X)</th> <th style="width: 25%;">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제출 (O,X)</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연도를 기재(신규 또는 고도화 구축시기) (증빙자료) 구축 당시의 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첨부 ○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기관연구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O, X 표시) (증빙자료) 전담조직(산단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결재문서 첨부 ○ 【연구지원시스템의 신규, 고도화 구축계획】 평가대상 기간중 연구지원시스템의 신규 구축 또는 기존시스템의 성능강화 및 연구자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도화구축 계획을 수립한 경우(O, X 표시) (증빙자료) 신규 및 고도화구축 내부 문서 및 계획서 첨부 ○ 【시스템 주요구성】 현재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주요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출(O, X 표시) (증빙자료) 연구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시스템 구성도 첨부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O,X)	연구지원시스템 신규,고도화구축 계획 수립(O,X)	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제출 (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의 신규 및 고도화계획 지표 반영 ○ 증빙자료 구체화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초기개발)																										
		(추가개발)	~ 현재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O,X)	연구지원시스템 신규,고도화구축 계획 수립(O,X)	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제출 (O,X)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 평가지침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2) 연구지원 전담조직내 구축된 경우(증빙: 전담부서내 시스템 구축 화면) 3) 시스템 구축 연도가 평가기간 이전으로 구축 후 운영되는 경우(증빙: 최근 시스템 구축 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등) 4) 세부 시스템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증빙: 연구지원시스템 구성도, 개선내역 등)</td> </tr> <tr> <td>3점</td> <td>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td> </tr> <tr> <td>2점</td> <td>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td> </tr> <tr> <td>1점</td> <td>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2) 연구지원 전담조직내 구축된 경우(증빙: 전담부서내 시스템 구축 화면) 3) 시스템 구축 연도가 평가기간 이전으로 구축 후 운영되는 경우(증빙: 최근 시스템 구축 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등) 4) 세부 시스템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증빙: 연구지원시스템 구성도, 개선내역 등)	3점	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2점	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 평가지침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3점</td> <td>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td> </tr> <tr> <td>2점</td> <td>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td> </tr> <tr> <td>1점</td> <td>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td> </tr> <tr> <td>0점</td> <td>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3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2점	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1점	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의 신규 및 고도화 계획 지표 반영 ○ 증빙자료 구체화
점수	평가지침																										
4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2) 연구지원 전담조직내 구축된 경우(증빙: 전담부서내 시스템 구축 화면) 3) 시스템 구축 연도가 평가기간 이전으로 구축 후 운영되는 경우(증빙: 최근 시스템 구축 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등) 4) 세부 시스템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증빙: 연구지원시스템 구성도, 개선내역 등)																										
3점	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2점	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3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2점	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1점	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4-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4-2.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4-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4-2.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 보안관리항목의 상세 구분 ○ 시스템고도화 구축실적 지표 추가
구분	운영 수준 (O, X)	비고	구분	운영 수준 (O, X)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비고 (구체적인 내용 작성)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자체 기관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 대책 (계획서) + 증빙	기관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	(보안계획 수립) (보안기술 적용)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연구 데이터 검색			연구 데이터 검색		
종합적 통계 제공			종합적 통계 제공		
<p>■ 작성지침</p> <p>○ 【연구정보의 전산화관리】 연구과제 기초정보(자원, 정부부처, 연구비, 연구인력, 과제번호 등) 및 관련문서가 충실하게 수집 및 저장 관리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p> <p>○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지침’(소관부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정원)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 계획(또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아래의 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요구된 증빙을 제출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일반)보안관리 규정은 기관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대책(또는 계획서)의 증빙자료에서 제외</p>			<p>■ 작성지침</p> <p>○ 【연구정보의 전산화관리】 연구과제 기초정보(자원, 정부부처, 연구비, 연구인력, 과제번호 등) 및 관련문서가 충실하게 수집 및 저장 관리 가능한 경우(O, X 표시) (증빙자료) 해당 시스템화면의 캡처이미지 제출</p> <p>○【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p> <p>① (보안계획 수립)‘개인정보보호지침’(소관부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정원)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 계획(또는 대책)을 수립·시행된 경우 (O, X 표시) (증빙자료) 평가기간내 수립된 보안관리계획서 및 결재문서 제출, 일반 R&D보안관리지침 및 내부규정은 불인정</p>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자체 시스템운영시 증빙자료) 「개인정보법」에 따른 ①외부자 침입차단, ②전산자료의 임의조작 불가능, ③계좌정보 및 주민번호 보안, ④연구자료 유출방지 대책(암호화, DRM 등), ⑤원격 접속(VDI, VPN) 보안대책. 5개 중 3개 기능을 구현한 화면의 이미지를 각각 제출할 것. 다만 평가대상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SMS-P)을 획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가능</p> <p>(클라우드서비스 활용시 증빙자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에 따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보호조치'가 포함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계약서 또는 ②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p> <p>○ 【부서간 연구정보 연계】 기관내 부서간 연구정보(연구자, 참여연구자, 연구비 집행, 연구내용 등)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p> <p>○ 【연구 데이터 검색】 연구참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과제 참여정보 및 예산내역 등의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p> <p>○ 【종합적 통계 제공】 연구과제, 연구비, 인력, 자산 등의 조회 및 통계현황 제공(엑셀 DB변환)이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p>	<p>② (보안기술 적용) 연구지원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O, X로 기재</p> <p>(자체 시스템운영시 증빙자료) 「개인정보법」에 따른 ①외부자 침입차단, ②전산자료의 임의조작 불가능, ③계좌정보 및 주민번호 보안, ④연구자료 유출방지 대책(암호화, DRM 등), ⑤원격 접속(VDI, VPN) 보안대책 등 5개 중 3개이상 기능을 적용한 경우(O, X 표시)</p> <p>(증빙자료) 각 기능 화면의 캡처이미지 제출. 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SMS-P)을 획득한 경우 대체 가능</p> <p>(클라우드서비스 활용시 증빙자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보호조치'가 적용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O, X 표시)</p> <p>(증빙자료)동 내용이 포함된 '클라우드서비스제공 계약서' 및 결재문서 제출,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가능</p> <p>○ 【부서간 연구정보 연계】 기관내 부서간 연구정보(연구자, 참여연구자, 연구비 집행, 연구내용 등)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경우(O, X 표시)</p> <p>(증빙자료) 해당 시스템화면 캡처이미지 제출</p> <p>○ 【연구 데이터 검색】 연구참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과제 참여정보 및 예산내역 등의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 (O, X 표시)</p> <p>(증빙자료) 해당 시스템화면 캡처이미지 제출</p> <p>○ 【종합적 통계 제공】 연구과제, 연구비, 인력, 자산 등의 조회 및 통계현황 제공(엑셀 DB변환)이 가능한 경우(O, X 표시)</p> <p>(증빙자료) 해당 시스템화면 캡처이미지 제출</p> <p>○ 【시스템 고도화 구축 실적】 기존 연구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강화, 연구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시스템의 고도화구축 실적이 있는 경우(O, X 표시)</p> <p>(증빙자료) 시스템 고도화 구축 결과보고 내부 문서등 첨부(일상적 시스템 개선이 아닌 고도화 계획수립, 예산확보, 결과보고가 문서로 증빙되어야 함)</p>	<p>○ 평가지침 구체화</p> <p>○ 시스템고도화 구축실적 지표 추가</p>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 평가지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전산화 운영수준 (3점)</td> <td>3점</td> <td>5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③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④ 연구 데이터 검색, ⑤ 종합적 통계 제공(출력 및 엑셀DB변환)</td> </tr> <tr> <td>2점</td> <td>4가지 항목만이 충족되는 경우</td> </tr> <tr> <td>1점</td> <td>3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운영수준 (3점)	3점	5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③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④ 연구 데이터 검색, ⑤ 종합적 통계 제공(출력 및 엑셀DB변환)	2점	4가지 항목만이 충족되는 경우	1점	3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0점	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 평가지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전산화 운영수준 (3점)</td> <td>3점</td> <td>운영수준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고, 고도화 개발 실적이 1건이상 있는 경우</td> </tr> <tr> <td>2점</td> <td>운영수준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td> </tr> <tr> <td>1점</td> <td>운영수준 5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운영수준 4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운영수준 (3점)	3점	운영수준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고, 고도화 개발 실적이 1건이상 있는 경우	2점	운영수준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점	운영수준 5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0점	운영수준 4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운영수준 (3점)	3점	5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③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④ 연구 데이터 검색, ⑤ 종합적 통계 제공(출력 및 엑셀DB변환)																										
	2점	4가지 항목만이 충족되는 경우																										
	1점	3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0점	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운영수준 (3점)	3점	운영수준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고, 고도화 개발 실적이 1건이상 있는 경우																										
	2점	운영수준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점	운영수준 5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0점	운영수준 4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4-2.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① 예산·정산 ② 구매·계약·자산·검수 ③ 재무·회계·세무 ④ 연구 성과관리로 정함 ○ 【전산화 구축연도】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가 구축된 해당년도 기재 ○ 【전산화의 구성】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 내용을 기재(개요수준 작성) <p>■ 평가지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산화 범위 (2점)</td> <td>2점</td> <td>전산화가 4가지 구분이 모두 구축 되어 있는 경우 ① 예산·정산 ②구매·계약·자산·검수 ③재무·회계·세무 ④ 성과 시스템</td> </tr> <tr> <td>1점</td> <td>전산화가 3가지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전산화가 2가지 이하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범위 (2점)	2점	전산화가 4가지 구분이 모두 구축 되어 있는 경우 ① 예산·정산 ②구매·계약·자산·검수 ③재무·회계·세무 ④ 성과 시스템	1점	전산화가 3가지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0점	전산화가 2가지 이하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p>4-2.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① 예산·정산 ② 구매·계약·자산·검수 ③ 재무·회계·세무 ④ 연구 성과관리로 정함 ○ 【전산화 구축연도】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 4개 기능이 구축된 해당연도 기재 ○ 【전산화의 구성】해당 분야의 전산화 내용을 기재 (증빙자료) 해당 시스템화면 캡처이미지 제출 <p>■ 평가지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산화 범위 (2점)</td> <td>2점</td> <td>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td> </tr> <tr> <td>1점</td> <td>3가지 항목만 충족되는 경우</td> </tr> <tr> <td>0점</td> <td>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범위 (2점)	2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점	3가지 항목만 충족되는 경우	0점	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범위 (2점)	2점	전산화가 4가지 구분이 모두 구축 되어 있는 경우 ① 예산·정산 ②구매·계약·자산·검수 ③재무·회계·세무 ④ 성과 시스템																				
	1점	전산화가 3가지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0점	전산화가 2가지 이하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범위 (2점)	2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점	3가지 항목만 충족되는 경우																				
	0점	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4-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4-3.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수준				4-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수준				○ 평가기준 구체화 ○ 시스템 기술인력 보유시 가점항목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유지·보수(단위: 천원)</th> </tr> <tr> <th>예산(A)</th> <th>사용액(B)</th> <th>집행비율(B/A)</th> </tr> </thead> <tbody> <tr> <td>최근 2년 전 (2020.1.1 ~ 2020.12.31)</td> <td></td> <td></td> <td></td> </tr> <tr> <td>최근 1년 전 (2021.1.1 ~ 2021.12.31)</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유지·보수(단위: 천원)				예산(A)	사용액(B)	집행비율(B/A)	최근 2년 전 (2020.1.1 ~ 2020.12.31)				최근 1년 전 (2021.1.1 ~ 2021.12.3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운영 및 유지·보수(단위: 천원, %)</th> </tr> <tr> <th>예산액 (A)</th> <th>집행액 (B)</th> <th>집행비율 (B/A)</th> <th>전담기술인력(+1)</th> </tr> </thead> <tbody> <tr> <td>최근 2년 전 (2020.1.1 ~ 2020.12.31)</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r> <td>최근 1년 전 (2021.1.1 ~ 2021.12.31)</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body> </table>				구분	운영 및 유지·보수(단위: 천원, %)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전담기술인력(+1)	최근 2년 전 (2020.1.1 ~ 2020.12.31)			%	명	최근 1년 전 (2021.1.1 ~ 2021.12.31)			%
구분	유지·보수(단위: 천원)																																								
	예산(A)	사용액(B)	집행비율(B/A)																																						
최근 2년 전 (2020.1.1 ~ 2020.12.31)																																									
최근 1년 전 (2021.1.1 ~ 2021.12.31)																																									
구분	운영 및 유지·보수(단위: 천원, %)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전담기술인력(+1)																																					
최근 2년 전 (2020.1.1 ~ 2020.12.31)			%	명																																					
최근 1년 전 (2021.1.1 ~ 2021.12.31)			%	명																																					
■ 작성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예산 수준】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기관 예산서상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내역과 기관 결산서상의 해당항목 집행내역을 기재. ○ 【증빙 제출】기관 예산서상 별도 항목으로 구분 편성(예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된 증빙 및 결산서상 집행 증빙 제출. *2020.12.31.(최근2년 전) 및 2021.12.31.일자(최근1년 전) 기준으로 작성				■ 작성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수준】 - 해당 연도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기관 예산서상에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액 및 결산서상의 집행항목 내역을 기재. - '공통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타 예산항목에 포함된 경우 세부내역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작성 (증빙 자료) 기관 예산서상 별도 항목(예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편성 예산서 제출. 대학본부 및 캠퍼스와 예산 분리되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제출 ○ 【전담 기술인력 가점】'전담기술인력'은 정보화시스템(H/W, S/W)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의미하며 해당인력을 전담 부서내에 보유한 경우 1점 가점 부여 (증빙 자료)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분장표 및 관련 기술자격증 (국가 및 민간자격) 제출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 자체 평가지침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수준】		■ 자체 평가지침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수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예산 운영수준 (3점)</td> <td>3점</td> <td>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td> </tr> <tr> <td>2점</td> <td>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td> </tr> <tr> <td>1점</td> <td>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td> </tr> <tr> <td>0점</td> <td>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평가지침	예산 운영수준 (3점)	3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0점	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예산 운영수준 (3점) (+1점)</td> <td>3점 (+1점)</td> <td>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td> </tr> <tr> <td>2점 (+1점)</td> <td>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td> </tr> <tr> <td>1점 (+1점)</td> <td>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td> </tr> <tr> <td>0점 (+1점)</td> <td>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평가지침	예산 운영수준 (3점) (+1점)	3점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2점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1점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0점 (+1점)	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구분	점수	평가지침																												
예산 운영수준 (3점)	3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0점	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구분	점수	평가지침																												
예산 운영수준 (3점) (+1점)	3점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2점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1점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0점 (+1점)	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2개년중 1개년이라도 전담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 가점부여 평가지침 추가																												

5.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5-2. 연구윤리 확립 노력				5-2. 연구윤리 확립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은 현재기준 대부분('22년 평가결과, -0.25 점/-4)마련되어 있어 반영 점수를 조정* * 당초 : -4점 → 변경 : -2점 ○ 부실(의심)학술활동예방을 위한 제도 연계 및 내재화 추진 필요 ○ 국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실학술 활동 예방 노력 강화* 요청 * 부실학술 예방활동 지표 신규 가점으로 추가 ○ 구축된 제도적 기반(규정)을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운영 여부가 중요
구분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자체규정 마련·운영 수준	포함 내용 ²	구분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자체규정 마련·운영 수준	포함 내용 ²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부정행위 범위의 부합 여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부정행위 범위의 부합 여부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창구 운영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창구 운영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절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절차			
	부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				부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징계 가능				부정행위 징계 가능			
	부정행위가 최종 판정 된 날로부터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부정행위가 최종 판정 된 날로부터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³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길잡이, 자체규정 등에 포함된 권고사항	규정 운영 여부 ³	포함 내용 ⁴	부실 학술 예방 활동	논문게재 사전 검토체계 운영			
부실 학술 예방 활동	해외 부실학술행사(학회) 사전 검토체계 운영				해외 부실학술행사(학회) 사전 검토체계 운영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연구윤리 규정의 실제 운영 여부 및 우수 사례 제시 여부				연구윤리 규정의 실제 운영 여부 및 우수 사례 제시 여부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작성지침</p> <p>○ 【연구윤리 확립 노력】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확보 여부</p> <p>주 1. 기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자체규정, 제58조에 따른 자체연구윤리규정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p> <p>2. 해당 내용 적시</p> <p>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내용을 확보·운영 중 또는 예정인 경우는 관련 규정의 유무 및 관련 내용을 적시</p> <p>○ 【증빙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 등 및 제58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등 자체 규정</p> <p>* 2023.12.31.일자 기준으로 마련·운영중인 자체 규정 등</p>	<p>■ 작성지침</p> <p>○ 【연구윤리 확립 노력】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확보 여부</p> <p>주 1. 기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자체규정, 제58조에 따른 자체연구윤리규정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p> <p>2. 해당 내용 적시</p> <p>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길잡이, 자체윤리규정에 따른 부실학술 예방활동이 실제 운영되는지 여부, 우수사례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p> <p>4. 해당 내용 적시</p> <p>○ 【증빙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 등 및 제58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등 자체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길잡이, 자체규정에 따른 부실학술 예방활동과 관련된 증빙자료, 연구윤리 규정의 실제 운영 자료, 관련 우수사례</p> <p>* 2023.12.31.일자 기준으로 마련·운영 중인 자체규정, 규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 등</p>	○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p> <p>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p> <p>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p> <p>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p>○ '22. 12. 16 일부 개정으로 추가</p>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1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2 수준】</p> <p>주 1. 부정행위 관련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3항을 기준으로 평가</p> <p>2. 자체 연구윤리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5호를 기준으로 평가. 단,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2년도 평가(감점) 대상에서 제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4개 이상의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3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3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2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1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0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4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4개 이상의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3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3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	<p>■ 자체 평가지침</p> <p>○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1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2 수준】</p> <p>주 1. 부정행위 관련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3항을 기준으로 평가</p> <p>2. 자체 연구윤리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5호,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를 기준으로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1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0점</td> <td>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4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4개 이상의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3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3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부실학술활동 예방 활동3】</p> <p>주관기관은 소속기관의 연구자가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주 3.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자체 규정 및 교육/홍보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3개 모두 마련한 경우</td> </tr> <tr> <td>+1점</td> <td>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1~2개 마련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r> </tbody> </table> <p>○ 【연구윤리 규정의 운영 우수사례4】</p> <p>주 4. 연구윤리 규정의 운영관련 자료,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정성적으로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연구윤리 규정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1개 이상을 제시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연구윤리 규정이 실제 운영되는 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2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3개 모두 마련한 경우	+1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1~2개 마련한 경우	0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연구윤리 규정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1개 이상을 제시한 경우	0점	연구윤리 규정이 실제 운영되는 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3개 모두 마련한 경우															
+1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1~2개 마련한 경우															
0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점수	평가지침															
+1점	연구윤리 규정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1개 이상을 제시한 경우															
0점	연구윤리 규정이 실제 운영되는 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IV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6-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1. ③-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비 - 중앙구매체계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연구시설·장비비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 필수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비 구매 관련 내부 규정 * 중앙구매 관련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p>6-1. ③-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비 - 중앙구매체계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연구시설·장비비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 필수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비 구매 관련 내부 규정 * 중앙구매 관련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제시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1. ③-3.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기관명</th> <th style="width: 30%;">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수</th> <th style="width: 40%;">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지정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style="text-align: center;">Y/N</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탈에 등록되어있는 연구장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R&D재원(국방사업 제외), ②2005년 6월 이후 구축, ③취득 금액 3천만원 이상, ④등록승인 완료(불용 제외)된 주시설장비 기준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 연구시설·장비 구축부서 외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 ○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은 아래와 같이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보수/연구개발지원 인력등으로 구분됨 - (연구시설장비 운용 인력) 시료 전처리, 연구시설장비의 직접 운전, 데이터 분석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력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인력) 연구시설장비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 등 최신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지원 인력) 연구자와 협업을 통한 연구설계, 분석법 개발 및 지원, 시험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력 * 연구시설·장비인력의 경우, 기술분야 자격증(국가 및 민간자격) 증빙 제출 필요 ○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박사후연구원(학생, 파견인력, 아르바이트생 제외) - 비영리기관: 전문운영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파견인력, 인턴, 과제연구원 제외) 	기관명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수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지정 여부			Y/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제2조제7호, 제24조에 따라 연구지원 기능에 연구시설·장비를 추가하고, 전문운영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 ※ 제 3차 국가연구시설장비고도화계획('23-'27) 세부과제 3-1 : 연구자와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전문운영 인력 유형·기준 마련 및 고용·운영현황 점검
기관명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수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확보·지정 여부						
		Y/N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자체 평가지침</p> <p>○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보유 및 전문운영인력 확보·지정 여부】</p> <p>-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 세부과제 3-1: 연구자와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위해 공동활용 서비스 연구장비 보유 및 전문운영인력 확보한 경우 1점 가점 부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점 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점</td> <td>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운영인력을 지정·확보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점</td> <td>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보유와 전문운영인력 지정·확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 경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td> </tr> </tbody> </table>	점 수	평가지침	+1 점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운영인력을 지정·확보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0점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보유와 전문운영인력 지정·확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 경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p>○ 혁신법 제2조제7호, 제24조에 따라 연구지원 기능에 연구시설·장비를 추가하고, 전문운영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p> <p>※ 제 3차 국가연구시설장비고도화계획('23-'27) 세부과제 3-1 : 연구자와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전문운영 인력 유형·기준 마련 및 고용·운영현황 점검</p>
점 수	평가지침							
+1 점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운영인력을 지정·확보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0점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장비 보유와 전문운영인력 지정·확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 경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1.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재료비 - 중앙구매체계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 중앙구매 관련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시약포함)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 향후 기준단가는 낮추고 구매액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 예정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재료비 - 중앙구매체계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 중앙구매 관련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시약포함)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필수 증빙자료 : 연구재료비 구매 관련 내부 규정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 향후 기준단가는 낮추고 구매액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제시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6-1.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6-1.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 통제여부 및 통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통제 여부</th> <th style="width: 20%;">통제 방법</th> <th style="width: 45%;">구축·운영 시작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align: center;">연구 활동비</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국내·외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가 활용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회의비 및 식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통제 여부	통제 방법		구축·운영 시작일	연구 활동비	국내·외여비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전문가 활용비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	.	회의비 및 식대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통제 여부</th> <th style="width: 20%;">통제 방법</th> <th style="width: 45%;">구축·운영 시작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align: center;">연구 활동비</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국내·외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가 활용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회의비 및 식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검증방법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통제 여부	통제 방법	구축·운영 시작일	연구 활동비	국내·외여비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전문가 활용비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회의비 및 식대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구분	통제 여부	통제 방법	구축·운영 시작일																																																																																														
연구 활동비	국내·외여비	.	.	.																																																																																														
		.	.	.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전문가 활용비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	.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	.																																																																																														
	회의비 및 식대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	.	.																																																																																														
		.	.	.																																																																																														
		.	.	.																																																																																														
		.	.	.																																																																																														
	구분	통제 여부	통제 방법	구축·운영 시작일																																																																																														
연구 활동비	국내·외여비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전문가 활용비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회의비 및 식대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1. ⑦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노력도</p> <p>■ 작성지침</p> <p>○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평가항목】연구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등)</p> <p>■ 자체 평가지침</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직 접 비 관 리 적 절 성</td> <td>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td> <td>+1점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관련 실적을 모두(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td> </tr> <tr> <td></td> <td>0점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관련 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직 접 비 관 리 적 절 성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1점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관련 실적을 모두(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0점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관련 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p>○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2.12.15) 추가</p>
점수		평가지침								
직 접 비 관 리 적 절 성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1점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관련 실적을 모두(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0점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관련 내부규정,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6-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6-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6-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 운영					○ 국가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안)에 의거 과도한 특허출원 방지 강화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성과활용 지원비	사전계획 수립	○/X	관련공문 또는 서류		성과활용 지원비	사전계획 수립	○/X	관련공문 또는 서류		
※ 특히,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관련규정,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집행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 특히,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관련규정,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집행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내부 규정과 동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2가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자체 평가지침</p> <p>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또는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td> </tr> </tbody> </table> <p>※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과학문화활동비 집행계획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	점수	평가 지침	1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또는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p>■ 자체 평가지침</p> <p>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및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 운영】</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평가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및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서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td> </tr> <tr> <td>0점</td> <td>상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p>※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과학문화활동비 집행계획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 <p>※ 과도한 특허출원 방지를 통한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장비 저감을 위하여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서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p>	점수	평가 지침	1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및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서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	0점	상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p>○ 국가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안)에 의거 과도한 특허출원 방지 강화</p>
점수	평가 지침													
1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또는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점수	평가 지침													
1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및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서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													
0점	상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p> <p>○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점수</th> <th>평가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td> </tr> <tr> <td>0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p>○ 【간접비지출】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지출액의 총합을 의미</p> <p>○ 【성과활용지원비】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항목 중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의미함</p> <p style="padding-left: 20px;">※ 반드시 결산서에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와 동일할 것)</p>	점수	평가 지침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미만인 경우	<p>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p> <p>○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점수</th> <th>평가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td> </tr> <tr> <td>0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p>○ 【간접비지출】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지출액의 총합을 의미(결산서/연구운영성과표/연구사업간접원가)</p> <p>○ 【성과활용지원비】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항목 중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의미함</p> <p style="padding-left: 20px;">※ 반드시 결산서에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와 동일할 것)</p> <p style="padding-left: 20px;">※ 성과활용지원비 세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되, 세부내역의 합계 금액은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규모와 일치하여야 함</p>	점수	평가 지침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미만인 경우	<p>○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규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수령</p>
점수	평가 지침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미만인 경우													
점수	평가 지침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미만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2. ④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지출】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지출액 총합을 의미 ○ 【연구보안관리비】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항목 중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관리비를 의미함 ○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규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보안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지출액, 연구보안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p>■ 자체 평가지침</p> <p>○【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	<p>6-2. ④-1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지출】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지출액 총합을 의미 (결산서/연구운영성과표/연구사업간접원가) ○ 【연구보안관리비】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항목 중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관리비를 의미함 ○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규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보안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지출액, 연구보안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 연구보안관리비 세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되, 세부내역의 합계 금액은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규모와 일치하여야 함 <p>■ 자체 평가지침</p> <p>○【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점</td> <td>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점수		평가지침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규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수령 ○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3.9월/과기자문회의)에 따라 개선
점수		평가지침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연구지원비 내 연구보안 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0점	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2. ④-2 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유무</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담당자 명</th> <th>인원수</th> <th>확보유무</th> </tr> </thead> <tbody> <tr> <td>연구보안</td> <td></td> <td></td> <td>Y/N</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안전담인력을 확보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안전담인력이란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관리부서에서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 대한 보안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정보보안만을 전담하는 인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는 해당하지 않음 ○ 제출 증빙자료: 연구보안 지원활동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에 따른 연구기관 보안대책 운영, 연구보안심의회 설치운영*, 소속연구원(외국인 연구원을 포함한다.) 채용 재직·해외출장·퇴직 시 연구보안 교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보안과제 및 보안과제 수행자 관리, 연구보안 유관기관 협력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보안활동 - 증빙자료 예시 : 발령 공문, 보직업무내역,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안심의회 참여만으로는 연구보안 전담인력에 해당하지 않음 ※ 시설 및 정보보안만을 전담으로 하는 활동은 해당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직·간접비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인력 (외부인력 불포함) <p>■ 자체 평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안관리 전담인력】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점수</th> <th>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구보안 관리 전담인력</td> <td>+1점</td> <td>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한 경우</td> </tr> <tr> <td>0점</td> <td>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하지 않은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담당자 명	인원수	확보유무	연구보안			Y/N	점수		평가지침	연구보안 관리 전담인력	+1점	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한 경우	0점	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23.9월/과기자문회의)에 따라 개선
구분	담당자 명	인원수	확보유무															
연구보안			Y/N															
점수		평가지침																
연구보안 관리 전담인력	+1점	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한 경우																
	0점	연구보안 전담인력 확보하지 않은 경우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6-2. ⑤ 연구실 안전관리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전 계획수립】 연구안전관리비의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 공문 등의 증빙 서류 제출 ○ 【간접비 지출】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지출액 총합을 의미 ○ 【연구실안전관리비】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항목 중 연구지원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의미함 ○ 【연구지원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출 규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지출액,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p>6-2. ⑤ 연구실 안전관리비</p>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전 계획수립】 연구안전관리비의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 공문 등의 증빙 서류 제출 ○ 【간접비 지출】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지출액 총합을 의미 (결산서/연구운영성과표/연구사업간접원가) ○ 【연구실안전관리비】회계결산서 상의 간접비 항목 중 연구지원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의미함 ○ 【연구지원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간접비 지출 대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출 규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지출액,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되, 세부내역의 합계 금액은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규모와 일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규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수령

7.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7-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통합 조사</p> <p>7-1. ①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설문지 내용(안)></p> <p>1.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연구지원 기준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2. 소속 기관의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3. 연구지원업무로 문제발생시 소속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4. 소속 기관의 조직은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계약, 행정 간소화, 성과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5.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7-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통합 조사</p> <p>7-1. ①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설문지 내용(안)></p> <p>1.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연구지원 기준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2. 소속 기관의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3. 연구지원업무로 문제발생시 소속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4. 소속 기관의 조직은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계약, 행정 간소화, 성과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5. 소속 기관에서 종이 문서 축소를 위한 증명자료 전자화에 대해 상시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6.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td> <td>약간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2.12.15) 추가</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7-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7-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 조치사항구분 셀 합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대분류)</th> <th>조치사항구분</th> <th>주요 조치내용</th> <th>조치 일자</th> <th>증빙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현장 애로사항 청취</td> <td>예)제도개선</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시스템 변경</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지원금 지급</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td> <td></td> <td></td> <td></td> </tr> <tr> <td>예) 기타</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td> <td>예)제도개선</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시스템 변경</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지원금 지급</td> <td></td> <td></td> <td></td> </tr> <tr> <td>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등)</td> <td></td> <td></td> <td></td> </tr> <tr> <td>예) 기타(홍보 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단, 일반적인 조치는 기재하지 말 것</p>					구분 (대분류)	조치사항구분	주요 조치내용	조치 일자	증빙 서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대분류)</th> <th>조치사항구분</th> <th>주요 조치내용</th> <th>조치일자</th> <th>증빙서류</th> </tr> </thead> <tbody> <tr> <td>현장 애로사항 청취</td> <td>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td> <td></td> <td></td> <td></td> </tr> <tr> <td>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td> <td>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단, 일반적인 조치는 기재하지 말 것</p>					구분 (대분류)	조치사항구분	주요 조치내용	조치일자	증빙서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		
구분 (대분류)	조치사항구분	주요 조치내용	조치 일자	증빙 서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																																																																						
구분 (대분류)	조치사항구분	주요 조치내용	조치일자	증빙서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우수사례는 연구자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우수사례 활용·확산 등 2가지 대분류로만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대분류에 동일한 내용을 각각 기재한 경우 1개만 인정함 ○ 【조치사항구분】조치사항은 5가지 항목(제도개선, 시스템 변경, 지원금 지급,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기타 사례) 중 선택하여 기재할 것 ○ 【주요조치내용】세부조치 내용을 기재할 것 ○ 【조치일자】조치가 완료된 시점을 기재할 것 ○ 【조치증빙서류】관련 공문·보도자료·홍보자료·내부기안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첨부할 것(자료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p>■ 작성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우수사례는 연구자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우수사례 활용·확산 등 2가지 대분류로 각 1건씩만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대분류에 동일한 내용을 각각 기재한 경우 1개만 인정함 ※ 작성 양식 참고(양식에 기재요청 내용은 필수, 디자인 및 추가내용 작성 가능) ○ 【조치사항구분】조치사항은 5가지 항목(제도개선, 시스템 변경, 지원금 지급,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기타 사례) 중 선택하여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 기타'에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사례 제외 -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에서 별도 평가항목으로 점검 ○ 【주요조치내용】세부조치 내용을 기재할 것 ○ 【조치일자】조치가 완료된 시점을 기재할 것 ○ 【조치증빙서류】관련 공문·보도자료·홍보자료·내부기안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첨부할 것(자료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2.12.15) 추가

원 안	개선 의견	
	개선(안)	사유
	<p>■ 작성 양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7-2 (1) 현장애로사항 청취</p> <p>제목 (조치사항 구분)</p> <p>1) 추진 배경</p> <p style="padding-left: 20px;">- 취지, 추진사항 발굴 경로 등</p> <p>2) 추진 계획</p> <p>3) 추진 결과</p> <p>4) 성과의 우수성</p> <p>첨부 : 증빙 문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7-2 (2)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p> <p>제목 (조치사항 구분)</p> <p>1) 추진 배경</p> <p>2) 추진 계획</p> <p>3) 추진 결과</p> <p>4) 성과의 우수성</p> <p>첨부 : 증빙 문서</p> </div>	<p>○ 작성 양식 제시</p>

제2절 연구성과 활용 계획

1. 목표 달성도

- 연구지원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에 의거하여 2년 주기로 평가됨에 따라 '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를 시작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 대학 161개 대학을 대상(대규모 46, 중규모 33, 소규모 82)으로 서류평가, 이의신청/재검토,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등급이 결정됨.
- 평가항목은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26개 지표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됨. 최종평가등급은 S, A, B, C, D, E, F의 7등급으로 평가됨.
- 최종 평가결과는 NTIS를 통해 안내함.

2. 연구성과의 활용 계획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책임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연구기관의 평가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적용될 예정임.
- 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평가지표 고도화에 활용 가능함.
- 평가결과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 상위기관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는 간접비 비율에 연계하여 활용 예정

제 5 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서류평가, 이의신청/재검토,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실시 하였으며, S등급부터 F등급에 이르는 7등급으로 평가됨. 등급별 최종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A등급 28개 대학(17.4%), B등급 42개 대학(26.1%), C등급 29개 대학(18.0%), D등급 20개 대학(12.4%), E등급 11개 대학(6.8%), F등급 31개 대학(19.3%)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대규모 유형의 등급이 높고, 소규모 유형의 등급이 낮음. 소규모 유형의 경우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과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가 낮음

2. 정책적 제언

-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유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대학과 출연(연) 등 비영리 기관의 미션, 기관 운영 방향이 상이한 바, 세부지표를 차별화하여 평가를 진행함. 또한 전반적인 지표 엄격화를 통해 C등급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이 분포되도록 조정 필요
- 연구지원 조직역량 및 인력 운영수준의 경우 기관의 전사적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특히, 인력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지원기능, 인력, 교육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중요
-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 STIPEND 등 여러 재원을 포함한 안정적 학생 자금지원과 관련 4대 과기원에 한정된 점, 학생인건비와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감안 체계평가지 이 부분을 배제하고 평가함이 합리적임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 전반적으로 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 대부분 대학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전담부서내에서 구축·운영 중이며, '추가개발 항목' 신설로 시스템 고도화 노력 및 지속성 파악이 가능하나 기존 시스템 (학사정보, ERP, 산학협력 시스템 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대학 시스템과 기능별로 구분하는 '연구 지원시스템 구성도'에 관한 추가 안내가 필요
 - 시스템의 독립성과 보안성 등 시스템 고도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부실학회 검증 등 연구윤리 운영의 질적 강화를 운영 효율성 점검에 관한 지표 개선 필요
-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 연구시설장비의 대형화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 확보여부를 차년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있으며 증빙자료 목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가 필요함.
-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 종이 없는 행정과 관련된 연구자 만족도 평가 문항을 추가 필요
 - 우수사례 작성 시 기관 차원의 일상적 업무 성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지침에 목차 예시 필요

붙 임 1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기관별 최종 등급**



○ 대규모

신청대학	최종등급
가천대학교	A
가톨릭대학교	B
강원대학교	A
건국대학교	A
경북대학교	A
경상국립대학교	A
경희대학교	A
고려대학교	A
공주대학교	B
국민대학교	A
군산대학교	B
단국대학교	C
동국대학교	A
동아대학교	A
명지대학교	A
목포대학교	A
부경대학교	A
부산대학교	A
서강대학교	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
서울대학교	B
서울시립대학교	A
성균관대학교	B
세종대학교	A
순천대학교	A
순천향대학교	B
송실대학교	B
아주대학교	B
연세대학교	C
영남대학교	B
울산대학교	B
이화여자대학교	B
인제대학교	B
인하대학교	A
전남대학교	A
전북대학교	B
제주대학교	B
조선대학교	A
중앙대학교	C
창원대학교	B
충남대학교	B
충북대학교	B

신청대학	최종등급
포항공과대학교	B
한국공학대학교	B
한림대학교	C
한양대학교	B

○ 중규모

신청대학	최종등급
가톨릭관동대학교	C
강릉원주대학교	B
건양대학교	D
경기대학교	D
경남대학교	C
계명대학교	B
광운대학교	C
금오공과대학교	B
대구가톨릭대학교	B
대전대학교	C
동의대학교	B
목포해양대학교	C
상명대학교	B
선문대학교	A
수원대학교	B
숙명여자대학교	C
안동대학교	E
원광대학교	A
을지대학교	C
인천대학교	A
전주대학교	B
차의과대학교	B
한경국립대학교	D
한국교통대학교	B
한국기술교육대학교	D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F
한국외국어대학교	B
한국항공대학교	B
한국해양대학교	A
한남대학교	A
한밭대학교	B
호서대학교	A
홍익대학교	F

○ 소규모

신청대학	최종등급
강남대학교	F
경기과학기술대학교	F
경성대학교	C
경운대학교	D
경인교육대학교	D
경일대학교	C
고신대학교	C
광주대학교	C
광주여자대학교	F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E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F
극동대학교	F
나사렛대학교	F
남부대학교	C
남서울대학교	C
대구대학교	D
대구한의대학교	B
대진대학교	C
덕성여자대학교	B
동덕여자대학교	F
동명대학교	B
동서대학교	D
동신대학교	D
동양대학교	D
동양미래대학교	F
명지전문대학교	F
목원대학교	C
배재대학교	C
백석대학교	F
부산가톨릭대학교	F
부산외국어대학교	C
부천대학교	E
북학대학원대학교	F
삼육대학교	B
상지대학교	C
서경대학교	C
서울교육대학교	D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C
서울여자대학교	B
서원대학교	D
서일대학교	F
성결대학교	F

신청대학	최종등급
서일대학교	F
성결대학교	F
성공회대학교	E
성신여자대학교	B
세명대학교	D
신라대학교	C
신한대학교	F
안양대학교	B
영산대학교	E
용인대학교	F
우석대학교	C
우송대학교	E
울산과학대학교	F
위덕대학교	F
육군사관학교	F
인덕대학교	F
인하공업전문대학교	D
제주국제대학교	F
제주한라대학교	F
중부대학교	D
중원대학교	F
창신대학교	B
청운대학교	E
청주대학교	C
춘천교육대학교	F
평택대학교	F
한국교원대학교	D
한국농수산대학교	C
한국방송통신대학교	F
한국예술종합학교	E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C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
한국체육대학교	F
한동대학교	E
한라대학교	D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F
한서대학교	D
한성대학교	B
한신대학교	D
한양여자대학교	F
협성대학교	E
호남대학교	D

붙 임 2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0. 대학 평가지표 및 배점

기관명	OO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00000000000000000	
기관 유형	대학	
기관별 연구비 규모	소	(대/중/소)
기관별 연구비 금액(원)	000,000,000	
산학협력단 유무	있음	(있음/없음)
자체평가 점수	67.00	
자체평가 등급	F	

구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번호	배점	세세부지표	세부분점	자체평가
I. 연구지원조직의 운영 역량(26)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12)	① 전달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1-1	3		3	3
		② 연구지원 전달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달 김수인력 확보	1-2	3		3	3
		③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1-3	3		3	0
		④ 연구지에 대한 교육 실적	1-4	3		3	2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14)	①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2-1	5		5	5
		②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2-2	4		4	0
		③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2-3	5		5	3
		소계		26		26	16
II. 연구자의 자우개선 정도(20)	3. 연구자 근로계약(6)	①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1	3		3	2
		②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2	3		3	2
	4.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4)	①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4-1	1		1	1
		②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4-2	1		1	1
		③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4-3	2		2	2
		④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5-1	2		2	2
	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10(+3))	①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5-2	4		4	2
		② 학생인건비부담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5-3	4	1) 학생인건비부담회수 여부	2	2
					2) 학생인건비부담회수 방지 실적	2	2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5-4	(+3)	1) 통합관리제 운영	(+1)	1
2)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1)				1		
		소계		20(+3)		20(+3)	18
III.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15)	6. 기관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①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6-1	4		4	3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6-2	5	1)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3 2	3 2
		③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6-3	3		3	1
		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6-4	3		3	3
	7.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6-+2)	①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7-1	(-2-+2)		(-2-+2)	-1
		② 연구윤리 확립노력	7-1	(-4)		(-4)	-3
		소계		15(-4)		15(-4)	8
IV.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23)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용 기준 준수 여부(23(+3))	①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8-1	15(+1)	1) 인건비 - 인건비 계상 관리의 적절성	3	2
					2)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2	1
		3)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	2	
		3) 연구시설·장비비 -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1)	0	
		4) 구매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	2	
		5)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동비, 회의비 및 식대			3	1	
		6)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1	1			
		7)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담집행기준 위반 여부	2	1			
		②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8-2	8(+2)	1)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1	1
					2)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1	1
3)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 성과활용 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1				1		
3)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2				2		
4)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2	1					
5)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	1					
6) 연구실 안전관리비	1	1					
		소계		23(+3)		23(+3)	18
V. 연구자 예로서항 모니터링(16)	9.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 사례(16)	①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9-1	10		10	5
		②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9-2	6		6	2
			소계		16		16
		합계		100		100	67
		변환 점수 합계		100		100	67.00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2-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산학협력 활동실태조사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대학 연구지원전담조직	추가 가능 조직 및 인력(산학협력실태조사 미반영된 경우)	
		연구윤리, 감사 조직 등 본부 조직	근접지원인력
정의	산학협력단 또는 본부(연구처 등) 등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연구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본부 등에 소속되어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나 기존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부문	직접비 재원으로 총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기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능	연구윤리, 감사 기능, 보안 기능 등	연구지원 업무를 근접으로 지원 가능
범위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 조직 및 인력현황과 일치	본부 조직이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연구지원 전담하는 인력의 경우 연구지원조직에 검임(직) 필수(검임(직)이 없는 경우 미인정)	해당 인력은 산학협력단, 연구센터 등에서 활용 가능
고려사항	대학 산학협력실태조사 조직 및 인력현황 증빙자료 제출	본부 조직도와 인사기록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반드시 해당 인원에 대한 계약서 등 인사 자료 제출 필수

기관명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기능 보유여부													기타	소계
	①연구기획	②협약	③정산	④구매	⑤자산	⑥검수	⑦재무 및 회계	⑧감사	⑨성과관리 활용	⑩연구윤리	⑪연구보안	⑫시스템			
기능 설치여부	○	○	○	○	○	○	○	○	X	X	X	○	○	○	9
인원수	20	15	20	31	42	20	15	5	0	0	0	8	8	184	

점수	평가지침
3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2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1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5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⑫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1-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	3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 작성시 유의사항**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기관명	전담조직 내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수(명)				
	부서명	성명	사번	업무분장기간	총인원
전담자	구매자산팀	박00	00000	2020.3.1.~현재	3
	구매자산팀	김00	000	2020.1.2.~	
	구매자산팀	이00	00	2020.1.2.~	
검직자	구매자산팀	박00	00000	2020.3.1.~현재	3
	구매자산팀	김00	000	2020.1.2.~	
	구매자산팀	이00	00	2020.1.2.~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2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은 없으나 검직자가 있어 이를 겸업하는 경우
0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 및 검직자가 모두 없는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1-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3	3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2-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한 것(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의 인원수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아래 표에서 교육참여인원과 비교1/비고2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전체 연구지원인력과 총 교육횟수는 직접 입력함.
 - 최근 2년전 전체연구지원인력은 2022.4.1.일자 기준, 최근 1년전 전체연구지원인력은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교육기간	교육 주체	교육명	교육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참여 인원 (자동입력)	전체 연구지원인력	연간 총 교육횟수	비고1 (고정값)	비고2 (자동입력)
최근2년전				(구체적인 교육실적은 '교육실적'sheet에 작성 요망)	50	100	10	연구비 집행	
					40			보안관리	
					15			성과관리	
					20			연구윤리	
					25			기타	
최근1년전				(구체적인 교육실적은 '교육실적'sheet에 작성 요망)	50	150	10	연구비 집행	
					40			보안관리	
					30			성과관리	
					20			연구윤리	
					10			기타	
2개년 합계					100	250	20	연구비 집행	O
					80			보안관리	O
					45			성과관리	X
					40			연구윤리	X
					35			기타	X

※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

점수	평가지침
3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 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1-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	0

1-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 작성시 유의사항**
 - 지표 (2-1) 전체연구인력(A)와 동일한 것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임교원 총수를 의미함
 - 아래 표에서 교육참여인원과 비교1/비고2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전체 연구지원인력과 총 교육횟수는 직접 입력함.
 - 최근 2년전 전체 연구인력은 2022.4.1.일자 기준, 최근 1년전 전체 연구인력은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교육기간	교육 주체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참여	전체 연구인력	연간 총 교육횟수	비고1	비고2
최근2년전				(구체적인 교육실적은 '교육실적'sheet에 작성 요망)	5	500	10	연구비 집행	
					5			보안관리	
					0			성과관리	
					0			연구윤리	
					5			기타	
최근1년전				(구체적인 교육실적은 '교육실적'sheet에 작성 요망)	5	300	10	연구비 집행	
					5			보안관리	
					0			성과관리	
					5			연구윤리	
					5			기타	
2개년 합계					10	800	20	연구비 집행	
					10			보안관리	
					0			성과관리	
					5			연구윤리	
					10			기타	

※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 경우만 인정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1-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3	2

- 연구지원인력 교육실적 세부내역

구분	교육기간	교육 주체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참여	비고1
최근2년 전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5	연구비 집행
	2020-10-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10	보안관리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15	연구비 집행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20	연구유리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25	기타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5	연구비 집행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10	보안관리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15	성과관리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20	보안관리
	2020-09-01	연구지원팀	00교육	온라인	25	연구비 집행
최근1년 전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25	연구비 집행
	2021-10-01~	본부	00교육	온라인	20	보안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15	성과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10	연구유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기타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25	연구비 집행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20	보안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15	성과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10	연구유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기타

- 연구자 교육실적 세부내역

구분	교육기간	교육 주체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참여	비고1
최근2년 전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연구비 집행
	2020-10-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보안관리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성과관리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연구윤리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기타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연구비 집행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보안관리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성과관리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연구윤리
	2020-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기타
최근1년 전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연구비 집행
	2021-10-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보안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성과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연구윤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기타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연구비 집행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보안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0	성과관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연구윤리
	2021-09-01	본부	00교육	온라인	5	기타

연구지원 체계평가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 작성시 유의사항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전체 연구 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비율 (B)/(A)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계(B)	
기관명	641	2	2	10	2	2	2	3	2	2	2	2	4	1	36	5.6%

연구비 규모	대	중	소	평가지침		
점수 구간	5점	5점	5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8.0% 이상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7.0% 이상 8.0%미만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6.0% 이상 7.0%미만		
	2점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5.0% 이상 6.0%미만		
	1점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4.0% 이상 5.0%미만		
	0점	2점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4.0%미만	
		1점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3.0%미만	
		2점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1.0% 이상 2.0%미만	
		1점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0.5% 이상 1.0%미만	
		0점		0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0.5% 미만	

※ 해당 대학의 평가기간 연구비 평균 금액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평가지침을 따른 점수 산정할 것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5	5

2-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구분	기관 전체 연구비 현황(A) (단위:억원)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계(B)	
기관명	500	2	2	10	2	2	2	3	2	2	2	2	4	1	36	0.72

$$\frac{\text{연구지원인력(B)} \times 10\text{억}}{\text{전체 연구비 연평균(A)}} = \text{연구비(10억원)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인력}$$

연구비 규모	대	중	소	평가지침		
점수 구간	4점	4점	0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7.0명 이상인 경우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5.0명 이상 7.0명 이내인 경우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3.0명 이상 5.0명 이내인 경우		
		3점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2.1명 이상 3.0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7명 이상 2.1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 1.7명 이내인 경우				
	0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9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상 0.9명 이내인 경우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내인 경우				

※ 해당 대학의 평가기간 연구비 평균 금액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평가지침을 따른 점수 산정할 것

※ 20년도 평가 시, 대학1형은 평균 1.17명, 대학2형은 평균 6.41명 이었음

※ 대규모 연구비일 경우, 0점 기준을 위해 1점 기준을 미포함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2-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4	0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작성시 유의사항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에서의 연구지원인력과 동일해야함

구분		연구지원 가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총계(A)
대학 임용 연구지원인력	정규직(A)	1	1	0	0	0	0	0	0	0	0	0	0	0	2
	무기계약직(B)	0	0	0	0	1	0	1	0	0	0	0	0	0	2
	기간제계약직(C)	0	0	2	0	0	1	1	1	1	1	1	1	0	9
	기타(D)	0	0	0	0	0	0	0	0	0	0	0	1	1	2
	소계(E)	1	1	2	0	1	1	2	1	1	1	1	2	1	15
산학협력단 임용 연구 지원인력	정규직(A)	0	0	0	0	0	0	0	1	1	1	1	0	0	4
	무기계약직(B)	1	1	8	0	1	0	0	0	0	0	0	0	0	11
	기간제계약직(C)	0	0	0	0	0	1	0	0	0	0	1	0	0	2
	기타(D)	0	0	0	0	0	0	1	0	0	0	0	1	0	2
	소계(E)	1	1	8	0	1	1	1	1	1	1	1	2	0	19
총인원		2	2	10	0	2	2	3	2	2	2	2	4	1	34

인원수 검증(2-1과 대사)	TRUE	TRUE	TRUE	FALSE	TRUE	FALSE									
-----------------	------	------	------	-------	------	------	------	------	------	------	------	------	------	------	-------

* 검증식에서 "FALSE"가 나오는 경우 인원수 확인 필요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

1)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

$$\text{산출식}(\%) = \frac{\text{대학 정규직 소속직원(가+나)} + \text{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정규직 전임직원(다+라)}}{\text{대학 소속 전체직원과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연구지원인력(바)}} \times 100$$

정규직 비율	56%
--------	-----

점수	평가지침
3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50% 이상
2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40% 이상 50% 미만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30% 이상 40% 미만
0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30% 미만

2) 【연구지원 인력의 전임직 비율】

$$\text{산출식}(\%) = \frac{\text{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전체 전임직원(마)}}{\text{대학 소속 전체직원과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연구지원인력(바)}} \times 100$$

정규직 비율	56%
--------	-----

점수	평가지침
2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체 인력의 비율이 75% 이상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체 인력의 비율이 65% 이상 75% 미만
0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체 인력의 비율이 65% 미만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text{산출식}(\%) = \frac{\text{대학 정규직 연구지원인력(가+나)}}{\text{대학 소속 전체 연구지원인력}} \times 100$$

정규직 비율	12%
--------	-----

점수	평가지침
5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50% 이상
3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40% 이상 50% 미만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30% 이상 40% 미만
0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30% 미만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	3	3
	연구지원 인력의 전임직 비율	2	0
	합 계	5	3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5	0

3-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 작성시 유의사항**
 - "O/X"를 선택하는 항목에는 "O" 또는 "X"를 표시함

구분	1) 근로계약 기준규정			2)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O/X)	3)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O/X)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기준 및 절차	입력	입력	입력	O	O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관련 규정 확보	O
2)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O
3) 박사 후 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X

점수	평가지침
3점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관련 규정 확보, 2)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3) 박사 후 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2점	2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3-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	2

3-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구분	1) 근로계약 기준규정			2)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O/X)	3)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O/X)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체결기준 및 절차	입력	입력	입력	O	O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1)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관련 규정 확보	O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O
3) 전임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X

점수	평가지침
3점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관련 규정 확보,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3) 전임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2점	2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 못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3-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	2

4-1.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입력	입력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박사 후 연구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

점수	평가지침
1점	박사 후 연구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0점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4-1.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	1

4-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입력	입력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전임연구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

점수	평가지침
1점	전임연구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0점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4-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	1

4-3.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	내부 규정명	내부규정 여부 (O/X 선택)	조항	조항 내용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X	작성자 입력	작성자 입력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	기간	학생연구자 보상금 대상인원 수(명)(A)	학생연구자 보상금 지급 인원수(명)(B)	지급비율(%) $C=B/A*100$	전체 지급 금액(원) (D)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원) $E=D/B$
	최근 평가 기간	0	0	0	-	-

점수	평가지침	
보상금 지급 제도 및 절차(1점)	1점	학생연구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0점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 (1점)	1점	기술료 보상 지급 대상수 인원 대비 지급된 학생연구자 수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0점	기술료 보상 지급 대상수 인원 대비 지급된 학생연구자 수의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4-3.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보상금 지급 제도 및 절차	1	0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	1	0
	합계	2	0

5-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	입력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	입력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5-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2	2

5-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 세부사항 별지서식(엑셀)으로 증빙 제출

구분	학생연구자 수(A)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개월 수(B)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C)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별지서식 참고하여 입력	별지서식 참고하여 입력	별지서식 참고하여 입력	별지서식 참고하여 입력

	학사과정 학생인건비	석사과정 학생인건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월 평균	① 50만원 이상	② 100만원 이상	③ 150만원 이상
학생인건비 지급액	④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⑤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⑥ 12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⑦ 40만원 미만	⑧ 80만원 미만	⑨ 120만원 미만

점수	평가지침
4점	①②③ 3개를 충족하는 경우
3점	①②③ 중 2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2점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1점	④⑤⑥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0점	⑦⑧⑨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④⑤⑥ 중 2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⑦⑧⑨ 중 1개 이상 충족)

5-2. 자체평가
2
(상기 칸에 점수 수기입력)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5-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4	2

5-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및 방지 실적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구분	제재대상 연구자명	통합관리 계정명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일자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	제재처분 확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처분 확정통지일 (공문)	제재처분 기관	비고
평가기간 학생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입력	입력	2020.0.0	500	2000.0.0	2000.0.0	입력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평가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 여부 (제재조치 이력이 있으면 "O" 표시하고, 이력이 없으면 "X" 표시)	X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0점	평가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

구분 (대표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내용
① 또는 ②	입력	입력	입력
① 또는 ②	입력	입력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① 학생연구자 대상 연구환경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개선 추진 (예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O
② 학생연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 건 분석 후 개선 사항 발굴·개선 추진	O

점수	평가지침
2점	①, ②의 대표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1점	① 또는 ②의 대표 실적이 있는 경우
0점	① 또는 ②의 대표 실적이 없는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5-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및 방지 실적	5-3.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2	2
	5-3.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	2	2
	합 계	4	4

5-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① 통합관리제 운영

구분	적용여부 (O/X)	주요내용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	O	입력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O	입력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	O	입력

점수	평가지침
+1점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0점	위 2가지 이하 충족 시

5-4. ①
자체평가
1
(자동계산)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 세부사항 별지서식(엑셀)으로 증빙 제출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 (A)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소속된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수 (B)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비율 (C=B/A)
연구개발기관계정명 ①			
...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O

점수	평가지침
+1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0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미만인 경우

5-4. ②
자체평가
1
(자동계산)

③ 균등지급 비율 ※ 세부사항 별지서식(엑셀)으로 증빙 제출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합계 (A)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균등지급액 합계 (B)	균등지급액 비율 (C=B/A)
연구개발기관계정			
...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비율 평균(D)=			별지서식 참고하여 D값 입력

점수	평가지침
+1점	균등지급액 비율 평균(D)이 30% 이상인 경우
0점	균등지급액 비율 평균(D)이 30% 미만인 경우

5-4. ③
자체평가
0
(자동계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5-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5-4. ① 통합관리제 운영	+1	1
	5-4.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1	1
	5-4. ③ 균등지급 비율 ※ 5-4.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가 1개 이상인 기관만 작성	+1	0
	합계	+3	2

6-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O/X)	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O/X)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	○	(초기개발) 2021.01.01	입력
		(추가개발) ~ 현재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2) 연구지원 전담조직내 구축된 경우(증빙 : 전담부서내 시스템 구축 화면)	○
3) 시스템 구축 연도가 평가기간 이전으로 구축 후 운영되는 경우(증빙 : 최근 시스템 구축 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등)	X
4) 세부 시스템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증빙 : 연구지원시스템 구성도, 개선내역 등)	○

점수	평가지침
4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3점	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2점	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6-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	3

6-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구분	운영 수준(O/X)	비고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	입력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	자체 기관연구지원시스템보안관리대책(계획서) + 증빙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	
연구 데이터 검색	○	
종합적 통계 제공(출력 및 엑셀DB변환)	○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운영수준 (3점)	3점	5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2점	4가지 항목만이 충족되는 경우
	1점	3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0점	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6-2. ①
자체평가
3
(자동계산)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구분	전산화 구축연도	전산화 구축 여부 (O/X)	전산화 구성
예산·정산	1998년 (2020년 재구축)	○	입력
구매·계약·자산·검수	2000년	○	입력
재무·회계·세무		○	입력
연구 성과관리		○	입력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범위 (2점)	2점	전산화가 4가지 구분이 모두 구축 되어 있는 경우
	1점	전산화가 3가지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0점	전산화가 2가지 이하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6-2. ②
자체평가
2
(자동계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6-2.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3	3
6-2.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2	2
합계	5	5

6-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구분	유지·보수(단위: 천원)		
	예산(A)	사용액(B)	집행비율(B/A)
최근2년전 (2021. 3. 1. ~ 2022. 2. 28)	1,881,917,484	1,345,366,541	71.5%
최근1년전 (2022. 3. 1. ~ 2023. 2. 28)	833,430,260	185,432,654	22.2%

구분	점수	평가지침
예산 운영수준 (3점)	3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0점	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6-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3	1

6-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구분	시스템 연동성 확보 및 관리·운영 수준 (주의: 해당 연구과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O"를 선택)	비고	
연구비 통합 관리시스템	통합Ezbaro와 기관연구지원시스템과의 연동 여부	O	입력
	통합RCMS와 기관연구지원시스템과의 연동 여부	O	입력
	통합Ezbaro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기한(D+5 일) 준수 여부		연구기관은 미작성 (연구재단과 협의하여 자체 조사평가 예정임)

평가항목	준수비율(%) (연구기관에서 미작성)
연구비 집행건수 대비 준수비율	100.00%

구분	점수	평가지침
연동성 확보 수준(2점)	2점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2개와 모두 연동성을 가진 경우
	1점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1개와 연동성을 가진 경우
	0점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입력기한 준수 여부(1점)	1점	집행건수 대비 준수비율 90% 이상
	0점	집행건수 대비 준수비율 90% 미만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6-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3	3

7-1.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구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단위: 천원)
제재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0	2	1,000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가 있는 경우	X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가 있는 경우	O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	O

1)【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통보건수 및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 현황】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
-1점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 중 1~2개 있는 경우
0점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이 모두 없는 경우

2)【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기간 제재처분 건수 중 그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제재처분 통보건수의 75%이상일 시 가점부여) 단, 연구비 환수금액 현황에서 받은 감점보다 상향하여 가점을 받을 수 없음)
+1점	평가기간 제재처분 건수 중 그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제재처분 통보건수의 50%이상일 시 가점부여) 단, 연구비 환수금액 현황에서 받은 감점보다 상향하여 가점을 받을 수 없음)
0점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가 아닌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단, 2)번은 직접 입력)
7-1.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7-1. 1)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통보건수 및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 현황	-2~0	-1
	7-1. 2)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0~+2	0
	합계	-2~+2	-1

①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

구분	과제명	지적 내용	지적한 정산 기관	지적일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과제 현황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통보된 과제 개수 총계(A)		10		
연구개발기관이 평가기관 동안 정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개수 총계(B)		100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통보된 과제 개수 총계(A)/연구개발기관이 평가기관 동안 정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개수 총계(B)		10.0%		

점수		평가지침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	2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없는 경우
		1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A/B가 10% 이하인 경우
		0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A/B가 10% 초과한 경우

7-2. 연구윤리 확립노력

구분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자체규정 마련·운영 수준(O/X)	포함 내용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부정행위 범위의 부합 여부	X	OOO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창구 운영	X	OOO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절차	X	OOO
	부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	O	OOO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 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O	OOO
	부정행위 징계 가능	O	OOO
	부정행위가 최종 판정된 날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O	OOO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O	OOO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O	OOO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X	OOO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O	OOO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O	OOO

* 단,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3년도 평가(감점) 대상에서 제외

점수	평가지침
-4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4개 이상의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3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3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7-2. 연구윤리 확립노력	-4~0	-3

8-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구분		세부 내용
인건비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있으며, 상시 조회 가능한 경우	O
인건비 계상률 따른 인건비등의 지급관리가 가능한 경우	X

점수		평가지침
인건비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3점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있으며, 상시 조회 가능하며, 인건비 계상률 따른 인건비등의 지급관리가 가능한 경우
		2점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있으며, 상시 조회 가능한 경우
		0점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없는 경우

②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구분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인건비	인건비 지급절차	입력	입력
	고용(근로)계약 체결 기준 및 절차	입력	입력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1) 인건비 지급 절차 및 고용계약 체결 기준 게시	X
2) 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	O

점수		평가지침
인건비	고용(근로)계약 체결 적절성	2점 2가지 항목이 있는 경우 1) 인건비 지급 절차 및 고용계약 체결 기준 게시 2) 연구자 본인의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 있는 경우
		0점 인건비 지급 절차 및 고용계약 체결 기준 게시가 되지 않는 경우

③-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구분		중앙구매체계		중앙구매 비율					
		구비 여부 (O/X)	기준단가	구매건수			구매액		
				총 구매건수	중앙 구매건수	비율(%)	총 구매액 (천원)	중앙 구매액 (천원)	비율(%)
연구시설·장비비	국내구매	O	단일건 기준 100만원 이상	1,117	1,019	91.2%	12,934,129	12,728,897	98.4%
	국외구매	O	단일건 기준 100만원 이상	74	60	81.1%	7,455,108	7,000,000	93.9%

※ 단일건 기준 : 100만원 이상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실적 여부	O

-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점	단가 1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90%이상인 경우
		1점	단가 3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이상인 경우
		0점	단가 3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자체평가 (수기로 입력)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

-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	자체평가 (수기로 입력)
전담조직 또는 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1

③-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구분	도입·마련 여부(O/X)	증빙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O	- 지정 일자 : - 지정 번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마련	X	규정 명칭 : (규정 필수 첨부)

점수		평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1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 후 인증 원료와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완료한 경우
		0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구분	중앙구매체계		중앙구매 비율						
	구비 여부 (O/X)	기준단가	구매건수			구매액			
			총 구매건수	중앙 구매건수	비율(%)	총 구매액 (천원)	중앙 구매액 (천원)	비율(%)	
연구 재료비	국내구매	O	단일구매총액 300만원 이상	1,284	1,284	100.0%	15,088,321	1,508,832	10.0%
	국외구매	O	단일구매총액 300만원 이상	177	170	96.0%	2,389,827	2,389,823	100.0%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중앙구매 관련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 구매 실적 여부	O

-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점수		평가지침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시약 포함)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2점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시약)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60%이상인 경우
		1점	단일 구매 총액 5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시약)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이상인 경우
		0점	단일 구매 총액 5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시약)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자체평가 (수기로 입력)
연구재료(시약 포함)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2

-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 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	자체평가 (수기로 입력)
전담조직 또는 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시약포함)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1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동비, 회의비 및 식대

구분	통제여부 (O/X)	통제 방법	구축·운영 시작일	
연구활동비	국내·외여비	기준단가 준수	O	
		중복출장 검증	O	
		출장 후 DB구축 탑재 여부 (중빙 탑재 및 정보공유)	O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전문가 활용비	기간내 집행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기준 단가	O	
		수행과제 관련성	O	관련 검증방법 기재
회의비 및 식대	전문가 자문내역 확인여부	O		
	기간내 집행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회의록 작성여부 (외부참석자 확인 등)	O		
	평일 점심식대 통제 (특/야근)	O		

평가항목	해당 여부 (자동계산)
1) 국내외 여비(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 연구기간 내 집행, 비참여연구자 배제, 중복출장 통제, 기준단가 준수, 출장 후 DB구축 등)	O
2) 전문가 활용비(자체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라 연구기간 내 집행, 기준단가, 수행과제 관련성, 전문가 자문내역 확인여부 등)	X
3) 회의비 등(자체 회의비 및 식대 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 연구기간 내 집행,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확인, 특근/야근 식대 기준 준수 등)	X

점수		평가지침
연구활동비(3점)	3점	비목별 집행 절차의 적정성에 따른 3개 항목을 모두 확보한 경우 1) 국내외 여비(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 연구기간 내 집행, 비참여연구자 배제, 중복출장 통제, 기준단가 준수, 출장 후 DB구축 등) 2) 전문가 활용비(자체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라 연구기간 내 집행, 기준단가, 수행과제 관련성, 전문가 자문내역 확인여부 등) 3) 회의비 등(자체 회의비 및 식대 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 연구기간 내 집행, 회의비 집행 시 외부 참석자 확인, 특근/야근 식대 기준 준수 등)
	2점	2개 항목만 확보한 경우
	1점	1개 항목만 확보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확보 못한 경우

㉔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구분	검토서류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세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리스트
	기여도평가 인원	기여도평가 반영 참여연구자 / 전체 참여연구자
	평가 기준 보유여부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개별 기준 사용여부(O/X)	○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기여도 평가 관련 세부평가항목을 보유하고, 기여도 평가시 참여연구자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	○

점수		평가지침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적절성	1점 기여도 평가 관련 세부평가항목을 보유하고, 기여도 평가시 참여연구자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
		0점 기여도 평가 관련 세부평가항목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여도 평가시 참여연구자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㉕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

구분	과제명	지적 내용	지정한 정산 기관	지적일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과제 현황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통보된 과제 개수 총계(A)			10	
연구개발기관이 평가기관 동안 정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개수 총계(B)			100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통보된 과제 개수 총계(A)/연구개발기관이 평가기관 동안 정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개수 총계(B)			10.0%	

점수		평가지침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	2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없는 경우
		1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A/B가 10% 이하인 경우
		0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A/B가 10% 초과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8-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8-1.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3	2
	8-1. ②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2	1
	8-1. ③-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	2
	8-1. ③-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1	0
	8-1.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	2
	8-1.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3	1
	8-1. ⑥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1	1
	8-1. ⑦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담집행기준 위반 여부	2	1
	합계	15(+1)	10

8-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①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등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비고
인력지원비	사전계획수립	○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월)
	집행	○	실시후 지급 공문, 관련서류

※ 특히,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규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관련 세부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인력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
점수	평가 지침
1점	인력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인력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계상비율 준수여부, 성과평가 기준 및 시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

②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등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구분	실시여부 (O/X)	시행 근거자료	비고
연구지원비	사전계획수립	○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월)
	집행	○	실시후 지급 공문, 관련서류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연구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
점수	평가 지침
1점	연구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연구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구분	실시여부 (O/X)	시행 근거자료	비고
성과활용 지원비	○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월)

※ 특히,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관련규정,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
점수	평가 지침
1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또는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구분	간접비 수익 전체(A)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비율(B/A)
		성과활용비 지출 금액총계(B)	성과활용비 세부 내역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1,319,000,000	99,000,000	33,000,000	66,000,000	7.5%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1,157,900,000	88,300,000	33,000,000	55,300,000	7.6%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1,238,450,000	93,650,000	33,000,000	60,650,000	7.6%	

점수	평가 지침
2점	간접비 수익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 수익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4% 이상~6%이하인 경우
0점	간접비 수익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4% 미만인 경우

④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구분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단위: 천원)		
	간접비수익 (A)	학교회계전출금(B)	C=B/A*100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1,319,000,000	299,000,000	22.7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1,157,900,000	288,300,000	24.9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1,238,450,000	293,650,000	23.7

점수	평가 지침
2점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출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
1점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출 비율이 20% 초과, 40% 이하인 경우
0점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출 비율이 40% 초과인 경우

⑤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구분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단위: 비율%)		
	간접비수익 (A)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금액 및 비율(B/A)	
		연구보안관리비(B)	비율(B/A)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1,319,000,000	9,000,000	0.6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1,157,900,000	8,300,000	0.72%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1,238,450,000	8,650,000	0.70%

점수	평가 지침
+2점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0점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보안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보안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

1) 사전계획수립

구분		실시여부(O/X)	시행 근거자료	비고
연구실 안전관리	사전계획수립	○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월)

2)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출

구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단위: 비율%)		
	간접비수익 (A)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출 금액 및 비율(B/A)	
		연구실 안전관리비(B)	비율(B/A)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1,319,000,000	19,000,000	1.4%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1,157,900,000	18,300,000	1.6%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1,238,450,000	18,650,000	1.5%

점수	평가지침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1점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 1) 사전계획수립 있는 경우 2)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0점	1가지 이하 항목을 충족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8-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8-2. ①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1	1
	8-2. ②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1	1
	8-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1	1
	8-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2	2
	8-2. ④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2	1
	8-2. ⑤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	1
	8-2.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	1	1
	합계	8(+2)	8

9-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도	설문 응답자(명)	문항 평균 100점 환산 점수(점)
입력	입력	30

점수	평가지침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인 경우
	9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8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7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6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5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
	4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경우
	3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10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0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10점 미만인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9-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0	5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구분(대분류)	조치사항구분	주요조치내용	조치일자	증빙서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제도개선	입력	입력	입력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			

평가항목	해당 여부(O/X)	
	우수사례 기재됨	우수사례 인정됨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분류	O	O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대분류	X	X

점수	평가지침
6점	2개 구분(대분류)별 우수사례가 모두 기재되고 모두 인정된 경우
4점	2개 구분(대분류)별 우수사례가 기재되고 한 가지만 인정된 경우
2점	1개 구분별 우수사례가 기재되고 1개가 인정된 경우
0점	한가지도 우수사례로 인정 안된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9-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	2